

#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Click!

매뉴얼 사용설명서 



# CONTENTS

## 1. 초기 상담 5

1 초기상담 개요	6
2 초기상담 스크리닝의 활용	8
3 초기상담 시스템 사용 매뉴얼	10
4 초기상담의 영역 및 필요 내용 예시(국기초)	12
5 초기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강점관점)	14
6 초기 상담 사후관리-자치구사례	15
7 초기 상담 사례	19

## 2. 긴급복지지원사업 23

1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24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32

##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45

1 원스톱 복지상담 서비스 정의	46
2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업무 분야 및 절차	46

##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47

1 한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48
2 한눈에 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구비서류	50

##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요 및 절차	52
2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53
3 보장가구	54
4 부양의무자	57
5 소득재산조사	59
6 근로능력판정	62
7 차세대행복e음 입력방법	64

##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77

## 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81

## 8. 차상위지원사업 85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86
2 차상위 자활	90
3 차상위 장애(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92
4 차상위 계층 확인	95

## 9. 한부모지원사업 97

## 10. 어르신복지서비스 105

1 기초연금 사업	106
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9
3 장기요양서비스	109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1
5 무료급식서비스	112

## 11. 장애인복지서비스 113

1 장애인 등록 절차	114
2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16
3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16
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21
5 장애인연금	121
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지원	123
7 장애인 활동 지원	124
8 발달 재활 서비스	124
9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126
10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7
11 장애인 출산비용	127
1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28

##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131



## 13. 가족복지서비스 135

❶ 임신지원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136
❷ 출산통합서비스	139
1. 행복출산등록	139
2. 첫만남 이용권	147
3. 다둥이 행복카드	148
4.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149
❸ 양육서비스	153
1. 부모급여	153
2. 아동수당	157
3. 가정양육수당	160
4. 보육료	162
5. 유아학비	170
6. 아이돌봄지원사업	172

## 14. 아동·청소년 서비스 177

❶ 아동급식	178
❷ 청소년증 발급	184

## 15. 사례관리 187

❶ 사례관리란?	188
❷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로서 사례관리	188
❸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188
❹ 동 사례관리 사업비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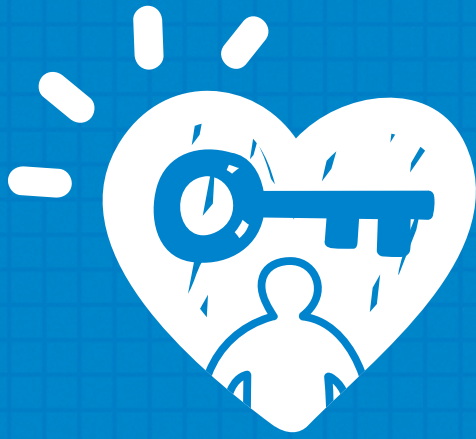
## 16. 주거복지 213

❶ 공공임대주택	214
❷ 임대료 지원	216
❸ 주거 전문 상담관	218

## 17. 서울시 주요 사업 221

❶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222
❷ 돌봄SOS 서비스	240
❸ 서울시 금융 취약계층 종합지원	245

참고문헌	250
부록 요금감면서비스 안내	252



# 1. 초기 상담

# 1. 초기 상담



## 1 초기상담의 개요

### ▶ 초기상담의 정의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대상자의 의뢰 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

※ 초기상담 단계에서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성공해야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 초기상담의 기능

- 국민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및 단계
- 사회보장 급여유형 결정과 서비스 연계 내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 복지담당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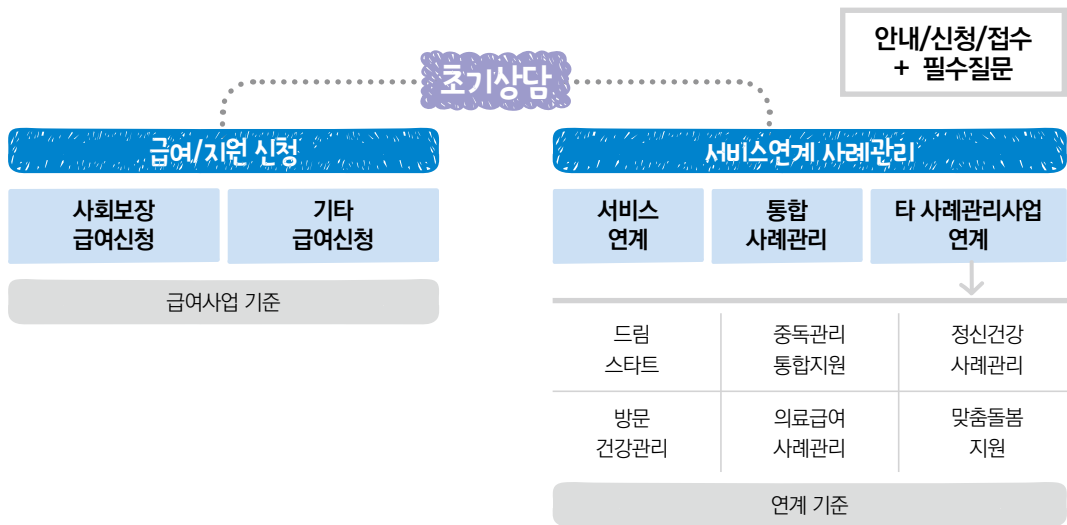
### ▶ 초기상담의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 등의 사회보장 지원욕구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 특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의뢰된 경우, 최우선 대상이 됨

### ▶ 초기상담시 직원의 업무분장[일반]

- 직급과 직렬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초기상담 수행. 특히 전화상담, 내방상담은 팀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수행
- 복지1팀(복지행정팀)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 안내·신청·접수과정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사회보장지원 욕구가 있는 주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다만,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담수행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지2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복지2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경우, 특정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방하는 주민, 복지사 각지대로 발굴·의뢰되는 주민, 사회보장 지원이 불충분한 주민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수행. 필요한 경우, 연계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 적정인력 배치와 원활한 업무협조 등 수행여건은 필수

## ▶ 초기상담 흐름도(보건복지부)



**초기상담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Tip**

-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원별 주요 문제를 포함하여** 파악
- ▶ 당사자의 주요 문제 파악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영역(주요현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
- ▶ 문제의 심각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의견을 확인**할 것
- ▶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문제(원인) 및 원하는 지원, 가구원별 연락처** 등은 반드시 확인

## ▶ 초기상담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

- 초기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종합 상담, 방문 상담, 모니터 상담, 기초 상담, 상담 개입, 건강 상담 등의 **너무 다양한 용어가 등장**함
- 초기상담 후 처음 상담을 한 사람이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조직문화와 의식이 팽배해 본인의 개별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대상자 내방 후 상담한 내용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요구되나 업무의 과부화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제도에 따라 업무 파악이 어려워 초기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음
- 대상자의 초기상담이 진행되면 각기 다른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진행과정이 필요함. 기본적 욕구 확인 후 분야별 담당자가 2차 상담을 진행토록 함.

## ▶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 복지멤버십이란?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

### 신청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등록 외국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2 초기상담 스크리닝의 활용

### ▶ 초기상담 스크리닝 도구의 용도

-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지원, 특히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것

### ▶ 초기상담 스크리닝 대상자 기준

- 스크리닝 도구는 다양한 욕구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따로 스크리닝하지 않음
- 다만,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수 질문 영역(예시-돌봄 영역)을 제시하고 심층 사정이 필요한지를 체크

### ▶ 초기상담 스크리닝 요령

- 경제,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안전, 권익, 지원 체계 영역에서 지원 필요 여부와 해당 지원 방안을 일차적으로 판단



## ▶ 초기상담 스크리닝 요령

영역	상담 내용	필요 지원
경제	생계비(식비, 의료비, 주거비, 학비, 공과금 등) 지출에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채무 규모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청 <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체 건강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뇌질환, 암, 상해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 관리, 상담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방문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 건강관리 외 보건소 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 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신 건강	치매, 정신질환, 우울, 중독, 재난, 범죄 피해, 사고 경험, 자살 시도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 관리,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방문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 관리 <input type="checkbox"/> 치매안심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 건강 사례 관리 <input type="checkbox"/> 중독 통합 관리 지원 <input type="checkbox"/> 자살예방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주거 환경 개선(냉난방, 위생, 안전, 편의시설 등)이나 퇴거위기 등으로 주거지로 옮기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 필요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한국토지주택공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돌봄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일상생활(식사, 용변 처리, 옷 입기, 몸 씻기, 세탁, 청소, 외출 등)과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주된 돌봄 제공자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드림스타트 <input type="checkbox"/> 장기 요양 <input type="checkbox"/> 노인 돌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거나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고용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고용공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	학업 유지나 학력 취득, 장애 탐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한국어 구사나 정보 이해,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 평생학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교육복지 우선 지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지원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전	자해를 포함하여, 학대 예방 및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피해자와 피해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야간 또는 휴일 응급상황 대처에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노인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권익옹호기관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성폭력상담소 <input type="checkbox"/> 자살예방센터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중증장애인용 급안전알림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권익	채무조정, 파산·면책, 회생, 소송지원, 변호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인권침해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공단 <input type="checkbox"/> 법률홍충덕터 <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 체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어서 지지망 구축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도움을 주는 사람과 수준 : ) ) (가족구성원 중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 )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지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발달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	<input type="checkbox"/> 성년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종합 판정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청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통합 사례 관리 <input type="checkbox"/> 타 사례 관리 사업 연계 (기타 의견 : ) )	

### 3 초기상담 시스템 사용 매뉴얼

#### ▶ 행복e음 대상자 자격(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초기상담 및 통합상담 관리의 차이점

#### 1. 초기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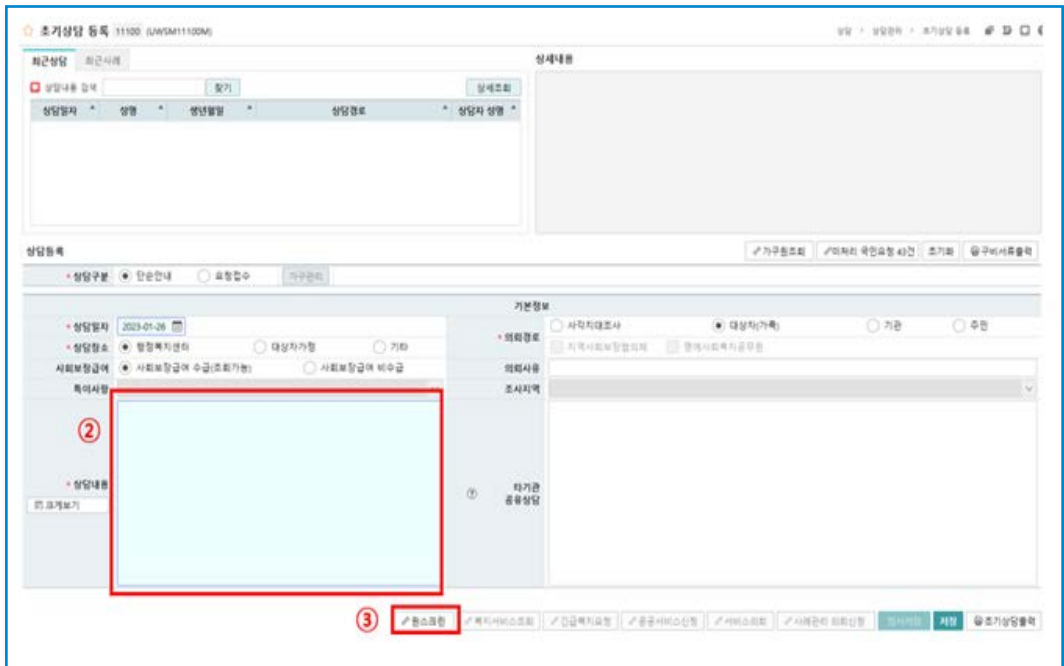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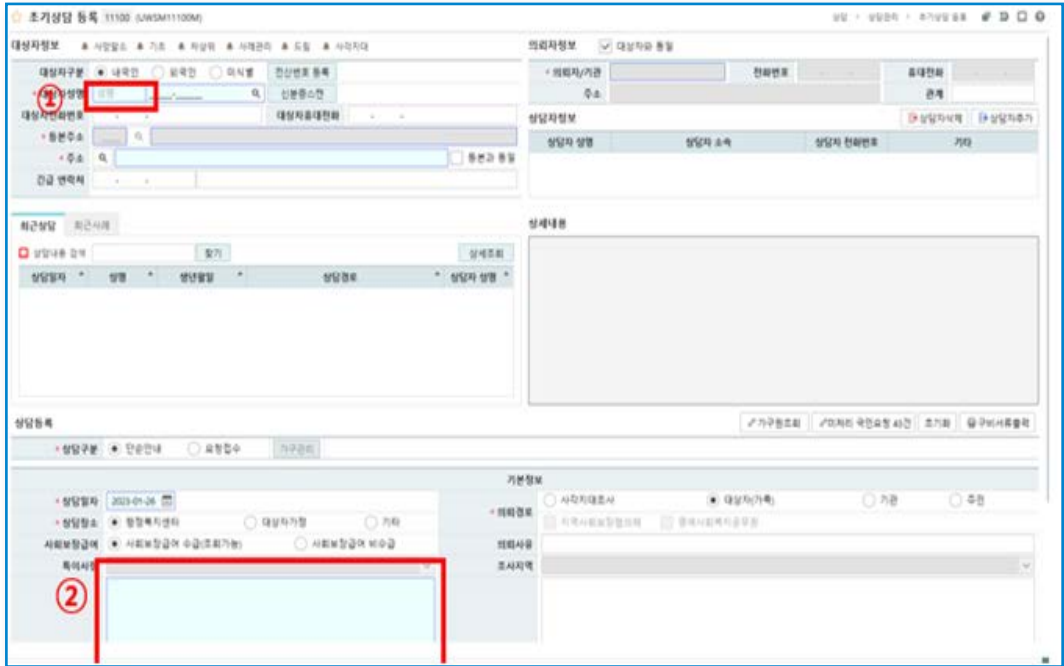
- ▶ **단순상담**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판단하여 급여 서비스의 맞춤 안내 실시
- ▶ **요청접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의뢰, 긴급복지요청, 민간서비스 등 연계

#### 2. 통합상담관리(통합조사 및 결정)

- ▶ 기존 통합조사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 입력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행복e음 대상자 상담내역 확인(상담신청 → 초기상담)



## 4 초기상담의 영역 및 필요내용 예시(국기초)

상담영역	필요내용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li> <li>• 가족관계 및 과거 가족력</li> </ul>
가구구성 및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구성 형태(단독가구, 한부모, 조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가구 보장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여부 확인</li> </ul> </li> <li>• 장애여부 파악 및 질환 유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한장애(기준1~3급)은 근로능력 없음</li> <li>- 심하지않은장애(기준4~6급)은 근로능력미약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li> </ul> </li> <li>• 병원진료 유무 파악</li> <li>•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파악(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가능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2개월 이상) 제출</li> <li>- 발급불가 : 조건제시유예를 위한 진단서 제출(3개월 이상 치료 필요)</li> </ul> </li> <li>• 상정특례 대상 확인 : 상담내역 기록(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 없음)</li> </ul>
소득 및 재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및 현재 소득활동 유무(실업급여 받으면 종료 후 다음달 신청)</li> <li>• 재산사항 파악(자동차 꼭 확인)</li> </ul>
거주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전세, 월세)·임차 여부 및 무료임차 여부</li> <li>• 전대차 경우 월세를 내고 있으면 전대차 관계 확인서 작성(13페이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임대인 경우 별도가구특례만 주거비 지원 안내</li> </ul> </li> </ul>
부양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와의 주거 및 소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만 신청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대상자 파악</li> </ul> </li> <li>• 가족관계해체 주장 시 해체 사유를 소명서 제출 등</li> </ul>
주요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정을 원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 등</li> <li>• 상담내역에 쓰기 힘든 내용은 포스트잇으로 전달</li> </ul>

### 초기상담 질문지 활용

- ▶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해당에 체크
- ▶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에 체크
- ▶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하여 판단. 초기상담 대상자의 의뢰사유와 특성에 따라서 질문의 순서와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 문제영역은 아니지만 긴급요구와 서비스신청 지원요구를 질문할 수 있음

## 전대차 관계 확인서

**전 차 인**  
(수급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주택소재지			
사용현황	<input type="checkbox"/> 주택 전체	<input type="checkbox"/> 주택 일부	
사용인 부담액	월	원(보증금	원)

본인이 임대차 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전차인(수급자)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대 인**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5 초기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강점관점)

### “클라이언트가 처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 ▶ 강점관점 사회복지 실천원칙 (Saleebey, 2006)<sup>1)</sup>

- **첫째**, 모든 개인,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갖고 있다.
- **둘째**, 역경은 도전이자 기회라고 본다. 즉, 트라우마, 학대, 질병과 투쟁(struggle)은 상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
- **셋째**,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말고 개인, 집단, 사회의 역량을 진지하게 찾는다.
- **넷째**, 이용자와 협력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협력자나 전문가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 **다섯째**,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 이용자가 종종 역기능적 지역사회의 산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높은 범죄율, 낮은 학교 참석율, 청소년 임신 등), 이 때 사례관리자는 사무실을 떠나서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상담의 기본은 이것!

- 상담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의 자세이다.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건강한 반응의 모범을 보인다. 침착한, 예의바른, 정돈된,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 수집 시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질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바로 물어볼 수 있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민감하게 파악한다.
-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경험하고 있는 반응에 대한 정상화, 대처기술을 제공한다.
- 상담자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내에서 시도하거나 변경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 전화상담은 이렇게!

- 상담 시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유지한다.
- 대상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 보다 더 신중하게 경청하고 대상자의 언어표현, 감정(울고 있는지, 흥분 또는 분노상태 등), 의도 등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한다.
-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야기 도중 말을 끊지 않도록 한다.
-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대화하고 상담 중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질문은 피한다.
- 상담 중 대상자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하면서 상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

1) Saleebey, D. 200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Allyn and Bacon.

- 대상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대화의 흐름이 끊기거나 침묵이 있는지 대상자의 말이 끝났는지, 상담자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지)
- 대상자가 침묵을 보일 경우 전화기 넘어 반응이 확인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 음성으로만 상담이 진행되므로 목소리 높낮이, 속도 등 의사 표현에 유의한다.
-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전화 받지 않는다.
- 대상자가 전화를 끊기 전에 상담을 종료하지 않는다.

### ▶ 상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의 능력을 과장하지 않는다.
-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선불리 판단하고 병리화하지 않는다.



## 6 초기상담과 사후관리-자치구 사례

사례 ①

마포 리마인드 콜 (Mapo Remind Call) 사업

### ▶ 추진배경

- 주민센터 최초 방문 복지상담 주민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 최초 복지상담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생활고로 복지 상담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등 사후관리를 받지 못함

※ 오피스텔 거주 80대 노인 사망 사건

거주지 퇴거요구와 생활비 마련 방법 부재로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을 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곤란을 겪다가 사망

- **비수급 복지상담자 관리** 체계 미비
  - 비수급계층 주민은 일회성 내방상담 후 복지사항지대로 남게 되는 경우 발생
  - 개인의 관심과 민감성에 의존하는 상담이 아닌 관리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절차 필요

### ▶ 추진방향

- 위기 상황 판단을 위한 최초 상담자 개발·활용으로 상담 직원 간 복지 감수성 편차 해소
- 최초 상담자가 복지사항지대로 남지 않도록 리마인드 상담을 통한 사후 관리 필요

- 복지팀장의 역할부여로 복지담당자의 위기개입 및 서비스연계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환류 할 수 있는 복지슈퍼바이저 역할 수행
- '종합상담 - 리마인드 상담 - 위기개입 평가'로 이어지는 공식적 업무 프로세스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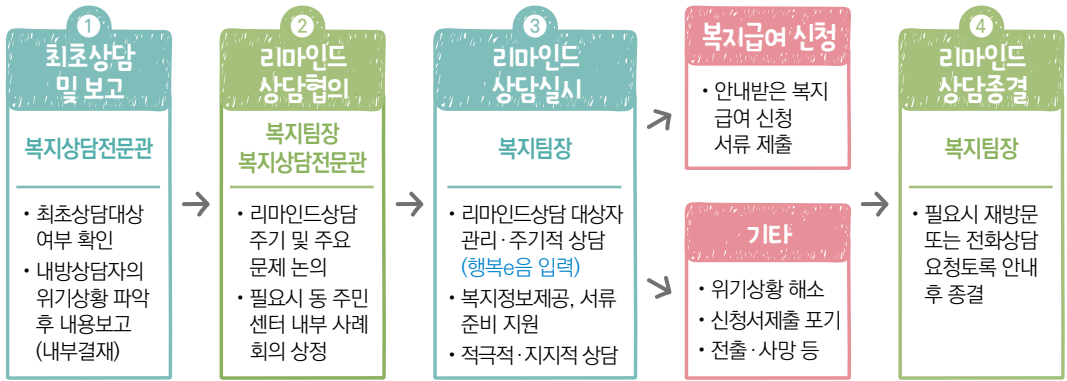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내방 상담자 중 저소득 법정급여 최초상담자 및 전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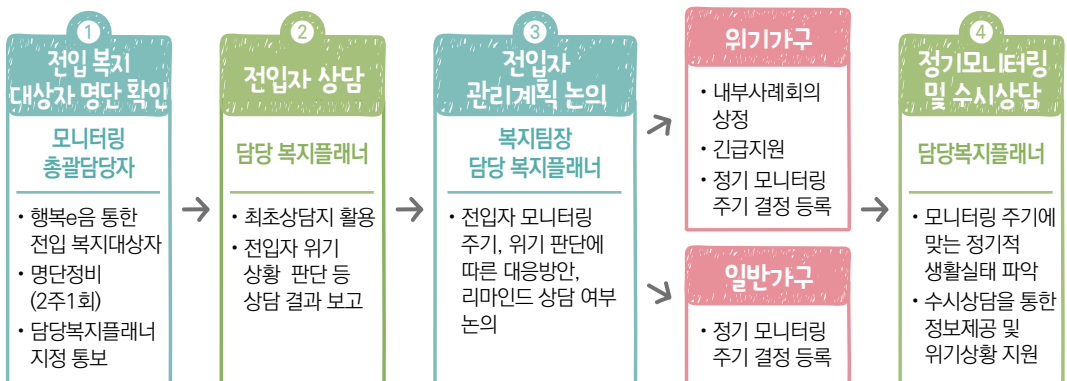
### ※ 필수연계대상

- ① 복지급여 관련 신규상담자
- ② 기초연금 연령도래 신청자중 위기상황자
- 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전입자

- 최초상담자 리마인드 상담·관리



- 전입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상담·관리





“나는 당신의 첫 복지공무원입니다”

## 최초 상담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요요구	피상담자가 호소하는 주요내용				
생활실태	1. 가구구성 : 노인 단독 / 노인 부부 / 한부모 / 부부중심 / 중장년 단독 / 청년 단독 / 기타( ) 2. 가구원 질환 및 장애 유무 : 치료중인 질환, 장애내역 등 3. 가구원 근로유무 : 상시근로 / 정기적 일용근로 / 비정기적 일용근로 4. 소득 : 가구 소득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부조 등) 가구 소득 금액( ) 원 5.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기타(고시원, 모텔, 노숙 등) 6. 재산(주거, 금융, 차량 등) : 보증금( ) 금융재산( ) 차량( ) 7. 부채 : 부채 종류(은행 또는 저축은행대출 / 카드대출 / 사채 등), 금액( ) 원 8. 연체·체납(건보, 공과금, 월세 등) : 연체내용, 연체기간, 연체금액				
사회관계망	9. 부양의무자 : 비상연락 가능 번호 10. 모임·종교활동 등 여부 : 11. 힘든 마음과 상황을 털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관계 / 비상연락 가능 번호				
위기상황 판단	<input type="checkbox"/> 건보료/공과금/월세 등 연체·체납이 3개월 이상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퇴거위기에 있거나 고시원·모텔 거주 등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향후 생활비 마련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도움을 받을 만한 사회관계망이 없거나 매우 빈약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상담중 감지되는 불안·우울·자살사고(시도)의 징후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자의 위기 판단( )				
상담자 의견	※ 네 가지 이상의 위기상황 : '반드시' 복지플래너 즉시 연계, 팀장의 3일 내 리마인드 상담 및 가정방문 실시				
	(국가/서울형)긴급복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복지플래너 연계	<input type="checkbox"/> 즉시 연계 <input type="checkbox"/> 복지플래너 연락처 안내			
리마인드 상담 (팀장수행)	최초	<input type="checkbox"/> 3일 내 <input type="checkbox"/> 1주일 내			
	주기	<input type="checkbox"/> 주1회 2주간 <input type="checkbox"/> 주1회 3주간 <input type="checkbox"/> 주1회 4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담자 조치내역	신청서 배부 (내용 : ) 신청서 미배부 (사유 : ) 기타 (내용 : )				
기타					
상담일		상담자			

※ 복지팀장님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이후 연락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렸나요?

### ▶ 상담 후 확인 필요가구에 대한 대장 작성

- 복지상담관 관리대장 양식

연번	날짜	상담자	대상자	생년월일	상담내용	1차 (내용/점검일)	2차 (내용/점검일)	3차 (내용/점검일)
1	00	○○○	○○○	00000-1	*확인필요가구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조회	기존 계약서로 접수 가능 안내 (재안내/0월0일)	주거급여 접수 완료 (조사중/0월0일)	주거급여 책정 완료 (종료/0월0일)
2	00	○○○	○○○	00000-2	*확인필요가구 도시가스 단전 예고서들고 내방	서울형 긴급지원 연결 맞춤형 복지 급여 재안내 (재안내/0월0일)	서울형긴급지원 완료 주거접수중 (조사중/0월0일)	

### ▶ 복지상담관 상담 사후관리 업무 순서

- 상담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확인필요가구)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상담내용을 작성한다.
- 행복e음에서 상담\_상담 현황 전체를 엑셀로 다운 받는다.
- 상담내용 중 (\*확인필요가구)라고 작성한 상담 내용을 간추린다.
- 상담관별로 본인의 상담자에 대해 2차, 3차 점검을 하고 행복e음에 레코딩하고, 엑셀로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 점검표를 엑셀로 만들어 결정한 주기별 점검을 한다. 필요시 주간 혹은 월간으로 점검
  - ① 주간 : 사례회의시 공유하고 동료 슈퍼비전 자료로 이용
  - ② 월간 : 매월 점검결과는 1, 2, 3차에 걸쳐 최종 종결 내용 확인
- 월별 관리대장 진행여부를 매월 내부 결재 받는다.

### ▶ 업무 활용 평가 및 후기

- 수기 대장은 작성하였으나 상담관별 대장관리에 편차가 큼
- 상담관 업무가 바쁘고 행복e음에 레코딩하기에도 벅차서 별도 업무가 되지 않도록 조절 필요
- 사례회의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는데 유용함.
- 수기대장은 지속적인 점검표 작성에 한계가 있음.

**홍모 주무관** : 상담관 하는 날은 하루종일 상담하기도 바빠서 다시 민원인을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는데 점검표를 통해 나의 상담을 돌아보게 됨

**류모 주무관** :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 초기 상담을 꼼꼼하게 작성하게 됨

**윤모 주무관** : 불안했던 상담 업무가 나름 모니터링 보호장치가 있어 나와 민원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 있는 안정감을 줌

**박모 주무관** : 긴급한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사례회의를 통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어요



**7 초기상담 사례** (※2022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 사례 발췌)

**case1. 무리한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Q** 이사를 왔으니 살림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 및 용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사 때마다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게 같은 요구를 해왔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p><b>대상자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인 70대 독거 어르신</li> <li>• 심장 수술 병력이 있음</li> <li>•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li> </ul>
<p><b>대상자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서 생활 중 전세임대주택이 선정되어 서울로 이사함</li> <li>• 이사하면서 사용하던 살림살이를 모두 버리고 왔다고 함</li> <li>• 가족과 단절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예전 담당자는 잘했다”라고 반복하여 표현함</li> <li>• 전화와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옴</li> </ul>

## 대상자 이해

- 어떤 대상자는 우리에게 불행을 과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함.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괴로운지를 상대에게 알려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며 자원을 끌어내려 하는 것임.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 어느 사람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는 공공복지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지 봉사자나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복지 대상자들의 연약함이나 취약함이 무기나 권력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려사항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에서 지침과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임.
- 대상자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이나 반복적인 요구사항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원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침과 규정에 맞게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안내하도록 노력해야함.
- 다만, 지원 결정을 하는 원칙(지침과 규정)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유념.
-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규칙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3회 답변을 한 후부터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하고 감사실과 협업하여 대응하는 방법 고려도 필요함.

## 대응방안

- 이러한 무리한 민원은 팀(조직)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변 모두가 같은 논리(이론)로 통일하여 대응하도록 함. 초기상담에서 무리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
- 우선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팀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에 대해 기관의 대처 방향을 정하고 무리한 민원의 대응책을 준비(대응방안에 대해 기록한 것을 내부결재)하여야 함.
- 민원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유발할 시에는 팀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함. 지속적인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대기하는 다른 민원과 처리해야 할 업무로 많은 상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제한된 시간동안만 상담을 진행함.
- 여러 차례 안내와 제지를 한 후에도 협박성 전화가 계속될 시에는 녹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음.





**case2. 무기력하고 비자발적인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대상자가 무기력하고 상담 시에도 비자발적인 상태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렵습니다. 진행을 종결하기에는 대상자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요?

 대상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40세 미혼의 남성 1인 가구</li> <li>• 고아로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함</li> <li>• 대학 중퇴 후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함</li> </ul>
 대상자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를 체납하고 방 안에 고립돼있어 우려된다며 대상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함</li> <li>•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고, 긴급 복지를 통한 지원을 받게 됨</li> <li>•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 대상자가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종료됨</li> <li>• 사례관리자가 전화상담을 시도해도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대면상담 시에도 대상자가 말을 하지 않아 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태임</li> <li>• 무기력증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안내했으나 거부함</li> </ul>

**대상자 이해**

- 대상자는 삶 전반에 대해 가치를 못 느끼거나 자기혐오가 강하여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되는 상태임

**대응방안**

- 이런 경우 대상자 스크리닝을 하며 표출되는 욕구가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과정에서는 단순한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무기력, 우울 대상자의 특성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협조가 필요함.
- 그리고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 case3. 무리한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1.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실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대상자 집에는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상태이고, 만취 상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반복해서 올립니다.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대상자 정보

- 만 59세의 중년 여성 1인 가구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였으며 2인의 성인 자녀가 있음
- 음주 문제로 결혼 생활 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경험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만취 상태로 집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음
- 자녀의 직장에 전화해 욕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자녀와는 분가 상태임



대상자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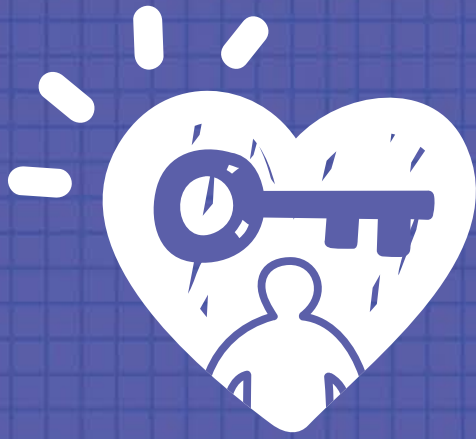
- 층계가 위험한 옥탑에 거주하고 주취상태에서 넘어져 골절이 잦음
- 비위생, 상처치료 방치, 자살 시도로 식도가 타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움
- 알코올 중독이 있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음이 잦음
- 자녀 방은 잘 정리되었으나 대상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남

#### 대상자 이해

- 반복적인 자살시도 경험과 공공기관에 지속적 자살예고를 하고 있음. 하지만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음주 상태가 지속되어 원활한 소통과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움

#### 대응방안

-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 스스로가 매우 당황하며 어떻게 말을 이어나갈지, 개입을 해야할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자살을 수단화 하는지 목적화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함.
- 자살을 수단화 하는 경우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어를 통해 행동수정을 반복해서 해야함. 예를 들어 지금 전화를 받는 직원이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수단적 자살을 이야기 할 때는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119 에 구조요청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실제 신고를 진행하도록 함.
- 자살을 목적화 하는 경우는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개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초기 상담 이후 전문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과 공조하여 대응하도록 함.



## 2. 긴급복지지원

## 2. 긴급복지지원



### 1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일시적인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휴·폐업, 실직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 2)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 신청·접수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처리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원요청</b>: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li> <li>• <b>신고</b>: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 <b>신고의무자</b> - 의료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통장, 부녀회장 등</li> <li>• <b>신고접수</b>: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li> </ul>	동/구
현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b>: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li> <li>• <b>주체</b>: 읍면동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 경찰소방서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li> <li>• <b>시기</b>: 1일 이내 현장확인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 129 요청 또는 신고연계 받은 경우 우선 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 확인 → 필요성 신속하게 판단 및 현장 확인 등 실시</li> </ul>	동/구
지원결정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기</b>: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b>지체 없이</b> 지원 결정, <u>72시간 이내</u>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li> </ul>	구
사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b>: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확보</li> <li>• <b>시기</b>: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li> </ul>	구
적정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b>: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 방지</li> <li>• <b>주체</b>: 긴급지원심의위원회(<b>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예시)생활보장위원회</b>)</li> <li>• <b>심사대상</b>: 최초 실시한 선지원 1개월(회) 지원 건 / 금전 및 현물지원한 건 / 적정성 심사 이후 가구원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li> <li>• <b>심사완료 시기</b>: 선지원 결정일로부터 <u>3개월</u> 이내 ※<b>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b></li> </ul>	구
지원연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목적</b>: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li> <li>• <b>1차(지원연장)</b>: 시군구청장 / <b>2차(추가연장)</b>: 긴급지원심의위원회</li> </ul>	구
지원중단, 비용반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li> <li>•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li> </ul>	구



##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것이 원칙

### 2)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6,080,637원)

- 재산 : (대도시) 241,000천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 69,000천원) 적용시 310,000천원 까지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22.7.1.부터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 100% 확대 적용 중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존금융재산기준	6,000,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65%	1,351,000	2,247,000	2,883,000	3,511,000	4,115,000	4,699,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금융재산(기타 일시금)

### 위기상황 인정사유 (간급복지지원법 제2조 요약)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구별1명 한정)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 생계)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노인·아동·장애인학대)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 곤란
7.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치구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급복지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위기상황)

- 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 미미
- ②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
- ③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
- ④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⑤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 ⑥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⑦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곤란
- ⑧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 ⑨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곤란
- ⑩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 중단
- ⑪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
- ⑫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아래요건 모두충족
  - 가. 임시거주지 포함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곤란
- ⑭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 ⑮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 ⑯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
- 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 가.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나. 무급휴직일 전월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9,620원x60시간=577,200원
  - 다.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라. 주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 나.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21년도 동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다. 주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 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21년도 동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나. 주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⑪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지원내역

(단위: 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기간	
주 지 원	생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개월 (최대6개월)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 시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li> <li>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li> </ul>						1회 (최대 2회)	
	주거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지원기간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1개월 (최대12개월)
복지 시설 이용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기간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1개월 (최대6개월)	
부 가 지 원	교육	학교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기간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고지역)		1회(분기) (최대 4회)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료비(10~3월): 110,000원/1개월(최대 6개월)</li> <li>해산비: 700,000원/1회</li> <li>전기요금: 500,000원 이내/1회</li> <li>장제비: 800,000원/1회</li> </ul>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님

※연료비 인상: (기준)11만원 → (변경)15만원('23.2.22.~12.31.)

## ▶ 위기상황별 요건 확인자료

구분	요건	참고자료
----	----	------

선지원 시 위기상황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대리현장 확인자가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활용하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징구

주 소 득 자 의 사 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li> <li>부소득자인 경우, 가구원 내 1명에 한함</li> </ul>	<p><b>(아래서류중 택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li> <li>가출신고 접수증</li> <li>수용증명서(정부24 발급가능)</li> </ul>
	<p><b>(의료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li> <li>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li> <li>중간진료비영수증</li> <li>입원확인서(단,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li> <li>보험증권 유무</li> </ul>
중 한 질 병 또 는 부 상	<p><b>(생계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li> </ul>	<p><b>(아래서류중 택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li> <li>현장확인서</li> </ul>

구분	요건	참고자료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 유기 /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 포함</li> <li>• 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해석 상 지원</li> <li>• 노인학대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추천서</li> <li>•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li> <li>• 현장확인서(※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li> </ul>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추천서</li> <li>•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li> <li>• 현장확인서(※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li> </ul>
화재 / 자연재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시) 화재증명원</li> <li>• (자연재해 등) 현장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매/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li> <li>• 퇴거명령서</li> </ul>
휴·폐업 / 실질영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확인,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li> <li>•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li> <li>•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사실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li> <li>•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li> <li>•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인 경우, 화재증명원</li> <li>• 실질적 영업곤란 시, 현장확인서</li> </ul>
실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가입여부</li> <li>• 실직여부</li> <li>•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li> <li>•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li> <li>•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월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 이상이면 인정)</li> <li>•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li> <li>• 경력증명서</li> <li>•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li> <li>•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등)</li> <li>•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 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li> </ul>

구분	요건	참고자료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혼판결문(정본) •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혼 조정기일 통지서 • 이혼 변론기일 통지서</li> </ul>
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독촉 고지(서)후 전류 제한기 설치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 (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li> </ul>
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정시설 출소자(만기, 가석방, 형 집행정지)</li> <li>구금기간 1개월 이상,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li> <li>가구구성원 중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 관계 단절 또는 근로능력 없는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소증명서</li> <li>법원 결정문</li> </ul>
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추천 ※ 시설이 없는 지역은 현장확인서 통해 지원 가능</li> <li>노숙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지원 추천서</li> <li>현장확인서</li> </ul>
복지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혹은 지자체/민관 협력으로 발굴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li> <li>수시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의뢰된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지원 의뢰서</li> </ul>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지원 의뢰서</li> </ul>
자살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가구 중 생계곤란한 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지원 추천서</li> </ul>
코로나19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경영난 발생하여 무급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중 무급휴직 전 매월60시간 이상 근로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li> <li>부소득자인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li> </ul>	<p>(아래서류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li> <li>무급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li> <li>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20년 1월 / '19년도 동월 / '20년도 동월 / '21년도 동월에 피해2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부소득자인 경우, 전월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 이내)</li> <li>지원요청일 전월 VAN사·카드사 또는 POS (핸드폰사진, 화면캡처,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li> <li>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내역서 등 국제정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li> <li>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20년 1월 / '19년도 동월 / '20년도 동월 / '21년도 동월에 피해2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부소득자인 경우, 전월 매출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 거래내역 사본</li> <li>용역계약서</li> <li>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li> </ul>

## ▶ 상담시 TIP

### 1) 위기사유 발생시점

- 단전, 실직, 폐업, 출소, 노숙은 지침 명시된 기간 준수
- 그 밖에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

### 2) 지원기간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은 1회지원이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추가 2개월 연장 가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3개월, 주거 9개월, 의료 1회, 교육 최대3회 범 위에서 추가연장 가능(★추가적 위기 사유 파악 필요)

### 3) 재지원

- 지원 종료일 기준 2년 경과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지원 가능(생계지원의 경우 1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생계지원의 경우 6개월 이내 지원 불가)
  - ※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 ※ **중환자·부상을 당한 경우의 의료지원 및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 4) 별도가구 특례 적용 불가

- 가구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 지원**

### 5) 의료비 상담 시 확인사항

-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척추성질환,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진단서 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が必要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③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 ④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가능
-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동일상병 : 질병코드 상 3자리 코드 일치/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단, 상이한 질병은 종료시점 관계없이 의료지원 가능

---

- ⊙ 사보험가입자의 경우 수령할 보험금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 ⊙ 보험증권 세부내용(보험종류, 계약자-주피보험자, 보장내역, 실효 및 해지 여부 등) 확인 필수
  - 보험증권 제출 안내(실효 및 해지 주장하는 경우 사실 확인서류 제출)

---

- ⊙ 납부총액 300만원 이하여도 지원불가항목 등의 사유로 환자부담액 발생함을 반드시 안내

---

- ⊙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21.1.1. 신청분부터)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상담내용만 입력(상담·신청 ⇨ 초기상담 ⇨ 단순안내)

##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일시적인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휴·폐업, 실직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 2)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3)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 생계 곤란
  - 수도·가스 등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중단,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 4)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등
  - 지원결정 : 동 사례회의 구성하여 지원물품 및 금액 결정
- 5) **주요 변경사항**

#### 지원절차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연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분	평시 기준	한시적 기준 완화 (~'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10백만원	379백만원	409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 (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 (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 (회계연도)	1년 내 불가 (회계연도)
돌봄SOS서비스 이용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계지원 (만원, 가구)	30(1인) ~ 100(4인 이상)	30(1인) ~ 100(4인 이상)	62(1인) ~ 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 **선정기준**

※ 한시적 기준완화 폐지(2023.1.12.부터)에 따른 평시기준 적용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75% (국가형긴급복지 기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 재산 : 409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존 금융재산 기준(A)	10,000,000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B)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금융재산기준 최종 (A+B)	12,077,892	13,456,155	14,434,816	15,400,964	16,330,688	17,227,981

4)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회계연도 기준)

<p><b>위기상황 인정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지원법」로 정한 위기상황</li> <li>▶ 동·구 사례회의의 통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li> </ul>
---

▶ **지원내용**

1)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현금지원 : 생계지원, 의료비원, 주거지원 등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현물지원 : 물품구입 지원, 의료기관에 의료비 송금, 임대인 계좌에 임차료 지급, 공과금 등 수납기관 입금 등(담당자 선지원 제도의 경우 현물 지원만 가능)

2)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지원항목	가구원수						추가 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은 국가형 긴급지원사업 준용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연료비 인상 : (기존)11만원 → (변경)15만원('23.2.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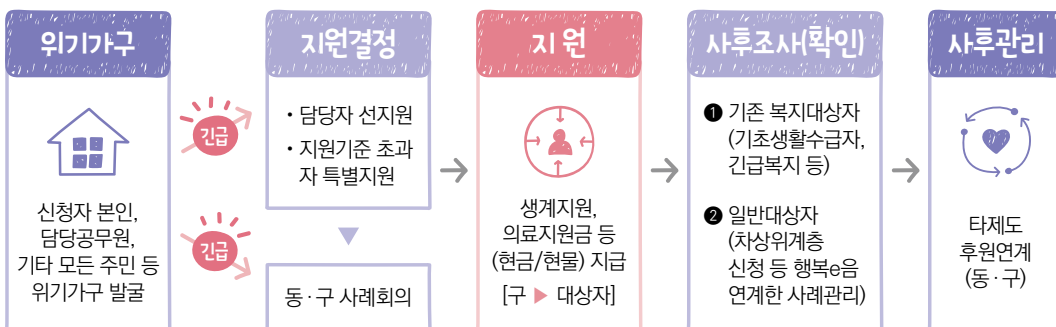
3) 지원횟수 : 1회 원칙

- 생계·의료지원의 경우 최초 지원 시의 위기상황 과 상이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1회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의 경우 동일한 위기상황 계속 시, 특별지원 1회 추가지원 가능**  
 ※ 생계지원의 경우 최대3회 지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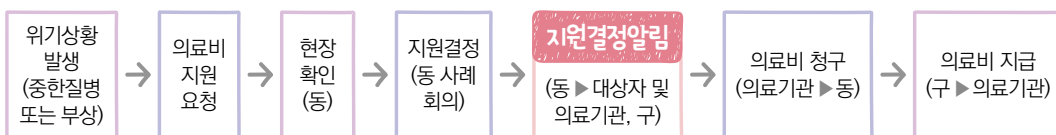
## ▶ 지원종류별 세부내용 및 시스템 입력방법

### 1 서울형 긴급복지

#### 1)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절차



#### 2) 의료비 지원절차



- 의료기관 등에 지원결정 알림 시 반드시 문서(공문)로 통보
  - 의료기관에서 동 주민센터로 의료비 청구 시 관련 서류 등기 송부
    - ※ 관련서류 : 의료기관용 청구서(서식8호 참조), 의료비산출내역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 수신하면 구로 의료지원 청구서 송부 공문 발송

#### 3) 지원절차별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요청(신청)	•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본인)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
실태조사 (현장확인)	•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조사표 활용하여 적합여부 확인 • 행복e음 또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이력이 전무한 경우 서류 징구 등을 통한 자체 파악 필요
지원결정 및 지급	• 실태조사 및 동 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 결정·실시 (지원항목별 중복지원 가능)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 통해 사후 승인
시스템 입력	• 지원 즉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원내용 입력
사후조사	• 기존 복지대상자 : 행복e음 이용하여 최근 조회된 공적자료를 활용 • 일반대상자 : 타지원제도(차상위계층 확인 등) 동시 신청 권유 및 서류 징구를 통해 기존 적합여부 확인 → 소득·재산 초과 확인 시 동 사례회의 심의 거쳐 특별지원 또는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및 민간후원 등 연계

#### 4) 동·구 사례회의

- 구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주민센터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 역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내용(물품, 금액) 결정
  -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여부(추가지원 포함) 및 지원내용(물품, 금액) 결정
  -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결정 여부 심사 등
- 의미 : 지원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차원 검토 절차

### 2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1) 지원기준 : 체크리스트 상 '고·중·저'로 판별된 고독사위험 가구
  -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가능
- 2)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3회 가능(원칙 1회+추가 1회+특별지원 1회)

####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 생계지원 1인가구 금액 내에서 특별지원으로 현물 1대 지원가능(IOT)

- 3) 유의사항 :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및 특별지원 확인서(서식4호) 필수 첨부

### 3 생계지원 중 폭염·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 1) 지원기준 : 폭염·한파 기간(서울시 발령 기준)
- 2) 대상 :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며, 폭염·한파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 3)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현물만 추가 지원(냉방용품·방한용품)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을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현물 예시 : 난방기구(선풍기, 쿨매트 등), 비상용품(물, 모자, 모기퇴치기 등), 한파관련 물품(의복, 전기매트, 침낭 등)
  - 현물 대신 현금 지원불가
- 4) 유의사항 : 특별지원 확인서(서식4호) 필수 첨부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1) 행복e음

- 지원 세부내용 입력(상담·신청 ⇨ 초기상담 ⇨ 단순상담)

The screenshot shows the '초기상담 등록' (Initial Consultation Registration) pag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상담' (Consultation), '신청관리' (Application Management), and '조사,결정' (Survey, Decision). Below the title bar, there are navigation links like '홈', '초기상담 등록', and '초기상담 등록 11100 (UWSM11100M)'. The main section is titled '대상자정보' (Target Information) and includes fields for '대상자구분' (Target Category) with radio buttons for '내국인' (Domestic), '외국인' (Foreign), and '미식별' (Unidentified), along with '대상자성명' (Target Name), '대상자전화번호' (Target Phone Number), '등본주소' (Residence Address), and '주소' (Address). Below this is a '최근상담' (Recent Consultation) table with columns for '상담일자' (Consultation Date),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상담경로' (Consultation Path), and '상담자 성명' (Consultant Name). At the bottom, the '상담등록' (Consultation Registration) section has a '상담구분' (Consultation Category) with radio buttons for '단순안내' (Simple Guidance), '요청접수' (Request Reception), and '가구관리' (Garage Management). The '단순안내'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fields include '상담일자' (2023-01-29), '상담장소' (Administration Center), '사회보장급여' (Social Security Allowance), and '특이사항' (Special Notes).

###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프로그램 설치 : <https://wis.eseoul.go.kr> ⇨ 회원가입
  - 권한승인 요청 : 업무담당자(서울형 긴급복지) ⇨ 구 담당자 승인처리 후 이용 가능
  - 지원결과 등록 : 지원대상 등록관리 ⇨ 조회(미등록자의 경우 '신규' 버튼) ⇨ 결과 입력
- ※ 세부내용 매뉴얼 참고

# 1인가구 실태조사표

1. 조사대상자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① 남 ② 여	주택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보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자활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확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2. 조사 진행 결과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조사 완료		<input type="checkbox"/> 조사 완료 → 3-5번 항목 이동				
	<input type="checkbox"/> 조사 불가		※ 사유 표시 <input type="checkbox"/> 조사 거부 <input type="checkbox"/> 부재 (3회이상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제 1인가구 아님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미거주 (타인 거주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				
3. 주요 생활실태							
혼인 관계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有(별거)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1인 가구 사유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운 독립생활 희망 <input type="checkbox"/> 직장(일자리) <input type="checkbox"/> 학업·취업준비 <input type="checkbox"/> 동거인 사별 또는 이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1인가구로 생활하신 기간:    년    월						
가족 현황	<input type="checkbox"/> 부모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대면, 비대면) 횟수 <input type="checkbox"/> 월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자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대면, 비대면) 횟수 <input type="checkbox"/> 월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형제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대면, 비대면) 횟수 <input type="checkbox"/> 월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경제 활동	<input type="checkbox"/> 직업 有 (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근로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월평균 소득 ( <input type="checkbox"/> 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1~1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1~150만원 <input type="checkbox"/> 151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직업 無 ↳ 생활비 마련 방법 (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사적이전소득 <input type="checkbox"/> 각종 연금 <input type="checkbox"/> 기보유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거 현황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지상 <input type="checkbox"/> 지하 <input type="checkbox"/> 옥탑)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연립·빌라 ( <input type="checkbox"/> 지상 <input type="checkbox"/> 지하 <input type="checkbox"/> 옥탑 <input type="checkbox"/> 매입임대)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쪽방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input type="checkbox"/> 비주거시설 보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보증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료임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input type="checkbox"/> 위생불량 <input type="checkbox"/> 안전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건강 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장애 ( ) <input type="checkbox"/> 질병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회 활동	<input type="checkbox"/> 주1회 미만 교류 (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취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주1회 이상 교류 (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취미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교류 없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중·장년 1인 가구 조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 ( )은(는)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종합상담에 동의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인의 욕구, 개인이력,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 따라 업무 담당자와 서비스 협력기관에 제공하고 상담 및 복지플랜과 관련된 서울시 정보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것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구 보건·복지·고용·마을·업무관련기관 및 서비스 협력기관 정보공유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b>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수집하는 선택정보 및 민감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정보 및 민감정보 : 보호구분, 세대유형(혼인관계), 비상연락망, 주거실태(형태, 환경), 가족사항, 근로형태, 월소득(지출), 부채, 자산정도, 건강상황, 장애등급 및 장기요양등급, 사회적상황, 정부 및 민간단체 지원여부, 여가 및 사회활동,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주요육구사항, 생활민원사항 등</li> <li>·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증명서,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li> </ul>
<b>선택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li> <li>· 보유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보관</li> <li>· 보유기간 종료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li> </ul>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의 동의 거부시 ( )구 내 복지상담을 통해 연계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및 서비스이용, 정보제공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곳	이용목적	제공항목
정부 공공기관	대상자육구에 따른 유·무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	위 ①의 정보
사회복지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관		
기관과 연계된 결연후원자 및 단체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경제적 긴급성에 따른 후원금품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li> <li>· 보유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보관</li> <li>· 보유기간 종료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li> </ul>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시 ( )구에서 연계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및 서비스이용, 정보제공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b>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14세미만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위임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 고독사 위험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질문 방법과 작성 가이드'

구분	질문 내용	확인결과	배점기준	점수
① 실패·상실감 누적(10)	① 최근 10년간 일과 관계에서 실패와 상실 경험 횟수는? 이별(사별, 이혼, 결별 등), 배신, 폭력, 실직, (시험, 사업)실패, 노숙, 수급탈락 경험 등	( )회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10) <input type="checkbox"/> 2회 미만(0)	
	② 지난 1주일 평균 하루 식사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0)	
② 고립적 일상 (40)	③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0)	
	④ 지난 1주일 동안 만나거나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0)	
	⑤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Blackout)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상(10) <input type="checkbox"/> 없음(0)	
③ 사회적 고립 (20)	⑥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input type="checkbox"/> 없음(10) <input type="checkbox"/> 1명 이상(0)	
	⑦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input type="checkbox"/> 없음(10) <input type="checkbox"/> 1명 이상(0)	
④ 이동성 높은 생애(10)	⑧ 지난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인 경우가 있는지?	X	<input type="checkbox"/> 있음(10) <input type="checkbox"/> 없음(0)	
⑤ 돌봄과 지원 중단(10)	⑨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퇴원)한 경우가 있는지?	X	<input type="checkbox"/> 있음(10) <input type="checkbox"/> 없음(0)	
총계 (90)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군(70~90점) <input type="checkbox"/> 중위험군(40~60점) <input type="checkbox"/> 저위험군(30점이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0점)			

### ▶ 작성 개요

- 고독사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일상적 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상담 하고 내용을 기입함.
- 기본사항, 주요 문제 등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고독사 판단기준 체크 리스트에' 적용
- 기본사항, 주요문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가적으로 확인 필요 - 가족상황, 수입과 수급 상황, 사회활동, 질병 등 주요 욕구에 대한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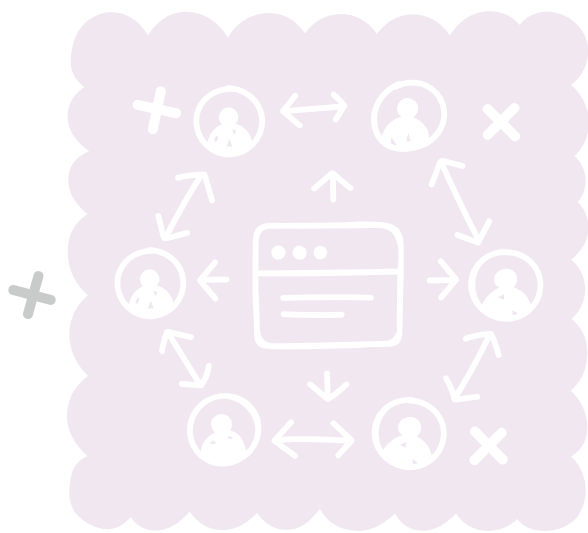
### ▶ 주요 항목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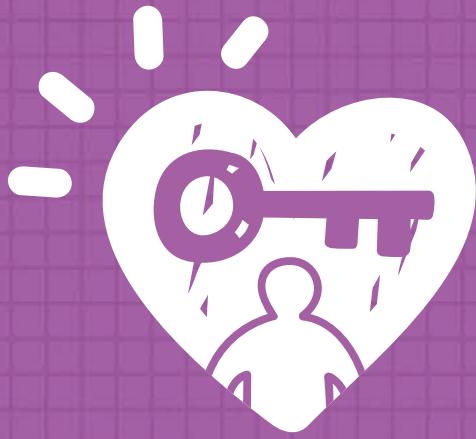
구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① 실패·상실감 누적	질문예시	최근 10년간에 이혼, 사별, 시험실패, 수급 탈락 등이 4회나 있으셨네요? 대답 듣기
	기록방법	사업실패와 동업자의 배신이 동시 발생한 경우는 2회로 기록 자녀 사망과 이혼이 동시 발생한 경우 2회로 기록 수급탈락과 노숙이 동시 발생한 경우도 2회로 기록 등
② 고립적 일상	질문예시	•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몇 끼를 드세요? 주로 어떤 식사를 하세요? • 외부,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시는데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난 1주일간 밖에 나간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혼자 술 드세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드세요? 그런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되나요?
	기록방법	• 식사 : 과자 등의 간식 외 식사, 라면은 식사로 간주, 과자와 술만 먹는 경우는 식사에서 제외 • 외부· 사회활동 : 외출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 기록 • 술 : 1주일간 혼자서 술을 드신 횟수, 혼자 술을 드시다가 Blackout 경험한 횟수 등 기록
③ 사회적 고립	질문예시	선생님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있었어요? 각각 몇 명이나 될까요?
	기록방법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 유무,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명수를 기록
④ 이동성 높은 생애	질문예시	이 집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셨어요?
	기록방법	지난 10년간 이사경험 10회이상 이거나 거주지 미상이었던 경험 유무 파악 기록
⑤ 돌봄과 지원 중단	질문예시	퇴원하고 치료나 입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관련 돌봄서비스는 안받으시나요?
	기록방법	다양한 이유로 돌봄서비스, 입원치료를 중단한 경험 유무 파악 기록

## 주요 문제 및 욕구 파악 범례 (조사자 참고용)

대분류	중분류	문제 및 욕구 사항
① 안전 문제	가족내 안전유지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건강 문제	신체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건강유지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관리가 어렵다. 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③ 일상생활 유지문제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식사 ② 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 옷 입기(세탁포함) ④ 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 청소 ⑥ 정리정돈 ⑦ 수면 ⑧ 그 외 가사활동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가생활 활용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④ 가족관계 문제	관계형성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족 돌봄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⑤ 사회적관계 문제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1.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2.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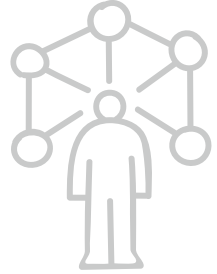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문제 및 욕구 사항
⑥ 경제 문제	기초생활해결	1.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 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 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쉼터 등). ⑦ 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 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⑨ 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자산관리	2.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3.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⑦ 교육 문제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1. 본인이나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교육환경 개선	2.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3.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⑧ 고용(직업) 문제	취(창)업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고용 유지	2.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⑨ 생활환경 문제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 화장실 ② 주방시설 ③ 도배장판 ④ 전기시설 ⑤ 가스시설 ⑥ 상하수도시설 ⑦ 냉난방시설 ⑧ 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기 등) ⑨ 창호·문짝 ⑩ 주변 환경 ⑪ 채광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 전기선 누출 ③ 누수 ④ 가스누출 ⑤ 배란다 안전장치 미비 ⑥ 방범장치 미비 ⑦ 침수 ⑧ 붕괴위험 ⑨ 그 외 기타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 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 문턱 ③ 안전바 미설치 ④ 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절 ⑤ 욕실 미개조 ⑥ 램프미설치
	주거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⑩ 법률 및 권익 보장문제	권익보장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률적 지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 1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정의

### ▶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 담당자가 통별로 나누어 복지상담전문관, 복지플래너 업무 수행

#### ※복지상담전문관(복지통합상담)

▷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담당자

#### ※복지플래너(찾아가는 복지)

▷ 누구나, 언제든지 주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 안내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진행하는 담당자

▷ 대상가구 : 돌봄위기가구, 빈곤위기가구, 사각지대

## 2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업무분야 및 절차(표준)

### ▶ 복지상담전문관(복지통합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서울형기초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계층확인), 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 한부모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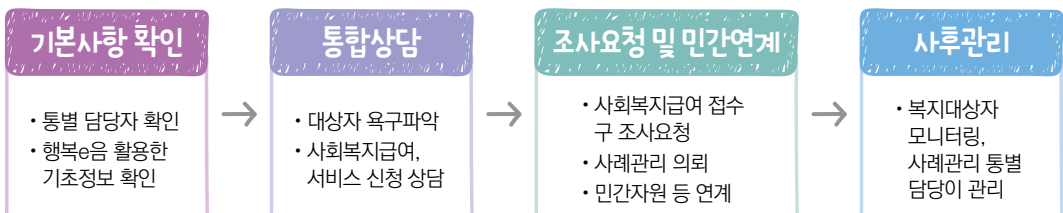
### ▶ 복지플래너(찾아가는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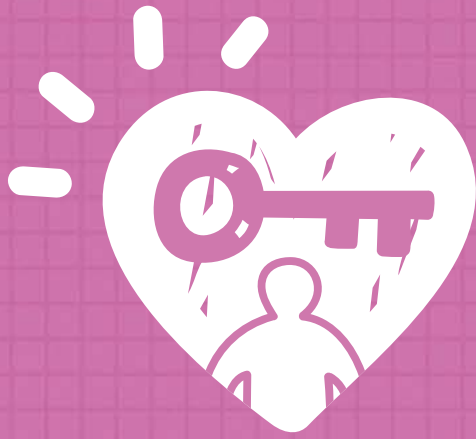
- 빈곤·돌봄위기 가구 방문 민간자원실적 연계

### ▶ 사례관리

-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 ▶ 원스톱 복지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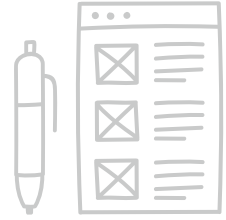
##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 1 한 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2023)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구분	소득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당공제)	재산 환산율	부양 의무자	별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지원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2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없음	불가	
서울형 긴급지원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재산기준 40,9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대도시 9,9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주거용재산 대도시 17,2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일반: 4.17% (주거용1.04%) 금융: 6.26% 자동차: 100%	1촌 직계 혈족	인정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자동차(환산율4.17%) ① 장애인사용 자동차 중 - 2,000cc 미만 승용차, 11~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 심한 장애인 2500cc 미만 자동차 ② 생업용 자동차로서 - 1,600cc 미만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 ③ 생계·의료 - 1,600cc 미만 승용차나 1,000cc 미만 승합 화물자동차중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차량 ④ 주거·교육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 -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재산특례 : 14,300만원이내(금융5,400만원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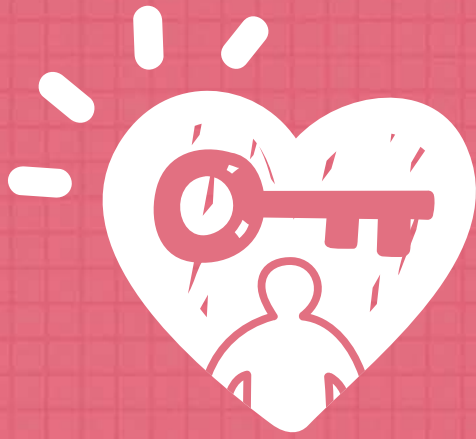
구분	소득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당공제)	재산 환산율	부양 의무자	별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형기초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주거용재산 9,900만원 공제 금융재산특례 (19세이하자녀1인당 1천만원공제) 공제 후 금융재산 기준 3천6백만원 초과시 책정 불가 → '23.4월 예정		1촌직 계혈족	부분 인정	
차 상 위 지 원  중위 소득 50%	본인 부담 경감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미정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소득)	불가
	자활									없음	불가
	경증 장애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인정
	장애 아동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인정
차상위 계층 확인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부분 (중증 장애, 질병)
한부모(급여) (중위소득 52%)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한부모가족 (증명서, 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6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없음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장애연금	미정	미정	* 무로임차소득 : 주택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 (1촌의 직계 존·비속과 자녀의 배우자 소유주택 6억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 : 기초연금 1인당 108만원(추가 30% 공제)				주택 13,500만원 금융 2,000만원	재산무관 4% / 12	없음	없음	
기초연금	2,020,000	3,232,000									

## 2 한 눈에 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구비서류

※ 서류안내 시에 반드시 가구상황에 따라 추후에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할 것<sup>1)</sup>

구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근로 활동 소득 신고서	지출 실태 조사표	통장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공용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 공용 발급	진단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가족 관계 해체 소명서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본인	가구원	부양 의무자													
맞춤형	생계 급여	○	○	△ <sup>1)</sup>	○	○	○	○	○	○	○	○	○	○	○	X
	의료 급여	○	○	○	○	○	○	○	○	○	○	○	○	○	○	X
	주거 급여	○	○	X	○	○	○	○	○	○	○	X	X	○	필요시	X
	교육 급여	○	○	X	○	○	○	○	○	○	○	X	X	○	필요시	X
차상위	한부모	○	○	X	○	○	○	○	○	○	○	X	X	X	X	X
	차상위 계층확인	○	○	X	○	○	X	○	X	○	X	X	X	○	필요시	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	X	○	○	X	○	X	○	○	○	X	○	필요시	○
	차상위 장애	○	○	X	○	○	X	○	X	○	X	X	X	X	X	
연금	기초 연금	○	○ (배우자)	X	○	○	X	○	X	○	X	X	X	X	X	○
	장애인 연금	○	○ (배우자)	X	○	○	X	○	X	○	X	X	X	X	X	○

1)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부양의무자가 한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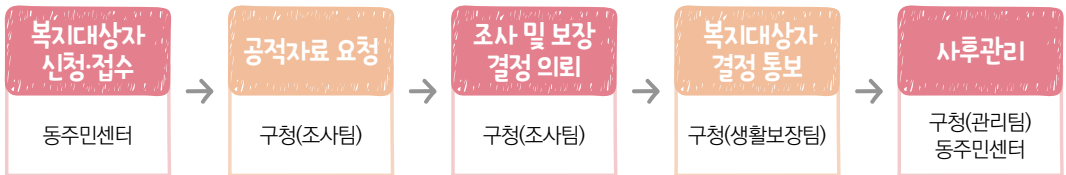
## 5. 국민기초생활보장

# 5. 국민기초생활보장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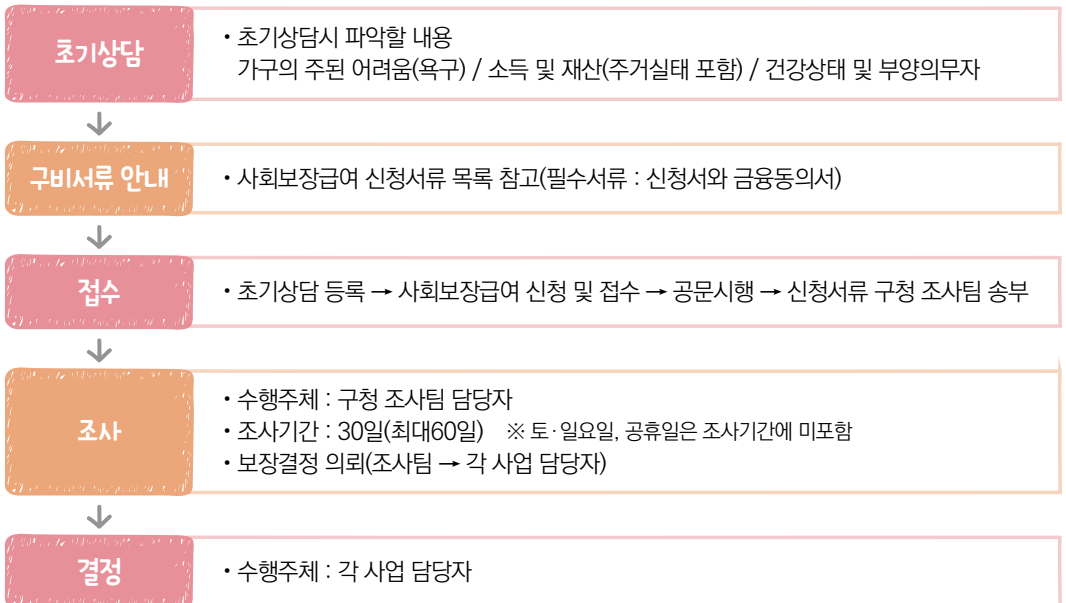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급여로 지원
- 2)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 처리기한 : 30일(연장30일 가능, 최대60일)
- 4) 지원절차



- 5) 급여신청 효과 : 급여신청일로 소급(※의료급여는 결정일)

### ▶ 신청·접수 절차



## 2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을 한줄로 세웠을 때 중간위치 소득값
-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3)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 지원내용

-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 의 생계급여액

$$\text{☞ } 623,368\text{원(기준액)} - 150,000\text{원(소득인정액)} = 473,368\text{원} \quad *\text{원단위 올림}$$

- 2)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3) **주거급여** : 임차료를 근거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및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4) 해산·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해산급여 :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0천원 지급,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필요

#### 5)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6)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무관) 차상위계층 등

### 3 보장가구

#### ▶ 보장가구의 범위 : 가구단위 보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2촌이내 혈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의 중증장애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기타 가정폭력등 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
- ▷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만19세~30세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가능(서울시 내 분리는 원칙적 불가하나, 청년이 장애 만 성질환의 경우 등 가능)

☞ 신청장소 : 부모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조사포함/소득X/보장X)

-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시작일 포함)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재외국민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단, 30일이상 거주목적으로 주민등록이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인정)

##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타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 (+1명기준)
  - ▷ 일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특례 :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특례 :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미적용
  - ▷ 한센정착촌 거주자 및 소록도 입원자특례 : 보상금, 배상금재산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특례 :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완화

## ▶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0p)

-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 부양의무자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녀에 대한)
  -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 18세이상 34세이하 자녀가 취업,창업하여 6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여 60만원 이상 하는 경우

## 가구 분리 시 기준종족 별도가구 보장

- 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 임신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34세이하))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 복지공단에서의 거주 기간은 제외)인 사람
- ②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 ③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④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 ⑥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 아니라도 적용 가능)
  -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⑦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암·중증화상 환자)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⑧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 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 4 부양의무자

### 1)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대상자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 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3) 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요구 하지 않도록 유의

###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종인사람)
  - ▷ 해외이주법제 2조의 해외이주자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등으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등 행정관청에 신고 후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결정)
  -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양자, 양부모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5)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자신의 주거에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아동지원비)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소득 : 중위중위100미만, 금융 : 2억미만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 6)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0p)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장애연금, 20세 미만 심한장애)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 상기 완화대상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의무자 서류 미징구
  - ※ 추후 완화대상 적용 요건 소멸 시 서류 제출 안내 필요

#### 7)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에 대한 판정기준표(의료급여)

(단위: 원)

수급자 \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인	2,909,049	4,287,312	5,265,973	6,232,121	7,171,845
2인	3,460,354	4,838,617	5,817,278	6,783,426	7,713,150
3인	3,851,818	5,230,081	6,208,742	7,174,890	8,104,614
4인	4,238,278	5,616,541	6,595,202	7,561,350	8,491,074
5인	4,610,167	5,988,430	6,967,091	7,933,239	8,862,963

## 5 소득재산조사

###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2p)

소득구분	종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3p)

구분	종류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	장애수당, 장애연금, 재활보조금 등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	만성질환 등으로 조사일 3개월간 지출한 의료비 등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등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생활조정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6p)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의료급여 제외)
-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생계·의료·주거·교육 포함)

공제대상	공제대상 소득	공제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 수급자(1998. 1. 1. 이후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공제대상	공제대상 소득	공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5세 이상 노인(1948. 12. 31. 이전출생자)</li> <li>등록장애인</li> <li>북한이탈주민</li> </ul>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 74세 이하 노인</li> <li>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li> <li>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li> </ul>	근로·사업소득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li> </ul>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text{재산의 종류별 가액}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 재산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사업안내 169쪽~)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사업안내 134쪽~)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산정기준

구분	종류	
일반재산	토지, 건축, 주택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보정개서 0.95)
	각종회원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산정내용

<b>일반재산 (4.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 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li> </ul>
<b>금융재산 (6.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예금, 적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보험, 펀드 등</li> <li>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장기금융저축공제(연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립지원적립금,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계좌, 희망저축계좌 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가입액, 시설토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li> </ul>
<b>자동차 (1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li> <li>재산산정 제외 및 감면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2000cc 미만의 1대(유공자, 보훈대상자 포함)</li> <li>- 50%제외 : 생업용 16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특수장동차</li> </ul> </li> </ul>
<b>부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 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개인 간 부채 및 마이너스 대출 불인정</li> </ul> </li> </ul>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5p~)**

-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②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중 일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③ 승용차 - 1600cc 미만 승용차로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생계, 의료) 2000cc 미만 승용차로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주거, 교육, 한부모)
- ④ 승합, 화물 - 1000cc 미만 차령 10년이상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생계, 의료) 소형 이하 승합화물,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
- ⑤ 가구원 6인, 3자녀 이상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10년 이상 500미만(주거, 교육, 한부모)
- ⑥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⑦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⑧ 소유자의 요청, 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 ⑨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 ⑩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6 근로능력판정



### ▶ 근로능력 있는 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 근로능력 없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7p)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미제출 대상
  -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 산정특례 등록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대상
  - ▷ 제출서류 : ①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신청자 작성), 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③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 이상 진료기록 / 정신신경계 : 3개월)

### 맞춤형 급여 상담 접수시 고려할 Tip

- ☑ 복지멤버십 신청접수 우선등록(상담하고 접수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복지정보 제공 연결기능)
- ☑ 신청자가 접수를 망설인다면 책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 권유  
(이후 건강과 경제상황 모니터링으로 맞춤형을 완성)
- ☑ 신청서류 작성하기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분(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보조인 지원, 어르신들 작성 힘듦)
- ☑ 신청서 작성시 가구원 모두의 전화번호와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도 확보  
(이후 연락두절시 알아내기 매우 힘든 중요한 초기정보)
- ☑ 가구구성 별도특례 검토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수급자 책정될 것 같은 가구는 다시 한번 별도특례 검토하여 신청권유)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신청자는, 부적합 요건 안내  
(고소득(연1억원 / 월834만원), 고재산(9억원)이하일 경우 부적합 될수 있음 안내)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완화대상자 질병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동의서 문제로 의료를 신청 못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연계)
- ☑ 자동차 있다고 접수거절 하지 않도록 주의(차량년식, 배기량, 장애인, 다자녀 등 적용률 다름)
- ☑ 국민기초 신청하면서 서울형기초보장 같이 신청  
(국민기초 부적합시 서울시 서비스 바로 연계, 서울시 직권신청 강조)
- ☑ 가족관계해체를 주장하는 경우(관계단절 소명서와 1년 금융거래기록상 입·출금사항 있는지 확인필수)

## 사회보장급여 구비서류 목록 (맞춤형급여 신청 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화가 가능한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수급(권)자가 서류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구비 필요서류 목록	수급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서식1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input type="checkbox"/>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신분증, 연락처 등 )
		필요자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추가: <input type="checkbox"/> 제적등본) <input type="checkbox"/>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재학증명서·병적증명서·재소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근로능력 증명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진료기록부 2/3개월),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소득 증명서류: 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서식20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 근로활동및소득신고(기타 소득증빙서류: ) <input type="checkbox"/> 재산 증명서류: 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지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서식21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부채 증명서류: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input type="checkbox"/> 지출실태조사표(서식23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필수 서류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제출 필요 서류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하여 전달	부양 의무자 구비 서류	필요자 제출 서류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서식19호)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서식21호) <input type="checkbox"/> 부채 증명서류: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또는 교육비 지출영수증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사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요청일 및 제출기관	• 제출 요청일 : 20 . . 일 까지 • 제출기관 :
-----------------	------------------------------------

업무담당자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 02 - 0000 - 0000)
----------------	---

(주의사항) 1. 상기 수급(권)자는 구비 필요서류 목록에 표기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상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장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창업, 재산의 매각·구입, 전입·전출, 가구원수의 변동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기제출한 서류라 할지라도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차세대 행복e음 입력 방법

- 맞춤형급여 접수 시 반드시 초기상담을 통해 등록 할 것
- 입력순서 : 1. 초기상담 →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



### 1. 초기상담

#### ※ 초기상담 및 통합상담 관리의 차이점

##### 1 초기상담

- 단순상담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판단하여 급여 서비스의 맞춤 안내 실시
- 요청접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의뢰, 긴급복지요청, 민간서비스 등 연계

##### 2 통합상담관리 (통합조사 및 결정)

- 기존 통합조사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 입력

▶ 차세대행복e음 맞춤형급여 신청 접수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①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신청일자, 신청구분(신규신청, 변경신청), 결정통지방법, 신청자유형 체크 → ③ 신청보장, 서비스 선택 → ④ 신청급여 체크 → 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 ⑥ 주거급여 주택조사 입력 → ⑦ 급여계좌등록 → ⑧ 구비서류 등록 → ⑨ 저장 → ⑩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⑩ 신청상태관리 '접수'



##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 1 신청일자, 신청구분

① 신청일자 : 신청서류 접수일자(★ 신청서류 접수 결과 행복e음 등록 월이 바뀌는 경우 급여 차이 있으니 주의)  
→ ② 결정통지방법 → ③ 신청구분(▶ 신규신청 : 사회보장급여 처음 신청하는 경우 / ▶ 변경신청 : 기존 통합  
조사표가 있는 경우)

### 2 신청급여 선택

① 신청보장/서비스선택 → ② 신청보장서비스목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체크 →  
③ 사회보장급여 : 생계급여 체크하면 나머지 급여 일괄 체크됨

### 3 가구원 등록

가구원정보

여권정보등록  
  장애정보보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주민정보조회  
  행정세  
  행정추가  
  복지가구조회

가구주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면제대상가구원여부	동거여부	비동거사유	건강상태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행정동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월5동

온라인신청추가가구원

가구원상세(가구원상세정보를 확인 및 변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구원기본정보 3

복지면제대상가구원여부  
 신청인의 주소(전화번호)란으로 번호의 앞을

성명	<input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input type="radio"/> 전산관리번호	성명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주소		주소	복지대상자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소재행정동		
가구주외관계	가구구성(제외)사유	가구구성(제외)사유	출생순서		주민구분		
직업	직장명	직장명	부서명		고용형태		
동거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비동거사유			입소시설		
건강상태		질병종류			의사능력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장애정도		장애유형	중증장애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거주시계시일자		
온라인고발자	(기조연금,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온인신고자를 입력)					외국어권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중증장애심사면제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중증장애심사면제사유			타법의료급여수권자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입신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공요원동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가구유공자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상여등급	
복수국적소유자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가구원출생지국내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1 주민정보 조회하여 가구원 정보 확인 후 → 2 행추가 → 3 가구원기본정보 입력

### 4 보장가구 구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장가구정보

가구주외관계	가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자생위계증 확인	자생위
본인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각 급여  체크

## 5 부양의무자 가구원등록

부양의무자원화대상가구

부양의무자정보 부양의무자등록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원화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부양의무자원화 수급권자 요건

심한장애등록장애인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65세이상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30세미만원부가구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30세이상원부가구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시설입소정보	<input type="text"/>					30세미만보호종료아동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부양의무자가구원 등록 클릭

부양의무자정보관리

부양의무자 행복사 탈삭

수급권자: \* 세대주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와 관계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월령권지원금 0 부양의무자 원화대상여부 Y 삭제

부양의무자 목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의무자와 관계	기초연금 수급여부	장애안연금 수급여부	20세이하중 장애인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본인	Y	N	N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녀			

부양의무자기구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정추가 탈삭

④ 본인   ⑥ 본인   ⑦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행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 ①, ② 부양의무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수기입력 → ④ 위에서 등록한 부양의무자가 보이며 부양의무자 클릭 → ⑤ 주민등록정보 클릭 → (팝업창에서) 부양의무자 포함하여 가구원 등록 → ⑥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등록 → ⑦ 확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안내 191p 참고

## 6 주택조사 신청

주거급여 주택조사  가구주 주소정보와 동일

\* 조사주택주소  \* 주거유형  임차 - 민간  민간(월세)  여의

\* 요청사유  신규  주택조사 2인방문여부  유의사항

주택조사주소 돋보기 클릭

도로명주소 검색

1 통합검색어

2 검색결과 (총 1건)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50 3 상세주소

상세주소  
 법정동  신월동 행정동  도로명   
 기본주소  건물번호  동  층  호   
 건물명  지상   
 전체주소

4

1 통합검색어에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클릭 → 2, 3 검색결과 확인, 상세주소 입력 후 → 4 확인

## 7 학력정보

학력정보

1

2

3        YES  NO

자신과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학력내역 중 중졸이하로 상정특례를 받으려고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상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에 체크하십시오.)

가구원성명	본인	가구주의연계	상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연계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 교육급여 신청자 있는 가구만 해당

- 1 대상자 본인 클릭 → 2 학력 클릭 : '초등학교 재학 ~ 불명' 해당 사항 클릭 →
- 3 시도교육청 클릭 → 4 실시간학적정보연계 클릭

### 8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최근난치성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를 받으려고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체크하십시오.)

가구원성명	가구주와의관계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연계일자
<input type="text"/>	본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체크

### 9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①

검토타입별신청여부 검토신청등록

TV수신료  Yes  No  
  관기요금  Yes  No  
  휴대전화요금  Yes  No  
  도시가스요금  Yes  No  
  지역난방요금  Yes  No  
  시내외유선전화  Yes  No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맞춤형급여안내신청

맞춤형급여안내 가구원정보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여부	동일주민세대여부	가구주와의관계	안내방법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text"/>

②

가구원성세 ③ 가구원여부를 제외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구원으로 구성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 가구원여부  동일주민세대여부 : Y \* 가구주와의관계    
 \* 안내방법  휴대전화   
 해원주소  직접입력  
 안내장지여부  안내장지사용

맞춤형급여안내 가담 신청한

①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체크 → ② 안내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중 선택 클릭 → ③ 가구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클릭

### 10 급여계좌등록

급여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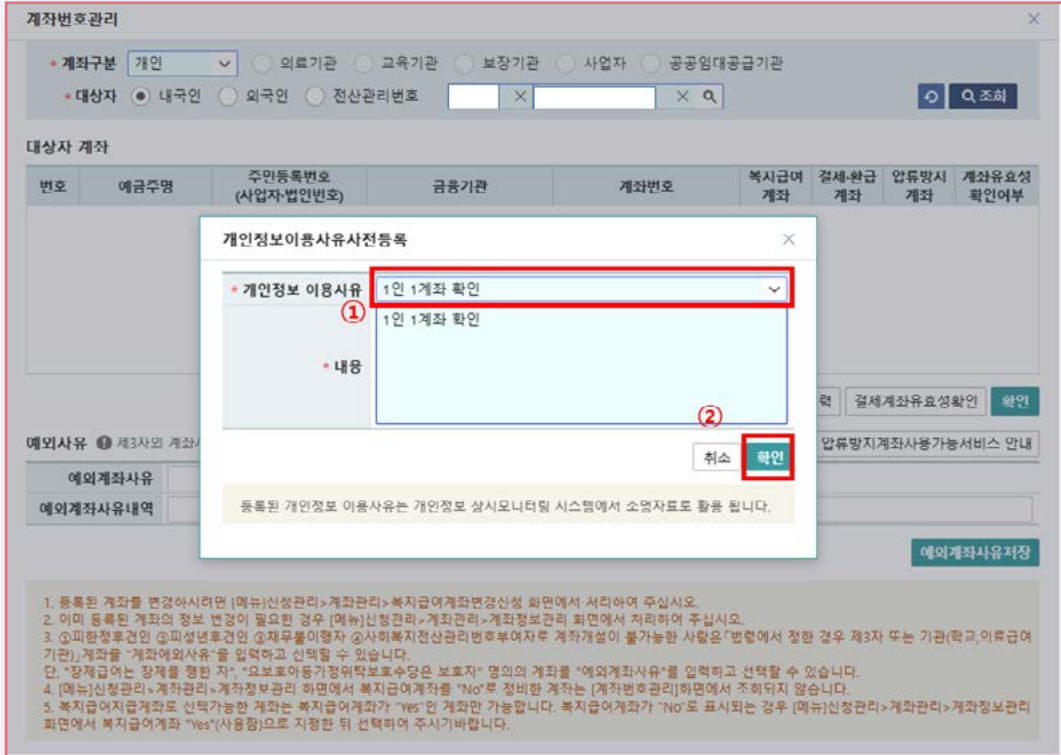
신청인과의관계 ③ \* 보장구분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표계좌 여부    예의사유    예의사유내역    계좌유요성 확인여부    검색     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계좌검색"/> ④
--------------------------	----------------------	----------------------	--	--	--	--	--	--	--	----	--------------------------	---------------------------------------

②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① 행추가 → ②, ③ 신청인과의관계, 보장구분 → ④ 계좌검색 클릭



① 개인정보 이용사유 클릭 → ② 확인 클릭



① 계좌정보관리 클릭

### 예금주정보

개인  의뢰기관  교육기관  보장기관  사업자  공공임대공급기관  
 내국인  외국인  전산관리번호  X  X Q

예금주명  금융기관 002-신입  계좌번호

복지급여계좌  Yes  No  미사용사유  Q  계좌유�효성확인   결제계좌유�효성확인

결제-환급계좌 사용  입류방지계좌  Yes  No  입류방지계좌사용가능서비스안내

동장사본  이동물 영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놓습니다

1. 복지급여지급계좌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아이클라우드, 복지카드의 결제계좌나 전자바우처의 환급계좌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결제환급계좌 사용'을 체크하세요.  
 2. 입류방지계좌 구분은 잘못선택하는 경우 일반계좌를 입류방지계좌로, 입류방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은행입금시 '입금불능' 처리가 됩니다.  
 (입류방지 전용통장은 통장표제부에 '영부지킴이' 통장으로 표현)  
 3. 결제계좌 유효성 확인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동장사본과 동일하게 입력하였으나 유효성 확인에 실패하여도 급여지급 시 재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좌사용수급자격유리 존재할 경우 변경 후 해금주는 변경 전 예금주와 동일인 이거나 가구원 이어야 합니다.  
 5. 계좌등록 시 '동일한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  
 발생사유, 계좌번호는 등록되어 있으나, 조회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자(가구원 등)의 계좌번호로 등록  
 해결방법 : 계좌번호관리에서 계좌번호로 조회하여 등록

신규  저장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②, ③, ④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력 → ⑤ 결제계좌유�효성확인 클릭 → ⑥ 입류방지계좌일 경우 'Yes' 체크 → ⑦ 저장

### 계좌번호관리

개인  의뢰기관  교육기관  보장기관  사업자  공공임대공급기관  
 내국인  외국인  전산관리번호  X  X Q

대안자 계좌  Q 조회

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복지급여 계좌	결제-환급 계좌	입류방지 계좌	계좌유�효성 확인여부
1			004-국민		Yes	No	No	Yes

계좌변경신청  계좌정보관리  계좌정보변경이력  결제계좌유�효성확인  확인

예외사유  제3자의 계좌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선택합니다.  사업별예외계좌등록대상 안내  입류방지계좌사용가능서비스안내

예외계좌사유   
 예외계좌사유내역

예외계좌사유저장

1.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메뉴]신청관리>계좌관리>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 화면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2. 이미 등록된 계좌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메뉴]신청관리>계좌관리>계좌정보관리 화면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3. ①피한정후견인 ②피성년후견인 ③채우물어행사 ④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자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뢰급여기관), 계좌를 "계좌예외사유"를 입력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장제급여는 장애를 받은 자",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은 보호자" 명의의 계좌를 "예외계좌사유"를 입력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메뉴]신청관리>계좌관리>계좌정보관리 화면에서 복지급여계좌를 "No"로 정제한 계좌는 [계좌번호관리]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5. 복지급여지급계좌로 선택가능한 계좌는 복지급여계좌가 "Yes"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복지급여계좌가 "No"로 표시되는 경우 [메뉴]신청관리>계좌관리>계좌정보관리 화면에서 복지급여계좌 "Yes"(사용함)으로 지정된 뒤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등록 후 신청등록관리 화면에서 ①, ②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 ③, ④ 대상자 계좌 확인 클릭

## 11 구비서류등록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대분류 *	제출서류중분류 *	제출서류종류 *	서류명	제출수량일자	대상자	파일명
1	가구원확인서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가구원확인서류	증명원(사)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3	소득확인서류	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4	재산확인서류	일반재산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통합상담관리 | 원스톱민 | 교육비신청어부초보 | 구비서류요청 | SMS전송 | 신청상태관리 | 유의사항조회 | 소득재산신고서등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록 | 임시거장관리요기 | 신청자료검색 | 초기화 | 임시저장

1 구비서류 등록 클릭

신청 구비서류 등록

구비서류

번호	서류구분	서류명	서식종류	대상자	파일명

서비스별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대분류	제출서류중분류	제출서류종류	서류명	파일명

구비서류대상자

성명	보장구분	보장일련번호	서비스
가	기초생활보장	1	생계급여

구비서류정보

정부방식 | 서류구분분류 | 증명원(사) | 가족관계증명서(사)

제출수량일자: 2023-01-26 | 유효일자: | 파일명: | 용량: 552.42 KB

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jpg

1 Files, 552.42 KB Added | 추가 | 삭제 | 다운로드

1) 자세한 시스템의 구비서류정보 정부방식의 "서류구분분류"는 기존 알뜰이음 시스템의 "구비서류대상분류"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2) 정부방식 "파워렛대당첨부" 기능 활용방법: 신청자가 수리한 정부파워렛이 구비서류명, 구비서류키워드와 동일한 경우에 ①정부방식을 "파워렛대당첨부"로 선택하고, ②첨부파일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분류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구비서류 자동으로 분류.

1 대상자 선택 → 2 구비서류 분류 클릭 → 3 첨부파일 등록 → 4 적용 클릭 → 5 확인

## 12 사회복지장급여신청서 저장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대분류 *	제출서류중분류 *	제출서류종류 *	서류명	제출수량일자	대상자	파일명
1	가사제출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	2023-01-27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jpg
2	가사제출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2023-01-27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jpg
3	가사제출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3)	2023-01-27		사회보장급여신청서 (3).jpg
4	금융정보제공권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2023-01-27		통장사본.jpg

통합상담관리 | 원스톱민 | 교육비신청어부초보 | 구비서류요청 | SMS전송 | 신청상태관리 | 유의사항조회 | 소득재산신고서등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록 | 임시거장관리요기 | 신청자료검색 | 초기화 | 임시저장 |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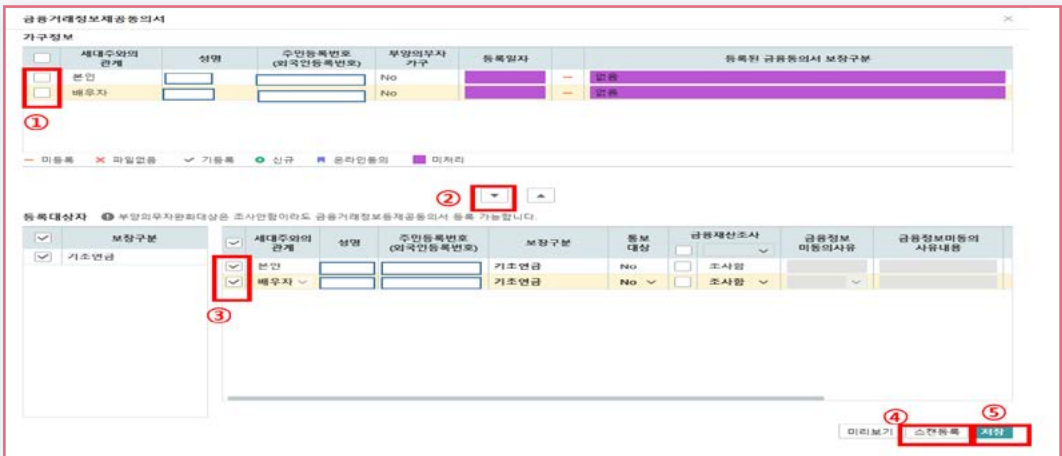
1 저장 클릭하고 팝업으로 유의사항 체크하면 나타나면 유의사항 체크 후 저장



### 13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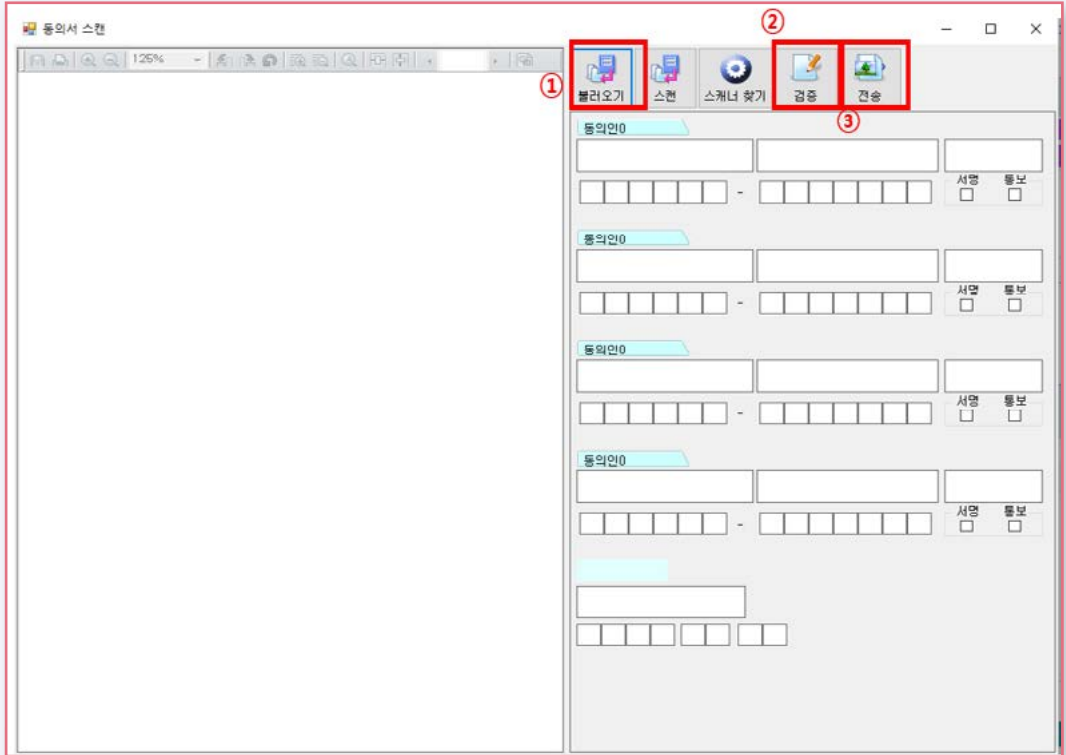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클릭



1 금융정보 등록 대상자 체크박스 선택(1회에 최대 4명) → 2 내림 화살표 클릭 3 대상자 체크 → 4 스캔등록 클릭(팝업창 금융정보 등록, 하단방법 참고) → 5 저장(1회 최대 4명까지 등록, 1 ~ 5 반복 작업)

#### ※ 금융재산 조사대상

- 주거급여만 신청 : 자동으로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의무자 완화)로 변경되거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시기 변경 필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대상 : 기존에 등록된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통보대상(미입력),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의무자 완화) 변경 필요
- 가족관계해체 경우 :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거부기피), 금융정보미동의 사유 내역(가족관계해체) 시기 입력



① 불러오기 클릭하여 스캔파일 입력 → ② 검증 → ③ 전송



## 14 신청상태관리

신청등록관리 31100 (UWFF31100M)

신청안명: [ ] 주안등록번호: [ ] 신청일자: 2023-01-27

신청상태관리내역: ① 신청상태관리안내

신청서식	신청ID	신청보장구분	민원접수	상태	민원접수번호	등록일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M6012948519	기초연금	Y	신청		2023-01-27

신청상태정보

- ① 다음처리상태: 접수
- ② 접수시군구: 양천구
- ③ 주처리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 수령자ID: HYEMIN1267 | 이해민
- 접수(처리)일자: 2023-01-27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③ 접수자ID: WLDUS2465 | 김지연

④ 저장

① 신청상태관리 클릭

신청상태관리

신청안명: [ ] 주안등록번호: [ ] 신청일자: 2023-01-27

신청상태관리내역: ① 신청상태관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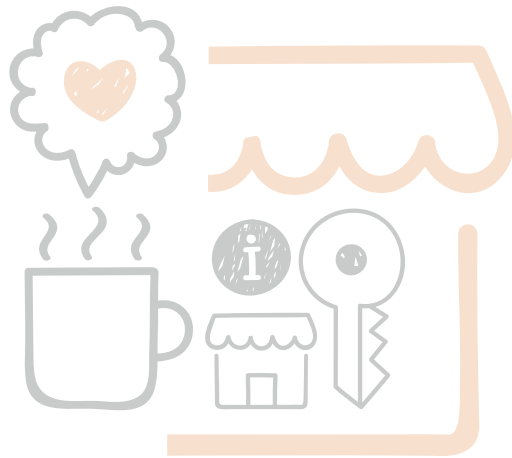
신청서식	신청ID	신청보장구분	민원접수	상태	민원접수번호	등록일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M6012948519	기초연금	Y	신청		2023-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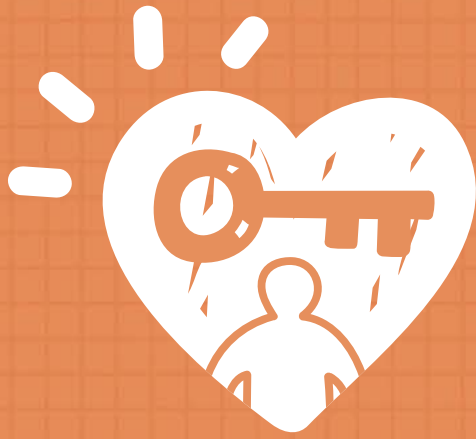
신청상태정보

- ① 다음처리상태: 접수
- ② 접수시군구: 양천구
- ③ 주처리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 수령자ID: HYEMIN1267 | 이해민
- 접수(처리)일자: 2023-01-27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③ 접수자ID: WLDUS2465 | 김지연

④ 저장

① 다음처리상태 : 접수 → ② 주처리부서 : 자립지원과 → ③ 접수자 ID : 통합조사팀 담당자 → ④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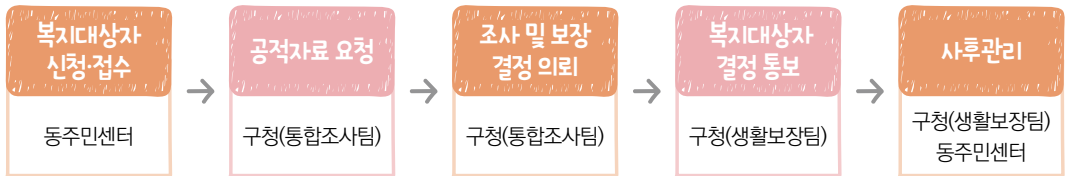


##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맞춤형 수급자와 동일 수준의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
- 2) **지원근거**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 **처리기한** : 30일(사유 발생 시 60일)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신청의 원칙)
-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47%(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소득산정 :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조사방법에 준용

-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을 금융재산으로 적용
- ※ 기초연금 소득은 연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적용
-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국민기초) → 40% 상향(서울형기초)

-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이하(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백만원까지 공제)  
 주거용재산 소유시(추가\_ 최대 재산기준 254백만원)
  - 자동차 : 소득환산을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금융재산 1인당(추가) 최대1,000만원까지 공제
    -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 일반재산에는 포함

## ▶ 지원내용

###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지급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3)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 ▶ 상담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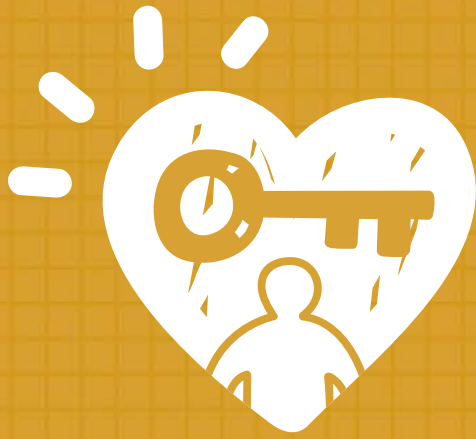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수급 통합신청 의무화
- 국민기초 탈락 및 중지자에 대한 동의로 신청서 없이 직권신청 강화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우선 적용 보호
  - ※ 급여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자격이동하면 급여감소 생길 수 있음
- 신규 신청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한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7.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7.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2) **지원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10, 제62조, 제67조
- 3)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2) **신청권자**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서울시 : 중위소득60%이하,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 4)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b>원칙</b>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b>예외</b>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 성인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b>원칙</b>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b>예외</b>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 행방불명된 부(모)
  -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 ▷ 재외국민

5) 조사범위 : 학생과 동일보장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 ▶ 지원내용

-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3)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 구비서류

- 1)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 동의서
- 2) **해당자**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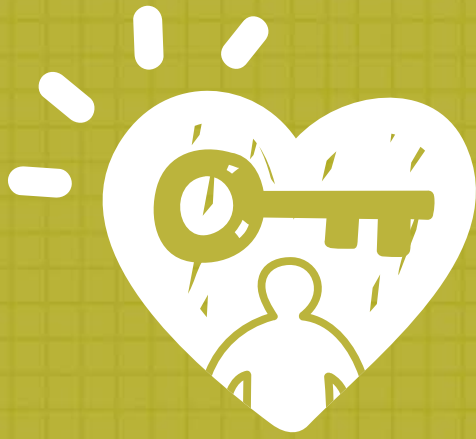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교육청이 고지한 금액)
학교운영 지원비	무상교육	무상교육
교육활동지원비(교육활동바우처)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미지원
교과서	고등학생만 지원 (해당학년 교과목전체)	미지원
급식비	무상급식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이내)	지원(월 17,600원 이내)

## ▶ 상담시 **TIP**

- 전산에 교육비 신청여부 조회 후 'N'이면 상담 및 신청 안내
- 성인자녀는 보장가구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상담 시 유리한 쪽으로 신청안내
- 초중고 교육비 단독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제출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필요(구비서류 아래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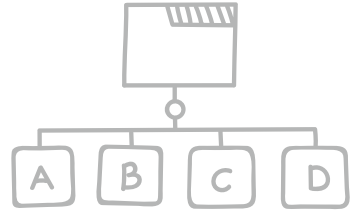
자격 구분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 (주거지서류 등)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장애	○	○			○
	차상위 계층 확인	○	○			○
	차상위 자활	○	○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	○			○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	○	○	○ (해당자만)	○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8. 차상위지원사업

## 8. 차상위지원사업



###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2)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상의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사실이혼 인정
-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 소득인정액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산정방식 준용, 기본재산 공제액은 135,000천원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름에 주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2023년)**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2023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원 / 월)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대상자수	1인(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인(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3인(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1,350,521
	4인(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5인(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6인(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3,782,776
	7인(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 **지원내용**

-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 2)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기존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 2)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B20~B24)환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중이라도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 구분하여야 함.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신청, 확인조사, 종별 변경 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 ~ F29),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경우 반송처리)

## ▶ 상담시 TIP

- 필수 구비서류의 진단서 양식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요망(병원 직인, 내용에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기재, 소견서 불인정)
- '만 18세 미만' 및 '산정특례대상자'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에 산정특례대상자 연계여부 체크 필요

신청등록관리 31100 (JWFF31100M)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종류	신청사유	신청지역	신청인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성별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직업	신청인학력	신청인종교	신청인종족	신청인혈액형	신청인신체장애유무	신청인정신장애유무	신청인중증장애유무	신청인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신청인연계일자	

부양의무자선택 수급권자 조건

심한장애등록책임여부  Yes  No 65세이상여부  Yes  No 30세미만한부모가구  Yes  No 30세이상한부모가구여부  Yes  No  
 사실입소장보  30세미만보호종료아동여부  Yes  No

기조연급정보

보장구분	일련번호	배우자신청여부	배우자구분	동일계좌동의	유선확인	유선확인일자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여부	기조연급환출정보연내
기조연급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조연급환출정보연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최근년지정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를 받으려고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에 체크하십시오.)

가구원성명	가구주와의관계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연계일자
본인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01-26
배우자	배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01-26
자녀	자녀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3-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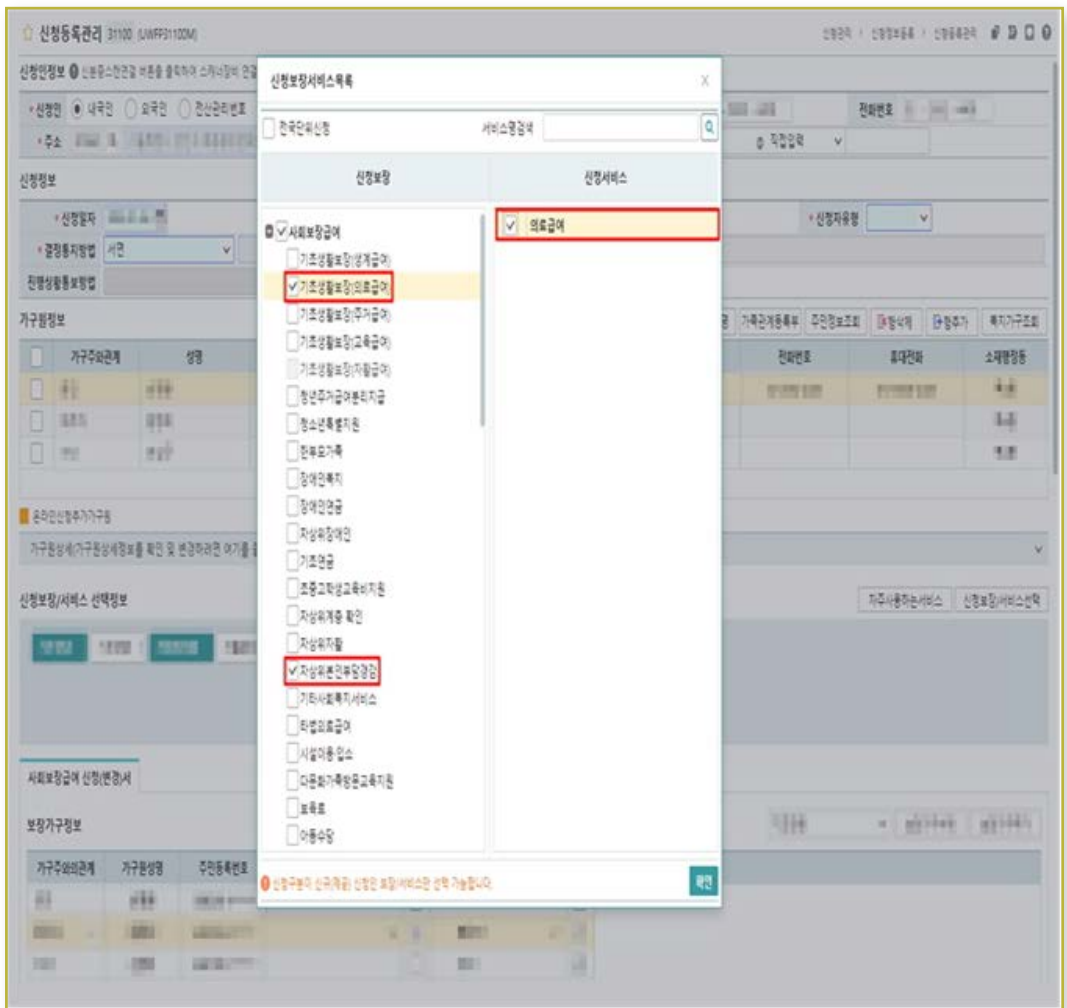
맞춤형급여연내(복지멤버십) 신청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불필요(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만을 고려함)  
※ 공적 자료 우선 반영
- 사통망 구비서류 입력 시 서류구분에 '진단서'는 반드시 기타증명서/진단서/기타진단서로 첨부 및 저장

### ▶ 차세대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 → 「사회보장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선택
  -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과 병행 신청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만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권한이 있는 사업(차상위계층확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다만, 행복e음에 금융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병행 신청의 예외로 인정



## 2 차상위 자활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
- 2) 지원근거 : 국민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3) 처리기한 : 30일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소득조사 등'에 준용
-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진폐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 - 기초공제액(13,5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 2.5배인 13,500만원 적용
-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에 따라 적용  
일반재산 월 4.17% / 주거용재산 월 1.04% / 금융재산 월 4.17% / 승용차 월 100%

-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③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 ④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동차재산 구분' 적용
-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동일



## ▶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 참여

##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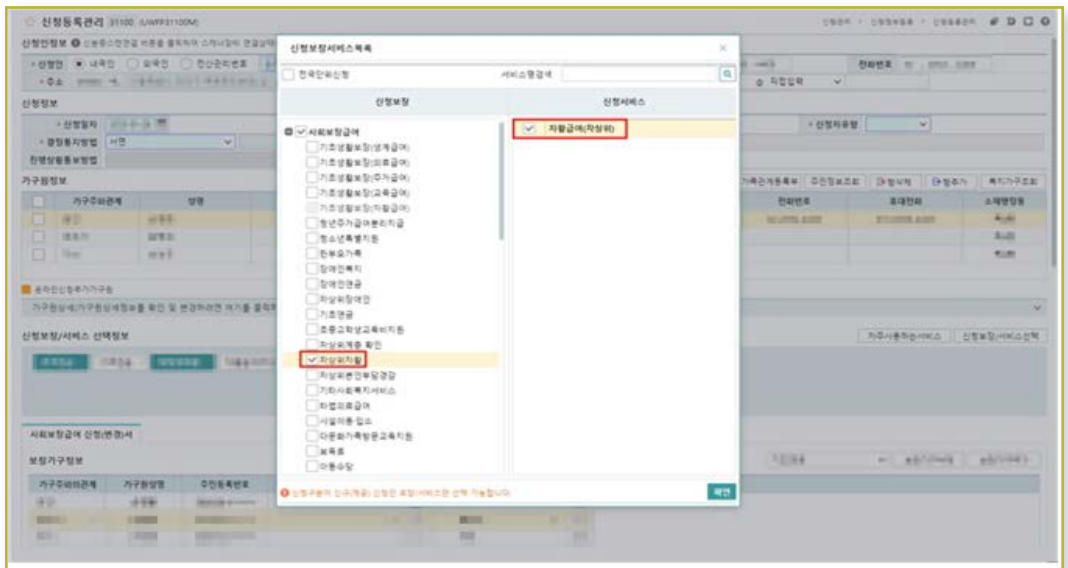
- 1) 필수 :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2) 해당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 상담시 TIP

자활 참여를 위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립지원과 자활담당에게 **자활 자리가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함(자리 없으면 불가)

## ▶ 행복e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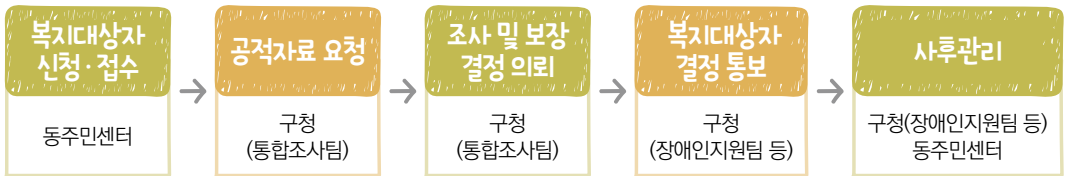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3 차상위 장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 2)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 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중증장애인 및 중전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

#####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차상위 장애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재산 조사 방법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준용

## ▶ 지원내용

### 1) 장애수당 지급액

구분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2)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 지급 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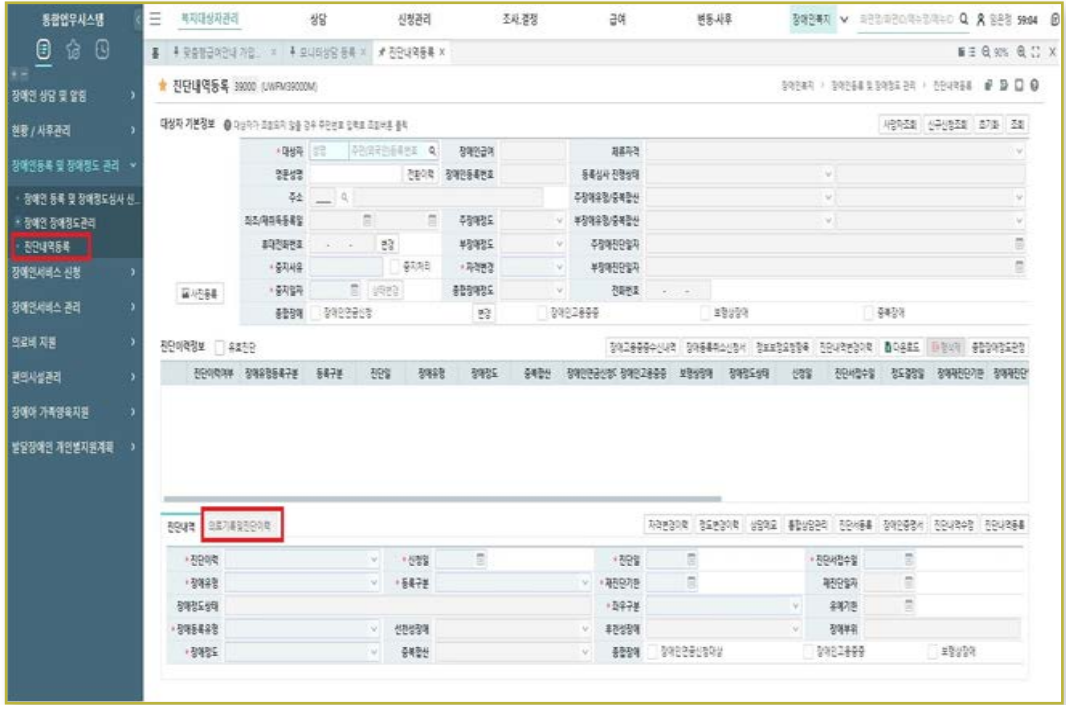
- 1)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
-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한 경우 : 장애정도 결정일

## ▶ 구비서류

- 신청서식은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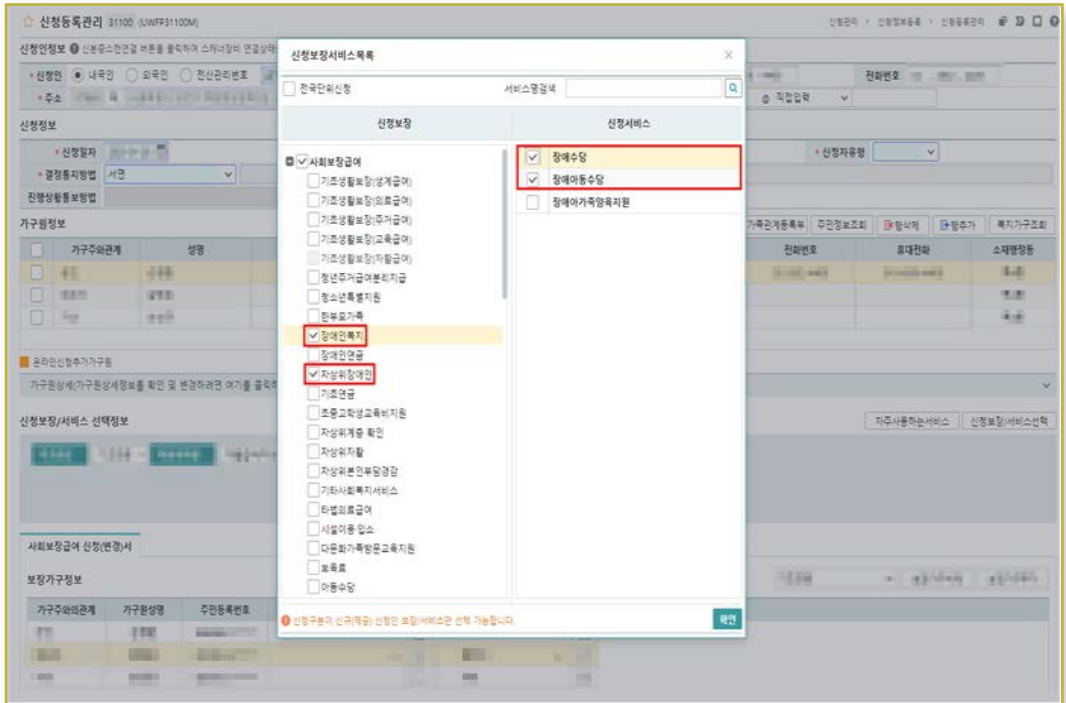
## ▶ 상담시 TIP

- 장애등급 및 연령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급여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안내 필요함
-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관리 → 진단내역등록 → 대상자 조회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화면 → 공단 심사번호 혹은 공단심사 완료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이력이 없을 경우 장애수당 신청 불가하여 장애정도 재심사 받아야 신청 가능.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는 재심사 면제)



## ▶ 행복e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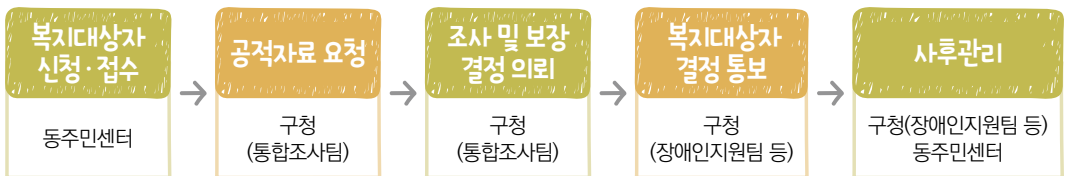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4 차상위 계층 확인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대상에게 차상위자격 확인을 통해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2)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보건복지부]
-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 소득 재산 조사 방법 및 별도가구(급여위탁·가정해체방지·자립지원 별도가구 등)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

### ▶ 지원내용

-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2023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안내 지침 부록 참조)

##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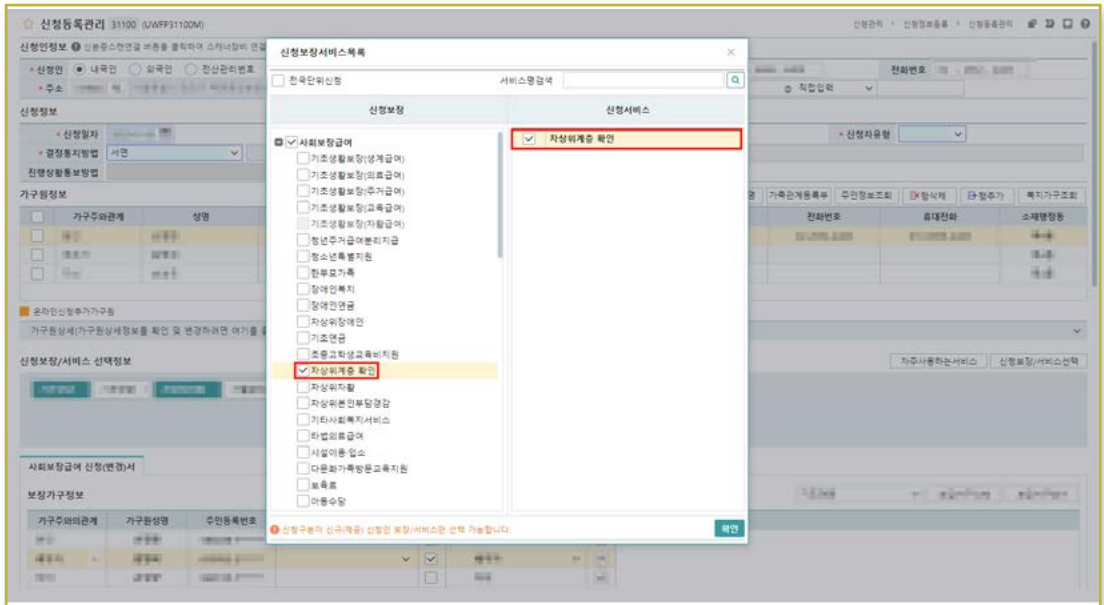
-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 ▶ 상담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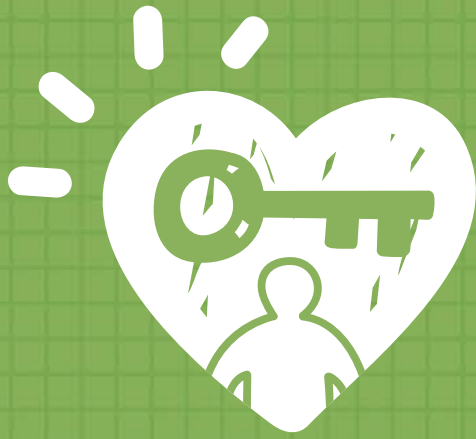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 가능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부모 등)로 이루어진 동일 보장가구에서 교육급여자격 중지 후 차상위계층확인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 해당하면 금융회신 이전 보장결정 가능(시급한 대상은 조사담당자에게 사전협의)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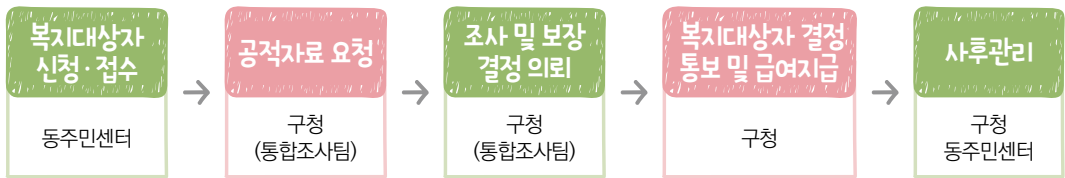


##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
- 2)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 3)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4) 지원절차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가구

구분		의미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존 중위소득 60% (복지급여대상 + 증명서발급대상)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존 중위소득 65% (복지급여대상)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소득 72% (증명서발급대상)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1) 복지급여



대상	항목	지원금액	자격	비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 1인 월 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 양육비	아동 1인 월 5만원 추가 지급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 1인 월 10만원 추가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 1인 월 5만원 추가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연 9만3천원	중고등학생 자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 월 35만원	만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입학금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시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연154만원이내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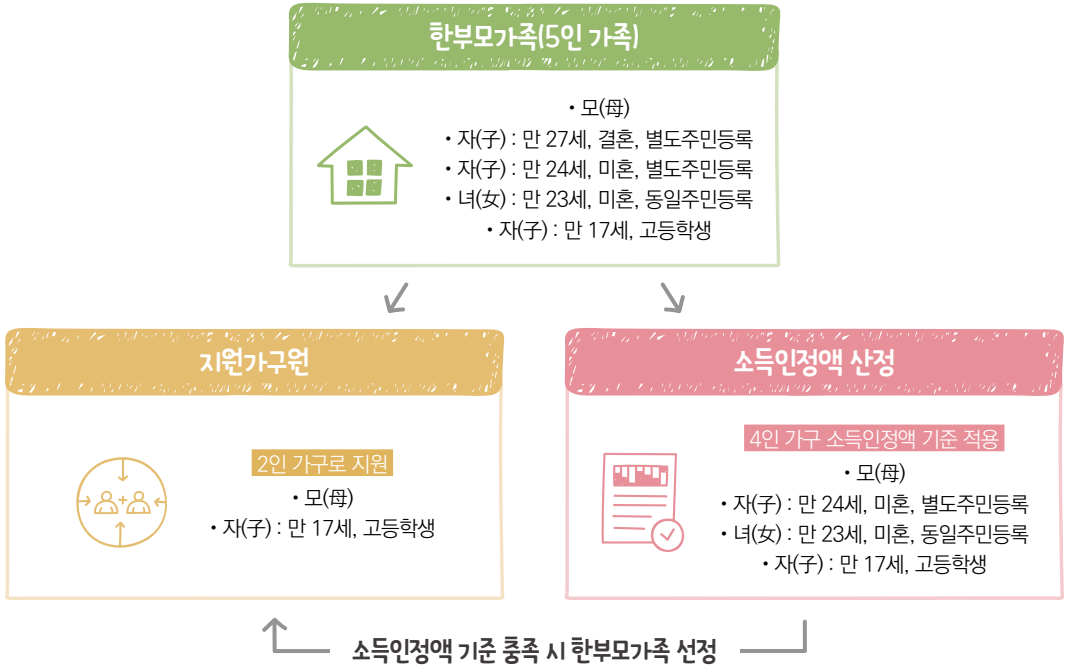
한부모가족지원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및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 여부

구분		지원대상 포함여부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수 포함여부	소득재산 파악 여부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	○	○
배우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	○	○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X	X	해당 배우자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재산으로 처리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X	X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X	X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녀)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하고 군복무 중인 경우	○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 중인 경우	○	○	○
	혼인상태에 있지 않는 연령초과 자녀 · 만 18세 이상 · 취학시 만 22세 이상 ·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연령 초과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무관	X	○	○
	만 18세에 이상 34세 이하 자녀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X	X	해당 자녀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재산으로 처리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 행방불명인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한함)	X	X	
	미혼의 연령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			
	결혼한 자녀			
소년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자녀				
기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모 또는 부의 부모, 형제자매	X	X	해당 친·인척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재산으로 처리 ※ 주거 무료임차 제외
	실종신고 후30일이 지난 모 또는 부, 자녀 등 대상자	X	X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재산으로 처리 ※ 주거 무료임차 제외

한부모가족 구성에 따른 조사·보장 대상



▶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거래내역(1년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양육비 등 사적이전소득 여부파악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필수 안내

▶ 상담시 **TIP**

- 1) 상담시 파악할 내용 : 기초수급자와 비슷하나 이혼인지 사별인지 확인한 후, 근로여부, 주거형태, 자동차 소유여부, 타재산소유여부 등을 문의하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
- 2) 자녀 연령 : 만18세 미만의 자녀. 단, (대학)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까지 지원  
※ 군복무, 휴학 중이라도 지원
- 3) 조사가구원 : 만 18세를 넘은 자녀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면 조사 가구원에 해당 (자녀 중에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 기혼 자녀는 제외)
- 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 모와 대학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님

- 이혼 후 전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5)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먼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미포함)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선정
-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된 경우
  -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 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

### 6) 한부모가족 신청 가구가 조부모 집에 거주할 시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조부모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원 제외

### 7) 신고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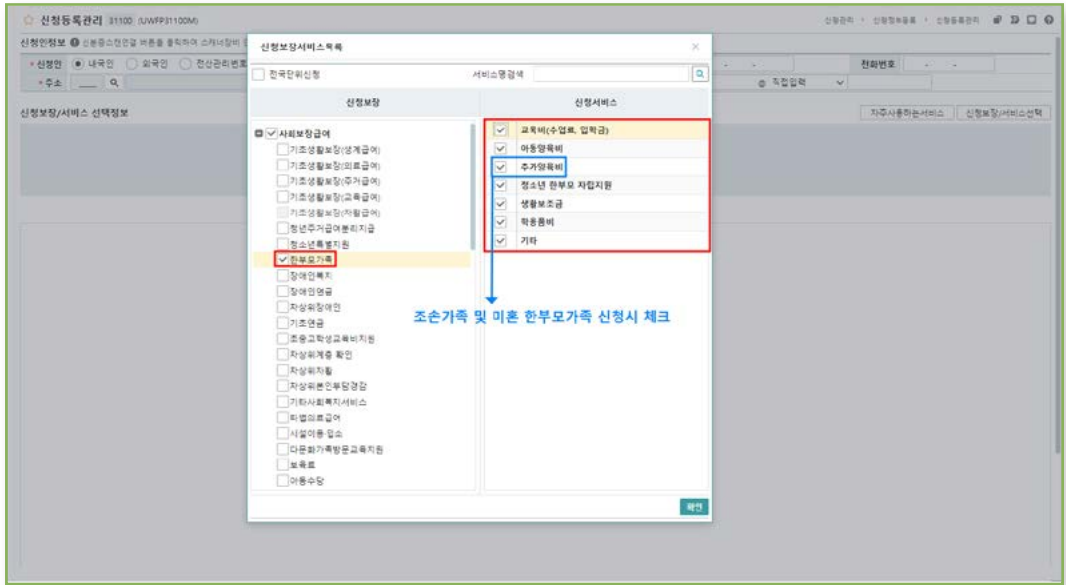
-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중지, 급여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8)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구분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분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혜택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 복지급여 지급, 학비, 전세 임대주택,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있음.
주의점	다양한 분야의 지원 혜택은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지원되는 것임을 잘 설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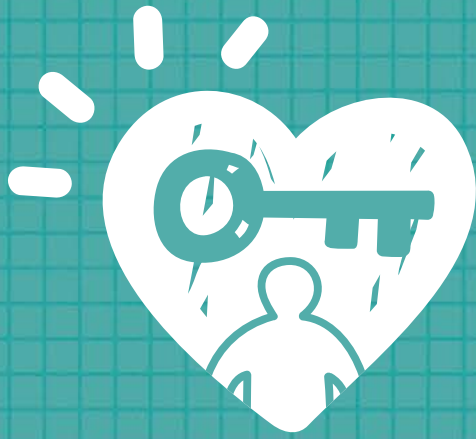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 → 「사회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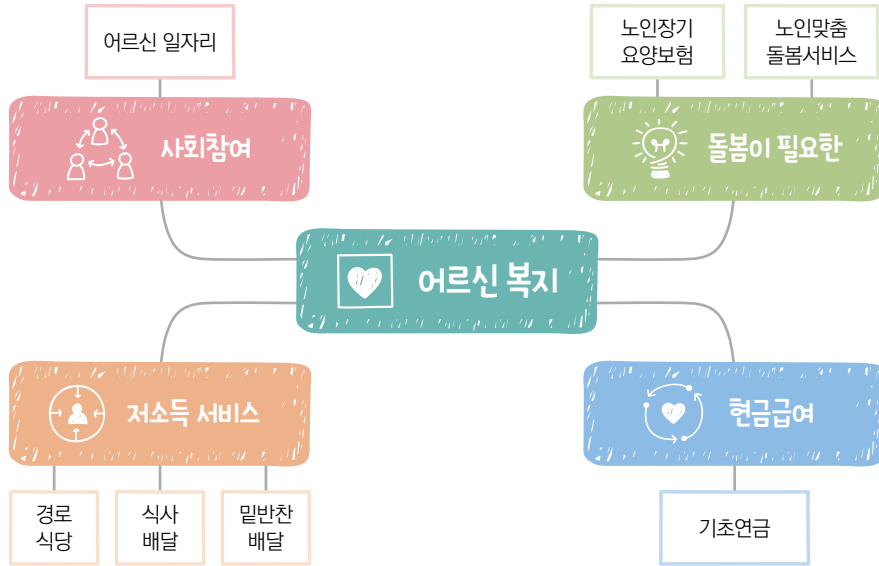






## 10. 어르신 복지 서비스

# 10. 어르신 복지 서비스



## 1 기초연금 사업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70%) 이하인 노인 (만 65세 ~ 2023년 기준 1958년생)
  - ▷ 사전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신청가능
-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으로 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은 보지 않음 (단독가구, 부부1인, 부부가구)
  - ▶ 부부가구는 법률혼인지 사실(이)혼 관계인지 확인 필요
  - ※ 특히 사실(이)혼이라면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제출안내

#### 2) 지원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재산만 조사 자녀 등 부양의무자 미조사
  - ▷ 연령 미도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 대상 포함

- 3)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4)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108\text{만원})\} + \text{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①기본재산액}) + (\text{금융} - \text{②2,000만}) - \text{부채}\} \times 4\% \div 12\text{개월}$$

- ① 일반재산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가구당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② 금융재산 공제 : 일상생활유지 최소경비 가구당 2,000만원 공제

**재산 조사범위 상세**

구분	내용
일반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토지·건축물, 주택·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각종 회원권·어업권, 항공기·선박·자동차 등</li> </ul>
	<p>※<b>재산가액 산정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축물, 주택,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어업권 : 시가표준액 단,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 0.95] 반영</li> <li>-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li> <li>- 조합권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li> <li>- 자동차·금융재산 :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가액 ※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 등 예외규정 有</li> </ul>
금융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li> </ul>
기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2011. 7.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 ※ 재산 증여 또는 처분 시,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간주</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나 사채는 미인정됨. 사채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법원 판결문, 지급명령·지급결정 등) 사채는 인정</li> <li>대상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금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등 * 부채 미인정 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대출 등 * 주 채무자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는 부채 미인정</li> </ul>

5) **지급액** : 최소 32,318원 ~ 최고 517,080원 차등 지급(부부 20%감액 지급)

- 단독가구: 32,318원 ~ 323,180원
- 부부가구: 64,640원(1인당 32,320원) ~ 517,080원(1인당 258,540원)

6)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결정·통지)

## ▶ 구비서류

- 1) 필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계좌 통장사본 ⑤ 신청자 신분증 ⑥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 신분증
- 2) 해당자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재산·부채 관련서류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분양계약서 등)

## ▶ 상담시 TIP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활용 : <https://www.bokjiro.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Bokjir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and '복지신고'. A search bar and a login button are also visible.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several service categories listed in a grid, including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and '복지신고'. On the right side, there are promotional banners for '자주 찾는 서비스' and '내 손안의 복지! 복지로 모바일 앱'.

기본정보	
<p>▪ 가구유형</p> <p>단독가구 ▼</p>	<p>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p> <p>-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p> <p>-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p> <p>-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 (4%) / 12월] + P</p> <p>-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p> <p>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p>
<p>▪ 거주지</p> <p>대도시 ▼</p>	<p>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p> <p>-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p> <p>*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p>

## 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 사업개요

- 1) 신청기간 :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에 수행기관별로 공고하여 모집·선발
-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 가능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 ※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도원등
  -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 2개 이상 참여자

### 3) 사업단 종류

분야	내용	근무시간 / 보수
공익활동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역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월30시간이상 27만원이내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가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참여하는 활동 예)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월60시간 이상 59.4만원이내
시장형	만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예)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택배 등	일 최대8시간 연간 267만원 지원
취업 알선형	만60세 이상의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예)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사업단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정함

- 4)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5) 신청방법 :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3 장기요양서비스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2) **사업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3) **신청절차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수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1차판정 ⇨ 공단최종판정 ⇨ 결과통보  
(※ 동주민센터 직원 직권 신청 가능)
- 등급판정 : 1차 판정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인지 지원등급)을 최종결정

등급	내용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불능, 중증 치매 등)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불능, 치매증상)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인지 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2018년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자>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4)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

구분	급여 내용	
현물 급여	<b>시설 급여</b>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시설급여판정자 입소가능)
	<b>재가 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가사생활 등 지원</li> <li>•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추어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제공</li> <li>•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li> <li>•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보호</li> <li>•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li> <li>• 복지용구 제공 - 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li> </ul>
현금 급여	<b>가족 요양비</b>	도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신체·정신적·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 이 외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5)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15% 부담(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6% 또는 9%부담)  
(월 한도액 624,600원 ~ 1,885,000원까지 등급별 상이함)
- 시설급여 : 20% 부담(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8% 또는 12%부담)  
(월 한도액 2,008,500 ~ 2,452,500까지 시설 종류와 등급별로 상의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6) 기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 구분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2)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6대 노인돌봄사업 ① 본서비스 ② 종합서비스 ③ 단기가사서비스 ④ 지역사회 자원연계  
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3) 서비스 제공절차



- 4) 수행기관 : 각 지자체 마다 권역별 수행기간 상이
-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5 무료급식 서비스

### ▶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

- 1)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
-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 경로식당에서 중식제공(지자체 지정)
- 3) 지원내용 : 1식 4,000원 상당 / 주 6회(월~토)제공  
단, 지자체별로 구비 추가 지원하여 지원 단가가 다른 경우 있음
- 4) 신청방법 : 각 지자체별 지정 경로식당 직접 신청

### ▶ 도시락배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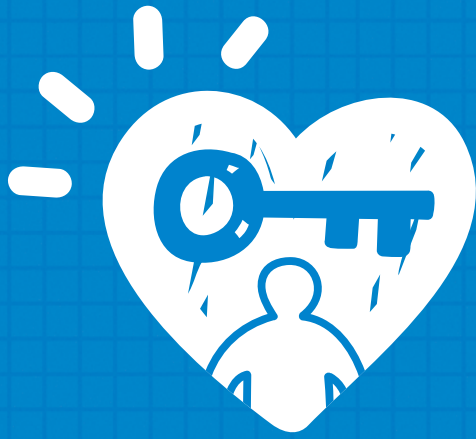
-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에서 식사(도시락)을 대상자 가정으로 배달  
※ 일반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노노케어'에서 식사·밀반찬 배달 업무 수행함
- 3) 지원내용 : 식사배달 : 1일 1식 4,000원 상당 / 주 7회 제공(금요일에 주말음식까지 배달)
-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각 지자체별 운영방식 상이할 수 있음)

### ▶ 밀반찬배달 사업

-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가정에서 직접조리가 가능한 자
-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에서 밀반찬을 대상자 가정으로 배달  
※ 일반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노노케어'에서 식사·밀반찬 배달 업무 수행함
- 3) 지원내용 : 식사배달 : 1일 1식 4,500원 상당 / 주 2회 제공
-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각 지자체별 운영방식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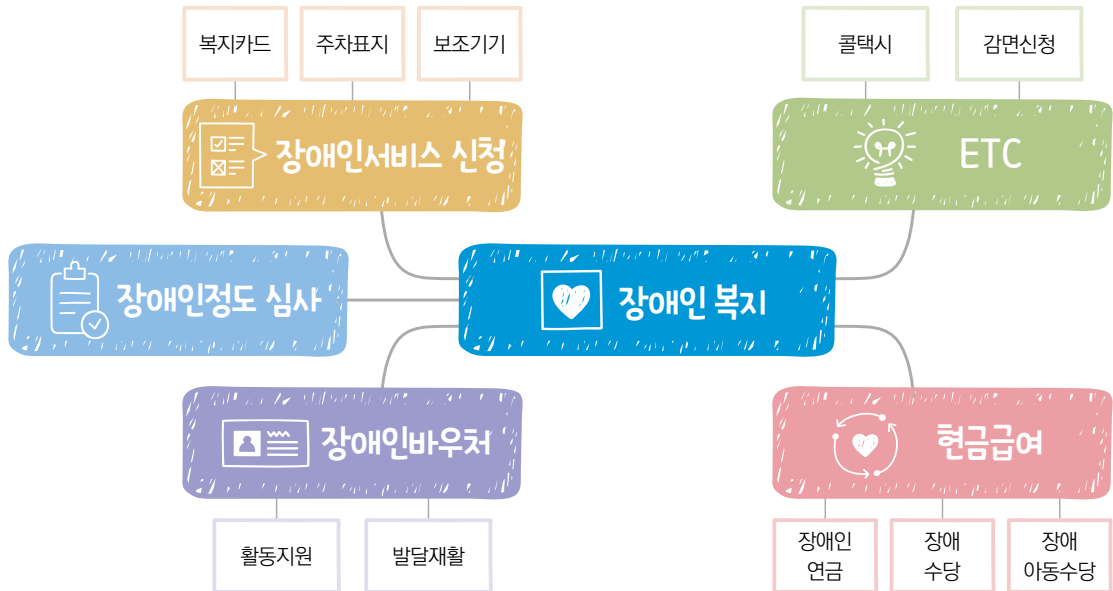






## 11. 장애인복지서비스

# 11. 장애인 복지 서비스



## 1 장애인 등록 절차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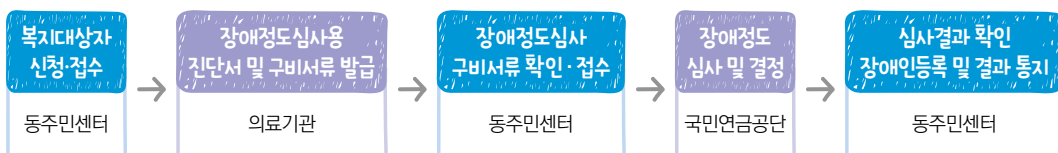
- 1) 지원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2) 주요내용 : 장애인 정도 등록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3) 지원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민원인 제출 서류

-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신청서 서식에 반드시 서명 필요)
-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F4, F5, F6,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4) 처리기한 : 장애정도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60일 이내로 동주민센터 통지 후 ⇨ 동주민센터는 민원인에게 즉시(※연금공단에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전송된 때)통지

### 5) 지원절차



### 6)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폐성장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7)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2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 사업개요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대분류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일반 장애인	×	×	×	●○	×

####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2) 주요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지원비용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별도의 신청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지원비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3) 비용 지원대상자 발굴 :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안내 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고 영수증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3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가능
- 2) 주요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자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가능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가능

※ '10.7.1일부터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폐지

### 3) 발급 시 주의사항

- 장애인 통합카드(A형) 발급 수수료 4,000원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통칭 통합복지카드) **신규/재발급 옵션택 시, 카드 정보유료로 카드 제작 불가 ⇨ 유효기간 속한 월인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 속한 월이 지난 후 신청 시 '신규'**

#### ※ 차세대 시스템 메뉴

- ▷ **신청 시 유효기간 확인**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교부등록 → 처리이력(유효기간 확인)  
※ 통합복지카드만 확인가능
- ▷ **오류 사항 확인**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복지카드전송내역 조회(오른쪽 하단, 전송내역상세내역 버튼)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임시감면증 발급가능 사용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장애인 자격 상실 시(사망 등)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관리 철저 (※ 반환기한 2주 이상 두어 반환통보서 송달)

### 4)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방법

### 유효기간 만료시의 신청구분

1. 재발급 : 유효기간이 속한 월인 경우, 도로공사 오류(신규장애할인카드 사용중) 발생시
2. 신규 : 유효기간이 속한 월이 지난 경우, 도로공사 오류(유효기간 만료 또는 반납으로 유효한 카드 없음) 발생시

통합복지카드 교부등록(복지발안통합) S1000 (UWPM51000M)

카드구분: 통합카드

카드정보

카드번호: [ ] 카드구분: 통합카드 유효기간: 9999-12-31 교부일자: [ ] 발급일자: 2019-07-10

조회결과 (총 3건)

번호	요청일자	신청구분	카드구분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발급일자	교부일자	반납	유효기간	자랑번호	수령자성명	수령자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1	2018-07-13	정보반급	통합복지카드				2018-07-13	2018-08-23	재가발자	9999-12-31				
2	2018-08-01	재발급	통합복지카드				2018-08-03	2018-08-23		2023-08-01				
3	2019-07-10	정보반급	통합복지카드				9-07-10			9999-12-31				

신청보통/서비스 선택정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재발급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구분:  전국재발급  재발급

카드구분: 42-통합복지카드(신용) 신청구분: 20-재발급

카드상장 정보

신청사유: [ ] 신청지출연월: [ ]

## (관내)복지카드 접수 후 전송내역 확인

카드발급요청일자/카드구분별로 복지카드 전송 내역을 조회하여 오류건, 장기 제작진행중인건은 오른쪽 하단의 전송내역상세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 상세 조회하여 조치

\* 타 읍면동에서 전국재발급으로 신청한 대상자도 확인 가능함 / 전송내역상세안내를 통해 신청지 읍면동 확인 가능

통합복지카드 전송내역조회 (복지발안통합) S1600 (UWPM51600M)

통합복지카드 전송내역조회  전국재발급

조회일자: [ ] 신청구분: [ ] 카드구분: [ ] 장애인성명: [ ]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 ] 자랑번호: [ ] 전송상태: [ ] 전송처리결과: [ ]

카드발급요청일자: 2022-08-01 ~ 2023-03-29

전송여부: 전체

조회결과 (총 168건)

번호	신청일자	요청일자	신청구분	카드구분	장애인성명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자랑번호	전송상태	전송처리결과	배출지주소	수령번호	종가번호
1	2023-03-24	2023-03-24	정보반급	통합복지카드				정보반급완료	정상발급(구자랑번호 7500008)발급일자: 2023-03-24			
2	2023-03-24	2023-03-24	재발급	통합복지카드(신용)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3	2023-03-23	2023-03-23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4	2023-03-23	2023-03-23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5	2023-03-23	2023-03-23	재발급	통합복지카드(신용)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6	2023-03-17	2023-03-17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7	2023-03-13	2023-03-13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8	2023-03-14	2023-03-14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9	2023-03-14	2023-03-14	정보반급	통합복지카드				정보반급완료	정상발급(구자랑번호 04016744)발급일자: 2023-03-14			
10	2023-03-13	2023-03-13	신규	통합복지카드(신용)				초래공사 전송	제작 진행중			
11	2023-03-06	2023-03-06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발급완료	정상발급			
12	2023-03-06	2023-03-06	신규	통합복지카드(신용)				도로공사 오류	카중차량번호 오류(카드 및 차량용 비서)			
13	2023-03-03	2023-03-03	신규	통합복지카드				초래공사 발급완료	정상발급			

조회결과 상세보기

신청구분: [ ] 수령번호: [ ] 제작일자: [ ] 발송일자: [ ] 참가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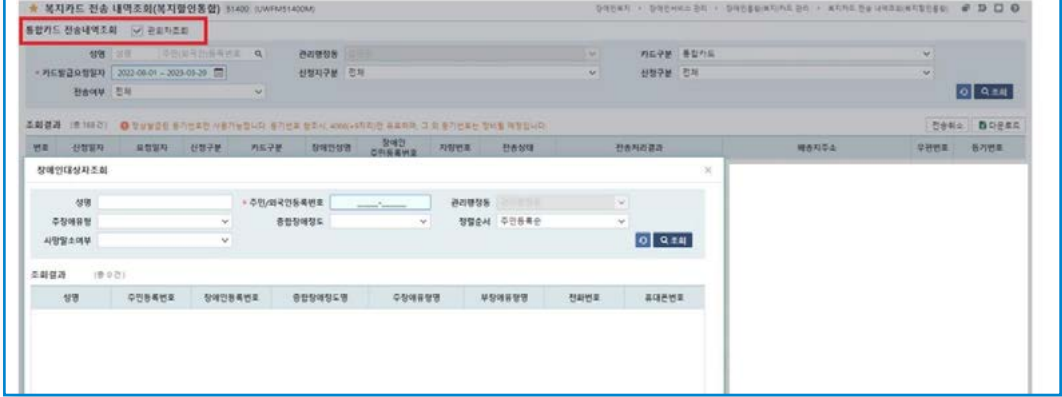
신청사유: [ ] 신청지출연월: [ ]

신청구분: [ ] 카드구분: [ ] 장애인성명: [ ]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 ] 자랑번호: [ ] 전송상태: [ ] 전송처리결과: [ ]

신청사유: [ ] 신청지출연월: [ ]

**(전국재발급)복지카드 접수 후 전송내역 확인**

전국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관외자조회] 버튼 체크하여 관외 장애인대상자 조회하여 전송내역 확인  
 \* 관외 대상자의 [전송내역상세안내] 조회 기능은 추후 제공 예정



**신청정보 잘못 접수한 경우 : 당일 반려 후 다음날 접수**

복지카드는 1종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1명의 대상자에 1일 1건 이상의 접수건이 존재할 경우, '도로공사 : 중복오류' 또는 '조폐공사 : 요청번호 중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 오입력 등으로 반려 후 다시 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날(+1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오접수 건 반려방법**

- 1) 매시간 정시 이전 : 복지카드 전송내역에서 전송취소 처리(도로공사로의 전송 취소)  
 (최초 신규 신청) 전송취소 후 다음날 재신청하는 경우, **도로공사로 전송된 정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신규' 신청**
- 2) 접수 당일 : 신청처리현황의 신청상태관리에서 신청상태 '반려'(도로공사 전송 성공, 조폐공사로의 전송 취소)  
 (최초 신규 신청) 신청반려 후 다음날 재신청하는 경우, **도로공사로 전송된 정보가 존재하므로 '재발급'으로 신청**

조폐공사로의 전송이 완료된 통합복지카드A형은 반려할 수 없습니다.  
 발급 취소에 대한 사항은 조폐공사 콜센터(21577-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장애인복지서비스  
12  
13  
14  
15  
16  
1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 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1234456-1234567		사진 3.5cm×4.5cm
	영문명 HONG GIL DONG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4			
	보호자 홍만석	보호자와의 관계 자(자)		
주장애 및 종합장애 등급	지체장애 2급		부장애 언어장애 3급	
등록일자	2018. 1. 1.		등록번호 12345678	
용도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용(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통합복지카드번호 12345678-1234 -5678, 차량번호 12가3456. 소유자 홍길동)			
제출처	유료도로 관리기관(한국도로공사 등)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의 자동차

####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발급 시 주의사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 발급 · 관리대장 관리 철저(시행규칙 별지14호서식)

※ 차세대 시스템 메뉴

-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발급 조회 → 표지발급내역 '출력'
- ▷ 장애인복지 → 현황/사후관리 → 보고서 및 출력 →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 보호자용/본인용, 주차가능/주차불가 발급 시 철저
- 보행성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을 경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가능

####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 5 장애인연금

### ▶ 사업개요

- ####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만) 단, 심한장애인 중 기존 3급만 해당하는 경우 연금 미해당

※ 위탁심사 면제대상

- ▷ 중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 만 65세 이상인자(2023년 기준 1958년생)
-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완료로 공단심사번호 있는 자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장애진단내역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TAB

2) 지원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재산만 조사 자녀 등 부양의무자 미조사
-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 대상 포함

3) 사업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4)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근로소득-8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액) + (금융 - ②2,000만) - 부채} × 4% ÷ 12개월

- ① 일반재산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  
(가구당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② 금융재산 공제 : 일상생활유지 최소경비 가구당 2,000만원 공제

5) 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단위 : 원)

구분		계	기초	부가	지자체 급여(서울시)
생계·의료급여	만18 ~ 64세	403,180	323,180	80,000	40,000
	만65세 이상		-	403,18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만18 ~ 64세	393,180	(최고) 323,180	70,000	40,000
	만65세 이상	70,000	-	일반 70,000 특례 140,000	
차상위초과	만18 ~ 64세	343,180	(최고) 323,180	20,000	해당없음
	만65세 이상	40,000	-	40,000	

\* 만65세 이상자는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지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포함)

6)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연장가능)

7) 구비서류

- 필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계좌 통장사본 ⑤ 신청자 신분 ⑥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 신분증
- 해당자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 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지원

### ▶ 사업개요

####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및 보조기기 지원의 차이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 장애인</li> <li>•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으로 판정된 자</li> </ul>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 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등</li> <li>• 심장 : 욕창 예방용 방석 등</li> <li>• 청각 : 진동시계, 헤드폰 등</li> <li>• 뇌병변 : 대체입력장치(스위치)</li> <li>• 지체·뇌병변 : 보행차, 목욕의자 등</li> <li>•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전동침대,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등</li> <li>•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li> <li>•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투약 알람기</li> </ul>
근거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 그 외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안내

#### 2) 참고자료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 7 장애인 활동 지원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방문조사결과 활동지원구간 1~15구간으로 분류하여 지원
- 2) **지원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 3)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b>기본급여</b>	【최소】 936,000원(60시간) ~ 【최대】 7,474,000원(480시간)
<b>시비추가 급여</b>	【최소】 1,245,600원(80시간) ~ 【최대】 5,449,500원(350시간) ※ 최종중장애인 돌봄서비스,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취약가구 지원 등
<b>특별지원급여</b>	【출산】 1,247,000원 【자립준비】 31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31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이 외 구비추가 급여 有

- 4) **수행기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 가능하며 타구 기관 이용가능
- 5)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8 발달 재활 서비스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재학 중인 아동은 만20세 미만까지 가능)
  - 장애 미등록인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상기 장애가 예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전문의 발급) 및 검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
- 2)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 주요내용

- 월 25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부담

소득기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25만원	월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22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17만원	8만원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 바우처 이용 카드(국민행복 카드)

-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 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 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 (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접수처	문의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1899-4651 / www.bccard.co.kr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 www.lottocard.co.kr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66-3336 / www.samsungcard.com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1599-7900 / www.kbcard.com
신한카드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1544-8868 / www.shinhancard.com

## 9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 ▶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신청번호	☎ 1588-4388 (유선신청)	☎ 1600-4477 (유선신청)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이용자 한함</li> <li>- 지적, 자폐, 정신 : 보호자동반 必</li> </ul> </li> <li>※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li> <li>장애가 있는 외국인(단기체류 외국인 중 휠체어 이용자)</li> <li>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li> <li>기존 등록 고객</li> </ul>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유관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전역</li> <li>예외적 운영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간 : 24시간</li> <li>이용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운영시간 내에 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차량이 도착, 서비스제공</li> <li>이용요금 : 5km까지 1,500원 / 5km초과 ~ 10km까지 2,900원(1km 280원) 10km초과 70원/km(시간·지역 할증 없음, 100원미만 절사)</li> </ul>	
가입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사용하여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 팩스 신청도 가능함)	

## 10 장애인 바우처 택시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만 14세~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 2) **지원내용** : 총 결제금액의 25% 본인부담(시 지원 75%)
  - ※ 이용 한도 : 최대 일 4회, 월 40회,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콜비포함)택시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콜비포함)택시이용요금 8,000원~40,000원	
		본인 부담	보조 한도
이용 요금	2,000원 본인부담	총결제금액의 25%	시 지원 75% 단, 콜당 30,000원 한도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 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 / 신한국가유공자카드만 가능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 3) **이용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 콜센터에 등록된 전화 및 앱으로만 접속하여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해야 함(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 4) **유관기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1 장애인 출산비용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이고 출산한 경우 지급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 ※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2)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4)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5) 신청·접수 방법 : 3가지 유형 중 선택

- ①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② 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서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③ 온라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개통 준비 중

### ▶ 업무절차



#### 대상자 자격 확인 : 동주민센터

- 등록 장애정보 : 행복e음을 통해 장애 등록정보 확인
-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해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 1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2) 지원내용
  - 수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한명당 월 140시간(연 960시간 범위 내) 이내 원칙  
※ 긴급돌봄 필요시 초과 사용 가능(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이용)

**3) 서비스 비용(2023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본인부담금 40%) : 시간당 4,740원
- 연간 960시간 초과 시(본인부담금 100%) : 시간당 11,850원

**4) 선정절차**

- 신청 :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상담·조사 : 자치구에서 소득조사, 조사결과 행복e음 시스템 등록
- 대상자선정 : 자치구에서 선정 및 결과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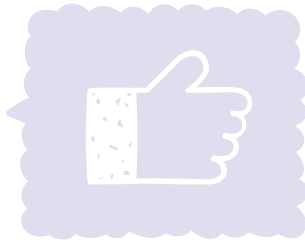
**5) 수행기관 : (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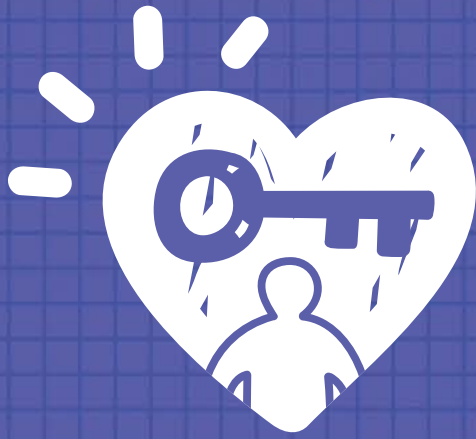
- 자치구(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대기자)에게 돌보미 연계
- 돌보미 모집 및 교육, 운영관리, 사업홍보 등

**6) 참고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은 제외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수송시설 이용대상 유공자)

※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발급하며, 보훈처 문의 필요(1577-0606)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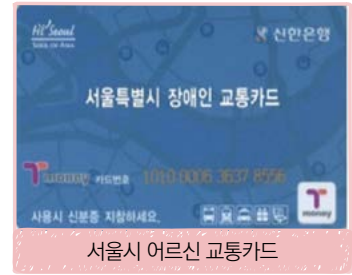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 ▶ 세부내용

#### 지원 대상 별 교통카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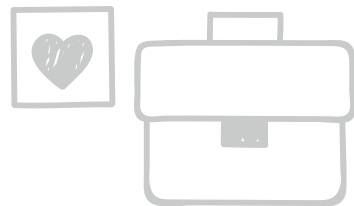
구분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우대용교통카드(장애인)
지원 대상	<p><b>만65세이상 경로우대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내국인 및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주민등록지참)</li> <li>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울시 거소로 신고한 만65세 이상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증 지참 필요)</li> </ul>	<p><b>장애인등록증 발급대상 내국인 장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必</li> <li>출입국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주지로 신고한 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모두 장애등록 가능) (※ 외국인등록증 지참 필요)</li> </ul>
카드 종류	<p>신용 체크 가능 (X)</p> <p><b>단순무임카드(어르신교통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즉시 교부함</li> </ul>	<p><b>단순무임카드(장애인복지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즉시 교부함(심한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1인 승차 가능)</li> <li>어린이용 : 만6세~만12세</li> <li>청소년용 : 만13세~만18세</li> </ul>
	<p>신용 체크 가능 (O)</p> <p><b>시니어패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한은행 영업소 신청가능하며 우편배송 됨</li> </ul>	<p><b>장애인복지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동주민센터 신청가능(우편배송)</li> <li>체크카드 만14세 이상, 신용카드 만19세 이상 발급가능하며, 여신규정에 다름</li> </ul>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체크카드는 즉시사용가능, 우대용교통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li> <li>수도권도시철도 승하차 시 가능. 수도권외 지역 사용 불가 (단,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23년 4월부터 전국 지하철 무료탑승 가능)</li> </ul>	
분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대용 교통카드 - 신한은행콜센터 ☎1577-8000</li> <li>신용/체크카드 - 신한은행콜센터 ☎1544-7000 / 720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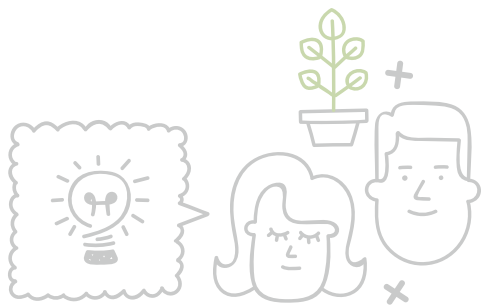
## 단순 무임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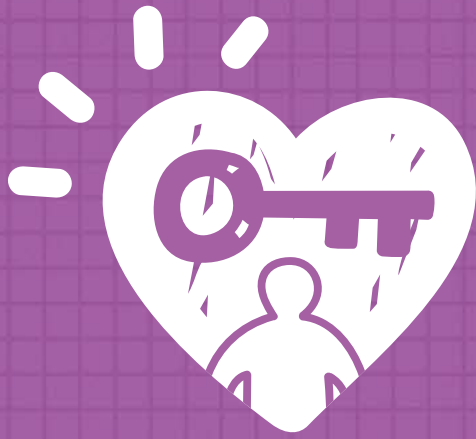
### ▶ 상담 시 주의해야할 사항

- 지하철-버스간 환승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음. 단, 버스-지하철-버스의 경우 '버스 간' 환승 할인 적용 가능
- 무임용 교통카드는 1인당 1장만 가능  
(만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발급 수령 가능)
- 분실 훼손의 경우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부과됨
- 분실 중인 카드를 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 신한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분실 해지하고 재 사용 가능하지만, 이미 재발급 받은 새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재발급된 카드를 이용해야 함
- 분실 시 카드에 충전한 T-MONEY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함(이에 대해 이의 제기 시, T-MONEY 관련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안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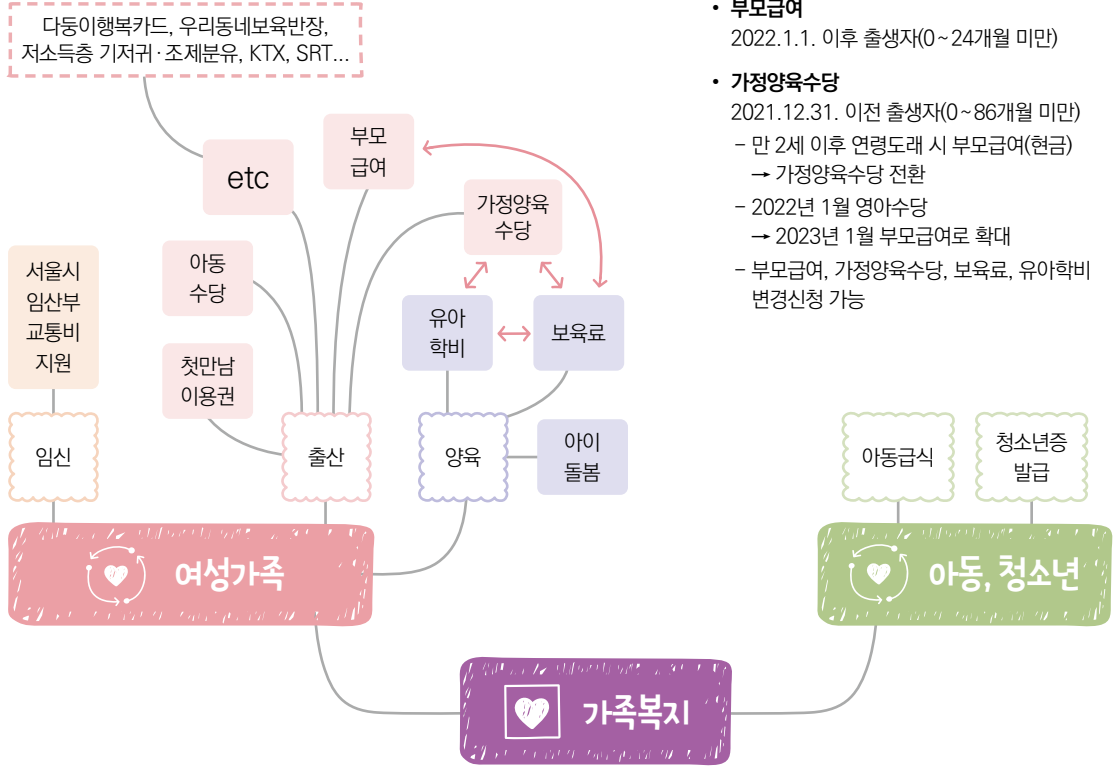


CREATIVE



## 13. 가족복지서비스

# 13. 가족복지서비스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0~24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0~86개월 미만)  
- 만 2세 이후 연령도래 시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 전환  
- 2022년 1월 영아수당  
→ 2023년 1월 부모급여로 확대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가능

## 1 임신지원서비스

###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 ▶ 사업개요

- 1) 목적 :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서울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
- 2)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 3) 신청대상(주소요건과 임신 및 출산 요건 동시 충족)

- 주소요건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 임신 및 출산 요건 : 임신 3개월(12주)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신부  
(※ 2022.7.1. 이전 출산한 사람은 지원 제외)  
※ 임신부교통비지원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해야 함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임신부 1인당 7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식 :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지원금을 받은 후 유산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의 지원액도 70만원 동일)

### 5) 신청방법

#### ① 방문 신청

- 임신한 사람, 출산한 사람 모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내국인 임신부/출산부, 외국인 임신부는 본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출산자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② 온라인 신청

- 임신한 사람 : 정부24 간편한 임신 신청(지자체 임신 지원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선택)+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 신청
- 출산한 사람 : 임신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 내/외국인 임신부/출산자 모두 본인만 신청 가능

### 6) 신청서류

- 공통 : (본인이나 대리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임신확인서
- 추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임산부가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임산부가 외국인), (대리인)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 7) 사용 및 사용기한

- 사용 : 교통비 관련 업종만 사용(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자가유류비,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사용처 확대 시행('23. 4.12.) : 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시만 포인트 사용 가능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카드사별 포인트 차감 운영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 삼성카드의 경우 본인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
-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임신한 사람),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유효기간이 경과한 바우처 지원액은 소멸

## ▶ 상담시 **TIP**

- 신청인의 내 / 외국인 여부, 신청인의 주소, 임신주차, 임신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 확인
- 지원금액, 교통비 사용 업종 안내
- 신청요건 2가지 확인(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신주차)

### ※ 주소확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서울시임산부교통비 권한 부여받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교통비홈페이지 거주기간계산기 이용
-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 →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후 주소이력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 교통비홈페이지 거주기간계산기 이용

### ※ 임신주차

- ▷ 임신확인서 분만예정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교통비홈페이지 임신주차 / 출산개월 계산기 이용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 ▶ 전산입력

### 온라인신청

- 새올 → 맞춤형서비스 → mampeonhms → 임신서비스 인터넷 신청목록/임신서비스 처리목록 → 해당 건 클릭 후 「임산부」 및 「임신정보」 확인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처리부서 설정 → 등록
-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업무시스템(<https://center.seoulmomcare.com/>) 로그인 → 신청접수 → 신청접수현황 → 해당 건 클릭 → 신청서 정보와 mampeonhms 임신 정보 동일여부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승인 / 반려 / 수정
-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 방문신청

- 새올 → 맞춤형서비스 → mampeonhms → 임신서비스 등록 → 「임산부」 임신부 인적사항 기재 → 「임신정보」 임신대상자 조회하여 임신확인서와 동일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처리부서 설정 → 「파일첨부」 임신확인서 클릭하여 구비서류 등록 → 등록
-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업무시스템(<https://center.seoulmomcare.com/>) 로그인 → 신청접수 → 신규신청접수 → 실명확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정보 모두 기재 후 저장 → 구비서류 확인 → 승인 / 반려 / 수정
-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 2 출산 통합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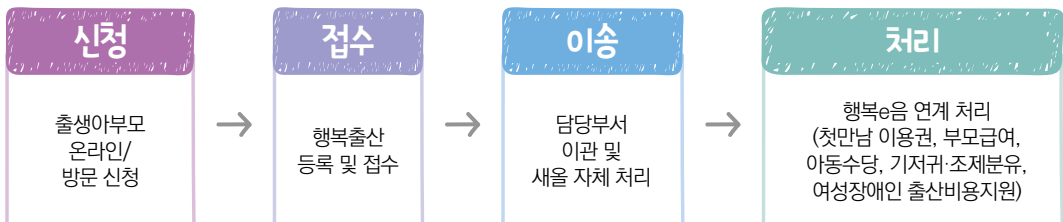
- 출생아 출생신고 시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다둥이행복카드, 다자녀감면,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지자체 지원 물품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 신청내역 : 다둥이행복카드(2자녀 이상),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지자체 지원 물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22년 1월 출생아부터),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료 및 지역난방비 경감 신청, KTX 및 SRT 할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소유자 및 카드사 확인 등
-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통장사본(필요시)
  - 추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 1. 행복 출산 등록

#### ▶ 사업개요

- 신청인**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공통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 신분증(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므로 생략)  
- 출산자의 직계가족 대리 신청 :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선택 - (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자격확인이 곤란한 경우) 자격확인 서류
- 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접수는 당일 또는 다음날 접수 원칙
- 안내사항** : 급여별 금액 및 지급일,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적용(아동수당, 부모급여)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방문하여 신청서류 지참하여, 신청인 혹은 대리인 신청
- 2)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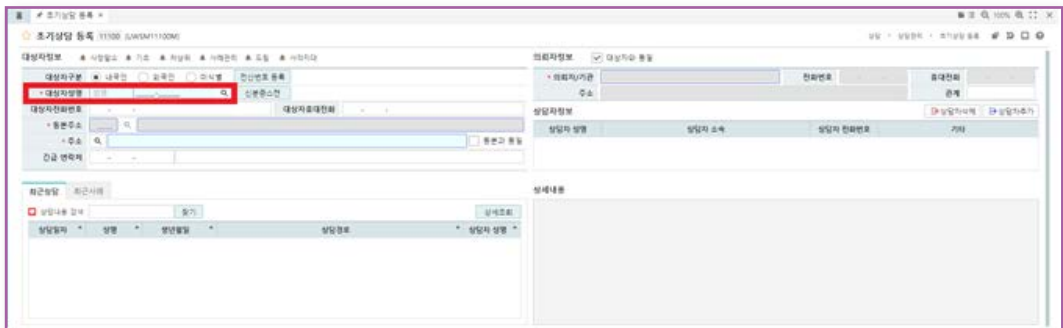
### 행복출산 등록

- 담당자 변경 시 서무계장님께 담당자 변경 및 권한 요청
- 자세한 것은 구청 해당과 담당에게 문의
- 출생아 출생신고 시에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입력처리를 위한 필수 과정
- 가구원 구성 시 부모와 자녀만 구성, 급여계좌 최대한 통일
- 입력순서 : 1. 새올 행복출산 등록 → 2. 행복e음 초기상담 입력 → 3. 행복e음 연동 → 4. 행복e음 연동사항 확인 후 각 급여 접수

## 1 새올 행복출산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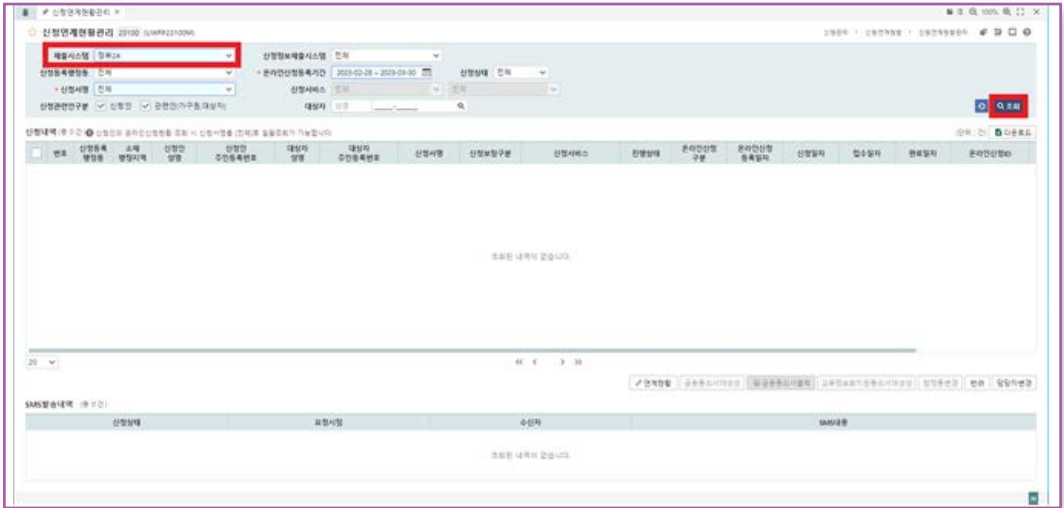
- ▶ 새올 → 상단 탭 '맞춤형서비스' → '맞춤형서비스' 탭 바로 밑 '행복출산' → 좌측 '행복출산접수등록' 등록 작업
  - 등록 작업중 세대원조회가 안 될 경우(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등) 추가 버튼을 눌러 한 명씩 수동으로 등록할 것
  - 부모 중에 행복e음 조회 안 되는 외국인은 먼저 행복e음 '초기상담'에 수동으로 조회해서 초기 상담 기록 남기고 입력 진행할 것

## 2 차세대 행복e음 초기상담 입력



- ▶ 행복e음 →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대상자정보」 대상자 성명 혹은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 → 「상담등록」 상담구분 단순안내 ● → 상담일자 → 상담내용 기입 → 저장

### 3 행복e음 연동(새울 행복출산 입력 후 2~3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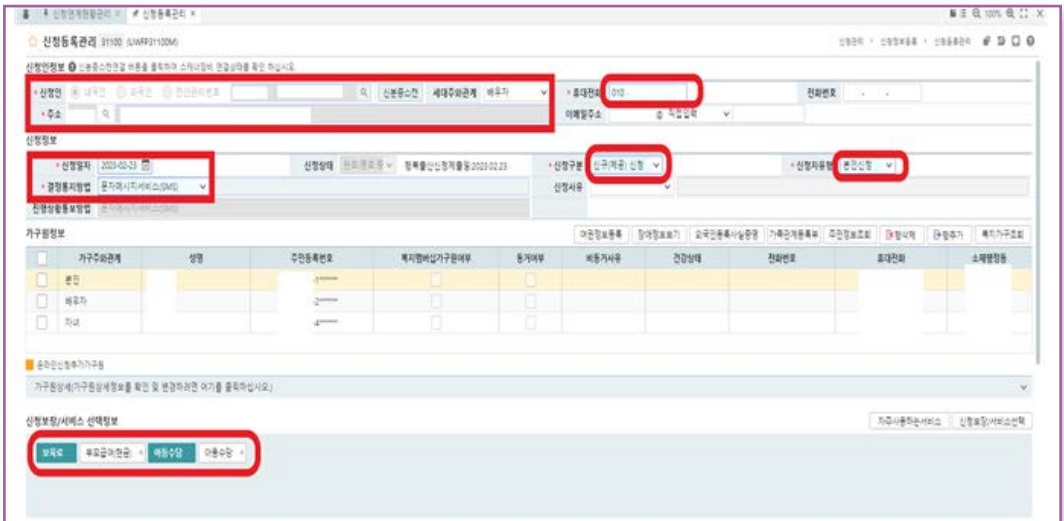
▶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에서 정부 24 설정

※ 행복출산 입력 후에 배우자가 행복e음에 조회되지 않는 외국인이라서 행복이음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 조치방법

- 새울 행복출산 → 행복출산 접수목록 → 해당자 클릭 → '공통부' 상단에 '행복e음 전승 완료' 확인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설정 → 연계현황 → '연계현황' 확인(외국인 배우자)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 → 신청인 성명 : 주민번호 : → 신청구분 : 신규(제공)신청 → 가구원 등록 → 행추가 →  외국인 → 외국인배우자의 성명, 외국인등록 번호 : → 돌보기 클릭하지 말 것 → 세대부와의 관계 : (배우자로 했을 때 아래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으로 하고 최종 부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접수시 수정) → 저장  
⇒ 익일에 다시 연계상황 확인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접수 처리(세대주와의 관계 수정 필요한 경우 수정)

### 4 행복e음 연동사항 확인 후 각 급여 접수

- 행복출산 입력 후 행복e음 연계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청 접수 처리



신청등록관리 31100 (WFF31100)

신청인명 : 신청사유 : 신청등록일

영유아복지 아동수당 신청

보장구분

세무주요의 관계	가구원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개월 이)	가구주관계	보호자	신청서비스	급여제외	다음 세대	가구주관계	신청서비스	급여제외	연장 신청	특약	장애 여부	장애 진단서
본인		-1*****	35	부					가구주						N
배우자		-2*****	35	모					배우자						N
자녀		-4*****	000	가구주	자녀	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자녀	부모급여(연) (모)					N

조부모 손자  보호손자  아동수당수급자
 
 승차도신청서(이)표기  신청서(이)표기  승려자신청서(이)표기

가구정보

영유아(영아복지)신청신청	다문화가정	농어촌가정	맞벌이가정	서당입소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기초생활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가구

급여제외

신청인과의관계	보장구분	배우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표계좌 여부	제외사유	제외사유내역	제외사유 확정여부	연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아동수당				Yes			Yes	연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보호료				Yes			Yes	연계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신청서

번호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수령일자	대상자	파일명
1	기대제출서류	신청서	2023-03-24		출신신청서 (1).jpg
2	기대제출서류	신청서	2023-03-24		출신신청서 (2).jpg
3	기대제출서류	신청서	2023-03-24		출신신청서 (3).jpg
4	기대제출서류	신청서	2023-03-24		출신신청서 (4).jpg

통장잔액인quiry  주소인quiry  교육비신청서(부)제출  구비서류요청  3M간접  신청상위인quiry  유괴사건조회  소록대신청서등록  금융정보관리시스템등록  임시거주지인quiry  신청기초인quiry  초기화  임시명  재입

신청상태관리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자 : 2023-03-31

신청상태관리내역  신청상태관리안내

신청서식	신청ID	신청보장구분	민원접수	상태	민원접수번호	등록일자
사회보장급여 제공(법정) 신청A		보호료	Y	접수대기		2023-03-31
		아동수당	Y	신청		2023-03-31
		아동수당	Y	접수대기		2023-03-31
		아동수당	Y	신청		2023-03-31

신청상태정보

보장구분 : 보호료  처리부서 및 담당자 통일(영유아 - 아동수당)

다음처리상태 : 접수  접수(처리)일자 : 2023-04-04

접수시군구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주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접수자ID :

수령자ID :

메모(사유) (한글 250자 이내)

**접수정보** X

**영유아, 아동수당 통합 접수 정보**

	<b>영유아</b>	<b>아동수당</b>
접수시군구		
접수부서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ID		
메모(사유)		

**확인**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 선택 → 조회 → 「신청인정보」 확인,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결정통지방법 선택 →  부모급여(보육료/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체크확인 → 주민정보초회 (하단 가구원상세에서 돋보기버튼 확인하여 주소,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확인,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자 등록 - 하단 참조) → 「보장가구정보」의 '아동수당' 하단 예금주를 보호자로 등록, 가구주관계 모두  체크하고 대상아동을 가구주로 하고 각각 관계 선택, '보육' 하단에 가구주관계 모두  체크하고 대상아동 부모급여 확인 → 「가구정보」에 다문화가정 여부, 시설입소 여부 확인 체크 → 급여계좌 계좌검색 →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 후 결제계좌유�효성확인 → 결제계좌유�효성확인 옆 확인 → 급여계좌에 행추가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구분(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다음처리상태 : 접수 → 신청상태  영유아, 주처리부서 : 구청 담당과, 수령자ID와 접수자ID : 구청 담당 지정 → 신청상태  보육료, 아동수당 각각 클릭하여 주처리부서 : 구청담당과, 수령자ID와 접수자ID : 구청 담당 지정 → 저장 → 접수부서, 담당 확인 → 확인 → 확인

신청연계현황관리

신청연계현황관리 231001 231002231004

신청연계현황관리 231001 231002231004

신청연계현황관리 231001 231002231004

번호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신청연계현황
1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2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3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4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5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6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7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8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9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10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11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12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외국인 )

신청인 (주요)  신청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출생여) 정보 (  내국인  외국인  친산권리보호대상자  이민종가업 )

대상자(출생여)  생년월일

출생 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종류  바우처  현금

보호자 정보

보호자  신청인과 동일

보호자(의)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보호자(의) 신분

보호기관(시설) 정보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직입입력

대표자(위탁부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급여계좌 정보(디딤씨앗통장)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디딤씨앗통장 여부

바우처 신청

급여계좌 정보(디딤씨앗통장)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디딤씨앗통장 여부

가구원 설정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직할 , 가구원 수( 3 ) 명 ]

가구 구성

세대주와의 관계 | 맞벌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거(이동거사유) | 우편번호 | 가구원 주소

본인   선택

배우자   선택

자녀   선택

통급설정  첫만남이용권 제공기간 : 이용권 지급일 - 대상자 출생일로부터 1년. (단, 22년3월경까지는 2022.04.01 ~ 2023.03.31)

대상자	서비스명	제공기간	바우처종급	바우처지급액	분원부담금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이용권 지급일 ~ 대상자 출생일로부터 1년	적합	2,000,000	0

바우처 신청

카드정보 [  신용카드,  보류 ]

카드정보 등록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의 경우 카드사 15을 통해 진행됩니다

카드신청서 출력  국민행복카드 안내문  국민행복카드 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자	대상자	서비스명	카드구분	카드종류	보유여부	카드신청여부	신청카드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첫만남이용권(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보유	미신청(발문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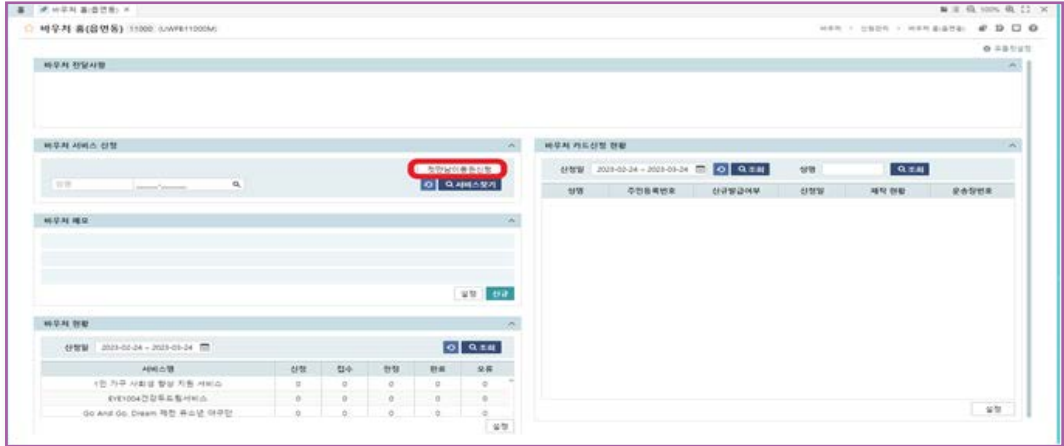
카드신청지 직장주소

대상자	서비스명	수령자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우편번호

환급계좌  계좌의 번호를 눌러서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대상자	서비스명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첫만남이용권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 선택 → 조회 → 해당 건 신청 → 「신청인 정보」에 신청인, 휴대전화, 주소, 세대주와 관계, 신청일 확인 → 「대상자(출생아) 정보」 내국인, 주택주소 돋보기 버튼으로 주소 입력, 출생 정보 해당 사항 체크 → 「서비스 정보」 지급유형 바우처 혹은 현금 선택 → 「보호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를 보호자로 설정,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체크 처리, 아동과의 관계, 부모의 보호자미등록 사유 확인 → 「보호기관(시설) 정보」 보호기관이 있을 경우 「급여계좌 정보」까지 입력, 없을 경우 입력 안함 → 「가구원 구성」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옆 돋보기 버튼으로 우편번호 및 주소 설정, 동거 체크 → 「등급설정」 대상자 확인 → 「카드정보등록」 보호자 및 대상자 확인, 국민행복카드 조회, 보유여부, 카드신청여부, 신청카드사 선택 → 「음면동 주민센터정보」 전화번호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신청접수 → 확인 → 확인

※ 새울 행복출산과 연계가 안될 시

⇨ 행복e음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 (음면동)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참고 : 행복출산 인터넷 접수건 처리 - 새울 행복출산 알림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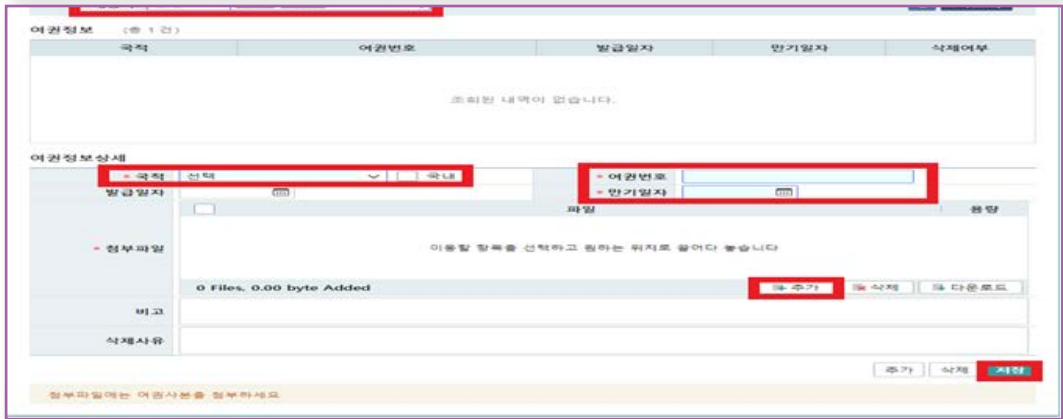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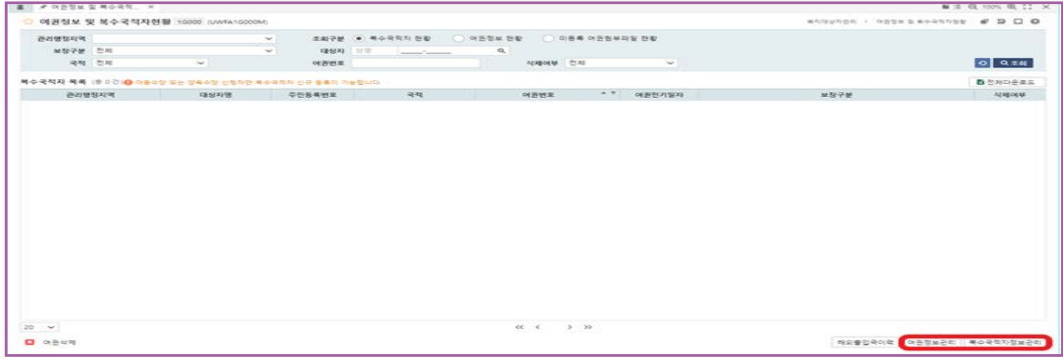
- ① 새울 행복출산 → 인터넷접수목록 → '전체'로 검색
- ② 새울 부서민원 → 접수대기민원 처리 → (상단) 민원24공무원창구 → 로그인 → 민원업무 → 민원처리 관리

3) 이송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 행복e음 연계 → 동주민센터 처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관할 보건소
- 해산급여, 저소득층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 관할 구 담당부서
- KTX다자녀 행복할인, SRT 다자녀 가족할인 →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4)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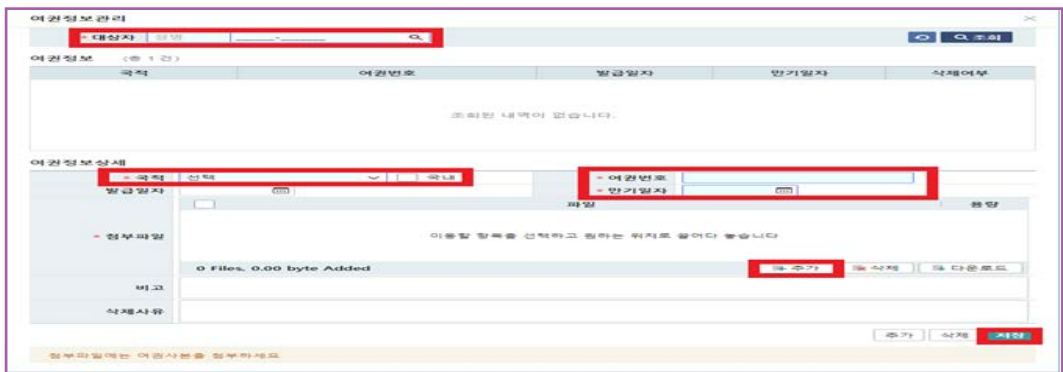
- 새울 행복출산 입력 후 행복e음 신청연계현황처리에서 부모급여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접수 처리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자 등록은 아래 하단 처리 방법 참고



▶ 해외출생자 등록 방법(복지대상자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에서 처리)

⇨ 여권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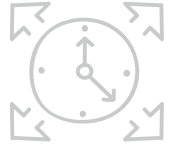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 → 여권정보관리 → 대상자 성명, 이름 입력 → 「여권정보 상세」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만기일자 입력 → 추가 버튼으로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 등록 → 저장



⇨ 복수국적자정보관리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 → 복수국적자정보관리 → 대상자 성명, 이름 입력 → 「복수국적자정보상세」 등록지준지, 국적, 외국성명, 외국생년월일 → 추가 버튼으로 국내외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 추가 → 저장

## 2. 첫만남 이용권



### ▶ 사업개요

- 1)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2)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제3항~제6항  
시행령 제1조의 2
- 3) 지급대상 :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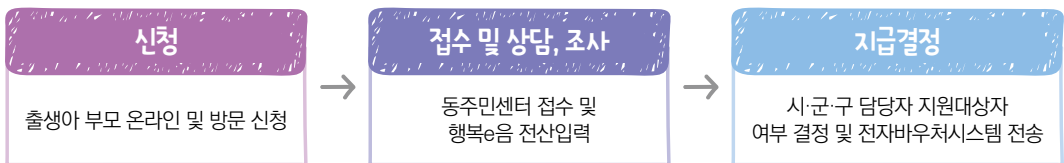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 지급가능)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 시작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 종료
사용범위	사행, 레저, 유흥업소 등의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사용방법	매장 방문 및 온라인 구매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신청

###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한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바우처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서비스 신청」 **첫만남이용권 신청**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 ▶ 상담시 **TIP**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국민행복카드사 및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부 안내

### ▶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

<b>온라인신청</b>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바우처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접수
<b>방문신청</b>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3. 다둥이 행복카드

### ▶ 상담시 **TIP**

- 1) 신청인의 관할 서울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 2) 신청대상 : 서울시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 / 2023년 7월 1일부터 만 18세로 변경) 가정
- 3)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에서 신청인이 신청  
신분확인용카드 : 서울시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2자녀 확인 후 반환

- 전산입력 : 다둥이행복카드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i.bccard.com/dadungi/>)에서 입력
- 여성가족과 담당에게 사용할 아이디와 인증키, 비밀번호 기재하여 구청으로 해당 공문 발송 후 다둥이 행복카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서 같음 가능
- 신규발급/재발급 → 신규등록 → 「신청자정보」, 「배우자 정보」, 「자녀 정보」 입력 → 저장
- 등록 후에는 신청정보주소만 수정 가능
- 발급현황에서 발급진행현황, 발급확인서 출력 등 가능
- 신청 후 BC카드와 계약한 업체에서 5일 이내 신청인의 카드수령지로 배송

## 4.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 ▶ 사업개요

- 1) 지원기간 및 내용 : **만 2세미만(24개월미만)**, 기저귀(월 80,000원), 조제분유(월 100,000원)
-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3) 신청대상 : 지원대상 조건 기준 충족

구분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li> <li>•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li> <li>•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li> <li>•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li> <li>•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매해 모자보건사업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침 확인</li> </ul>
조제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li> <li>•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가정·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의 아동</li> <li>•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li> <li>•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li> </ul>

### 4)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사용방법 :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오프라인(나들가게) - 바우처카드로 결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행복e음 연계 가능

## 5) 신청서류

### ※ 신청자 제출(공동)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 상담시 **TIP**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일괄 신청 가능, 새울 출산 등록 시 자동으로 행복e음 연계되며, 보건소 담당과에서 접수 처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상담 및 신청 등록
- 신청자격, 신청대상 확인 후 신청서류 안내
- 행복e음 신청 시 부모와 자녀를 모두 넣어야 함.  
2촌 이내까지만 입력(세대분리 또는 다른 주소지에 부부가 거주 시 모두 입력해야 함)

## ▶ 행복e음 등록방법

서비스 찾기

가구원 정보  건보료 수동 입력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신청구분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38	직장	4,600,000	163,070	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2				아동수당,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0	▼			사회서비스

서비스 목록 총 서비스 : 26 신청가능 서비스 : 5     신청구분 직장     보령로 한계 금액 382,410    

<input type="checkbox"/>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지	서비스명	예상결과	결과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006001] 가사가병방모과리사지위(스혜자)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녀		[GHA00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00800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BDG00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008001]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00300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위	신청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HWS021] 서울시 관악구 추가지원사업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HWL001]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281302]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형농서비스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checkbox"/>	자녀		[080202] 시각장애인 인마치도 서비스	신청불가능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

비우체 신청

신청인 정보 (  내국인  외국인 )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주소      \* 세대주와 관계     \* 신청일자 2023-03-29

전자우편  직접입력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 , 기저귀, 아니요, 1명, 사실상 }

대상자 정보

\*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보장구분 사회서비스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유아(필수여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대주와 관계 자녀  
\* 자택주소      전자우편  직접입력

서비스 정보

\* 신청서비스  기저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영이수 1명

모유수유 불가능사용  사망  임명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기정미대 아동 등     원부모(무자·조순)가족     사실상 모유수유 불가능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상      사실상 이혼      해당없음     \* 예외지원여부  예  아니요

소득/등급 설정 [ : [GHA00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가구원 수(4), 직장. ]

가구원 소득수준 신청  건강보험료가 다를 경우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안내 1577-1000)      수동 입력

<input type="checkbox"/>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적(미등적사용)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직장	6,330,888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Q"/>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가족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

소득수준 산정  
 가구원 수 4 신청구분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급설정  

대상자	서비스명	제출기간	바우처등급	바우처지역	본인부담금
	[GHA00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바우처등급 선택		

 등록신청

카드정보 [ , 실물카드]

카드정보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카드사 TM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문 국민행복카드 조회 기존 카드정보 조회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서비스명	카드구분	국민행복카드		
<input type="checkbox"/>		[GHA00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카드종류	보유여부	카드신청여부
				실물카드	선택	미신청(항문발급)
						신청카드사
						선택

카드수령지 직상주소

바우처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정보 **카드 발송시 주민센터로 발송**  
 읍면동주소 주민센터 읍면동전화번호

구비서류  
 파일 용량  
 이물질 장속을 신척하고 찢히는 위치로 잘라다 발송합니다  
 0 Files, 0.00 byte Added  
 등록 추가 삭제 다운로드

서류구분	서류명	제출일자	유효일자	대상자	파일명

· 방문/주간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제출 3년 이내  
 · 단기사서 회차전단서(소견서, 제출, 최근 2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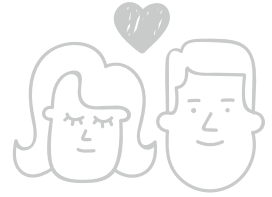
최소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저장 신청 접수

- ▶ 행복e음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서비스 신청」 성명이나 주민번호 기재 후 돋보기 버튼 → 서비스 찾기 → 건강보험료 조회, 건보료 수동일 시 수동 입력  월소득금액 입력 → 「가구원 정보」 신청자(보호자), 대상자(영아)  → 확인 → 「서비스 목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 예상결과 신청가능 확인 → 일괄신청 →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 「서비스 정보」 입력 및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 → 「등급설정」 등급판정, 바우처등급 확인 → 「카드정보등록」 대상자 확인 및 , 국민행복카드 조회,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소유시 보유), 카드신청여부(소유 시 미신청), 신청카드사(해당카드사 선택) → 「읍면동주민센터정보」 읍면동 전화번호 기재 (필요 시 보건소 담당자 기재) → 「구비서류」 추가 → 하단 저장 → 신청접수



### 3 양육서비스

## 1. 부모급여



### ▶ 사업개요

- 1) 목적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 2)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
  - 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
- 3) 지급대상

요건	내용
연령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1.1.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li> <li>•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li> </ul>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li> <li>-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li> <li>-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li> </ul> </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li> </ul> </li> </ul>

### 4) 지급방식

#### ① 부모급여(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②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보장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③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유의사항 :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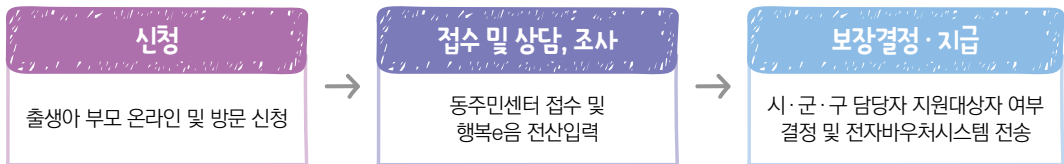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지급 내용 안내

▶ **상담시** **TIP**

- 동주민센터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국민행복카드사 및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 서류 필요여부 안내
- 부모급여 ↔ 보육료 변경 신청내용 인지 후 보호자에게 안내 및 행복e음 입력 필요  
 (▶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참고) 154p 참고
  - 만 0세(0~11개월) 영유아가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지원 변경신청 할 경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전환되며, 만 0세(0~11개월까지) 차액 18.6만원 지급될 계좌 확인 및 행복e음 입력해주어야 함.
  - 만 0세(0~11세)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기본보육료(51.4만원)와 '일할계산'된 기본보육료와의 차액은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15일 입소한 아동 : 어린이집 지급액[514천원 × 14/26(일)] = 276천원(원단위 절사) + 부모지급액 : 514천원 - 276천원 = 238천원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 보장 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방문신청**

- ▷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부모급여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변경 신청
-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 하단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p.164)



## ▶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 1)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li> <li>·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자격종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li> <li>·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li> <li>* 부모급여 자격종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li> <li>*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li> </ul>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li> <li>*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종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li> <li>·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자격종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li> </ul>

### 2)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종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자격 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3)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재지원



## 2. 아동수당



### ▶ 사업개요

- 1)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2)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3조
- 3) 지급대상

요건	내용
연령요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li> <li>-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li> <li>-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li> </ul> </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li> </ul> </li> </ul>

####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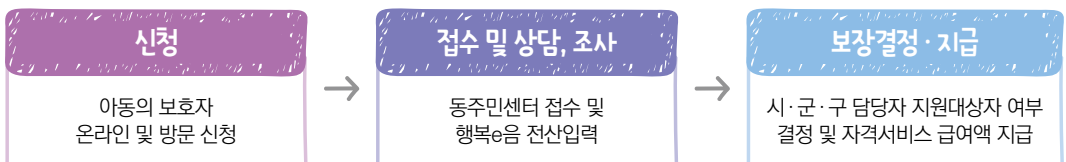
####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시 보호자 확인하여 보호자 변경사유, 변경 보호자 확인하여야 함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 ▶ 상담시 TIP

-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부 안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내용 안내
  -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 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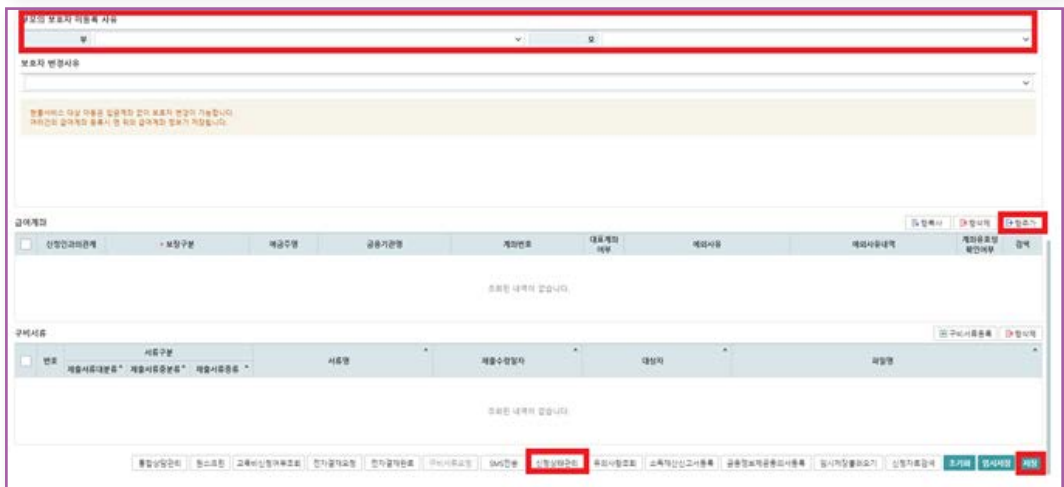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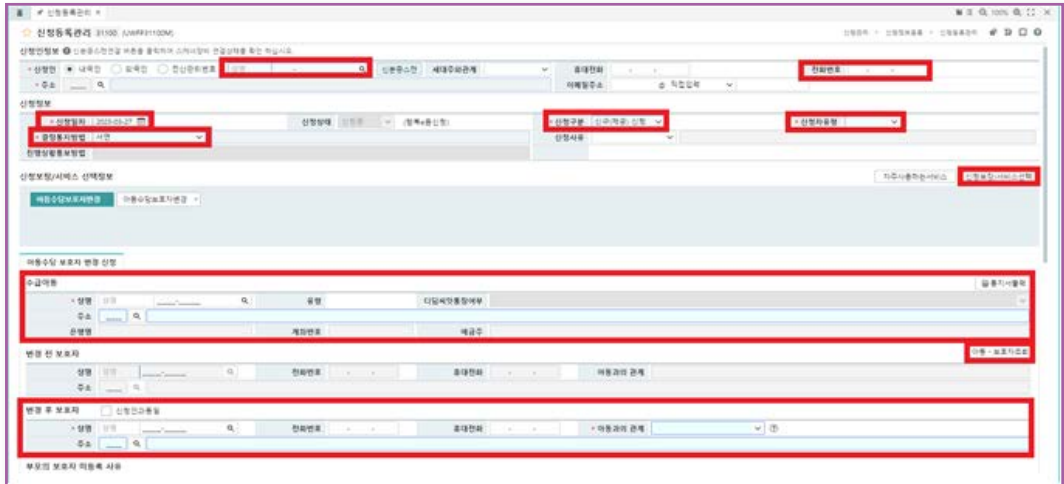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보장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재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 방문신청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1)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혹은 부↔모간의 계좌변경)

부모간의 계좌변경시 변경 전 계좌와 변경후 계좌 예금주가 다를 때 보호자를 변경해줘야 함. 변경사유에 대해서 파악 후 초기상담에 기재 필요. 변경 전 보호자와 유선통화 등 바뀐 내용에 대해 고지 및 확인 필요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목록 아동수당보호자변경신청 → 신청인 정보 : 아동이름으로 조회 → 신청정보 입력 → 수급아동 입력 → 아동·보호자 조회 버튼 → 변경 전 보호자 확인 → 변경 후 보호자 입력 → 급여계좌입력및조회 클릭 후 계좌 변경 처리 → 보호자변경 입력 : 대부분  보호자 단순변경 이거나 이혼 등 사유 기재 → 구비서류 등록(통장사본, 보호자변경신청서)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종료. 방문 신청일 경우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혹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해당 부서로 공문 발송

### 2) 아동수당 변동대상자 확인(출입국 여부 확인)

행복e음 → 변동관리 → 출입국정보조회 → ● 출국일자:기입) → 성명:기입) → 돋보기 → 조회 확인 → ● 입국일자: → 조회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필요

### 3. 가정양육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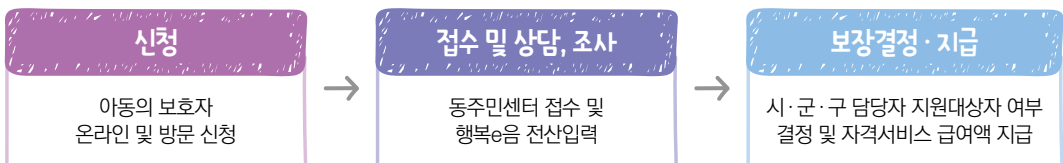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1) 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비용을 지원하여 보육료 등 지원 영유아와의 형평성 제고
-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3) 지급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2022.1.1. 이후 출생한 만 0~1세까지 부모급여 지원)
  - 장애아동수당은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23개월 - 150,000원 24~86개월미만 - 100,000원	12~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미만 - 100,000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
- 자치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 ▶ 상담시 TIP

-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부 안내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신청내용 인지 후 안내
- 주소지 변경 시 수당지급 지자체 안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지급 내용 안내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보장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유아학비 변경 신청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하단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164p 참조)

## ▶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 1)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유아학비 변경 시 자격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p><b>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b></p> <p>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급불가)</p> <p>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급불가)</p>	<p><b>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b></p> <p>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p> <p>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보육료는 해당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변경신고일까지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p>

### 2) 주소지 변경 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15일까지)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16일부터)
<p>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p>	<p>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p>

### 3)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4. 보육료 (기본/연장보육, 누리과정, 장애아, 다문화)

###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2)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3) 급여 종류 및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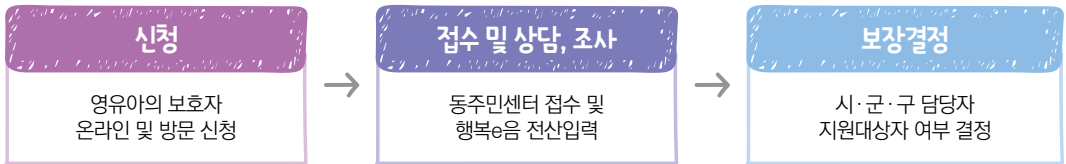
- 급여종류
  - 영유아(만0~2세반)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반)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 만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99천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59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반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지원액 : **매해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료 지원단가 확인**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만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신분증

7) 처리기한 : 14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업무처리 세부절차**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기존 보장은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성명, 주민번호 조회 → 보장에서 확인 가능
- 국민행복카드 소유여부, 변경보장에 대한 확인 및 자격증지, 자격생성시기, 자부담 등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 하단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행복e음 입력 방법 참고
- 행복e음 신청등록 시 행복e음 → 신청관리 → 신청보장/서비스선택 → 보육료지원 → 「보장가구 정보」 → 선택서비스에서 해당서비스 선택 → 저장, 접수 처리
- 초기상담에 신청일, 대상자, 변경보장(연장보유일 경우 사유까지) 등 입력

## ▶ 상담시 **TIP**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존보장, 변경보장, 자격중지, 자격생성시기, 자부담 여부, 추가서류 확인하여 안내 및 신청, 초기상담 등록, 접수

## ▶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 1)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업무과정

▶ 1. 업무절차 : 상담, 관련서류 안내 → 신청서류접수 → 행복e음 입력 → 초기상담 기록

2. 상담 시 안내사항

- ①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에서 현 보장 자격(만 나이에 따른 보육종류 확인), 급여계좌, 변경 후 자격,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확인
- ② 국민행복카드는 대부분 기소유, 미소유이거나 분실 등의 사유일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가 카드사에 직접 국민행복카드신청하시도록 안내(분실 및 누락 가능성 방지)
- ③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자격중지, 자격생성에 관한 사항 안내,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
- ④ 전국단위 신청일 경우 관련 서류 이관처리 및 시간소요 등 신청인, 해당 관할 동주민센터 통지
- ⑤ 국적문제 : 아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함(외국인 아동은 자부담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 해당 자치구 별 지원가능 여부 다르므로 확인 필요)
- ⑥ 해외체류 : 해외체류 90일 경과 시는 양육수당 중지
- ⑦ 통장 : 부모 혹은 아이 통장 외에는 안 됨
- ⑧ 제출서류 : 아래 참조
- ⑨ 연장보육 신청 시에는 사유별로 유효기간 있음을 안내(매해 보육사업 안내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참조)

3. 종류 및 제출서류

- ①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출생신고자는 행복출산신청서) + 통장사본
- ② 보육료
  - 영아(0~2세) 기본보육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부모의 신분증
  - 영아(0~2세) 연장보육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연장보육신청사유서 + 연장보육 사유 관련 서류) 매해 보육사업 안내 참조 + 부모의 신분증
  - 장애아보육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장애인등록증(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부모의 신분증



• 다문화보육료

공동	필요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추가제출하고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부모의 신분증
- ③ 유아학비 : 유아학비(3~5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부모의 신분증
- ④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07.1.1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2)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행복e음 입력

①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보육, 누리과정), 유아학비 변경 신청

▶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급여 계좌,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선택 해당 서비스 체크[기본보육/누리(3~5세/장애아/다문화)/유아학비] 후 저장 → 신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해당 서비스), 급여계좌 선택(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일 경우) →  국민카드행복카드(소유일 경우 체크해제, 미소유일 경우 체크하여 「카드신청인(본인·보호대상자), 「신청카드정보」 활성화된 부분 모두 입력)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급여계좌」 행추가 계좌검색 →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 후 결제계좌유효성확인 → 결제계좌유효성확인 옆 확인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주처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조회후 선택), 접수자:○○○(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접수'

초기상담  
기록 예시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보육, 누리과정), 유아학비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온라인, 방문)
  - 신청인 : 부 홍길동
  - 대상자 : 홍순이(230506)
  - 변경보장 : 부모급여(현금) → 기본보육

②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본보육 ↔ 연장보육변경신청, 연장신청

➡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급여계좌,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 / 서비스선택 해당서비스 체크 후 저장 → 신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국민행복카드 여부 체크,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해당서비스) 연장보육(법정, 장애아, 다문화 등), (선택, 종일형 연장여부  (사유변경 혹은 연장신청 시 체크) → 저장 → 연장보육자격유형확인 → 확인 → 부모 성명, 자격유형 선택연장보육 자격 유형 확인하여 해당사항에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국세청일용근로소득통보) → 하단 '적합여부 확인' 클릭, 상단 가책정여부(적합, 부적합)확인 → 공적자료상세로 육아휴직 등 확인 가능 → (적합 시에)저장 → 닫기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구비서류 등록 시에 대분류 : '연장(종일반)보육료 제출서류' 유효기간 기재 (유효기간 관련사항 참조 2023년 보육사업 안내 P.350~355 의거할 것)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주처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 : ○○○(조회후 선택), 접수자 : ○○○(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 '접수'

**초기상담 기록 예시**

- ▶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본보육 ↔ 연장보육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 / 온라인, 방문)
  - 신청인 : 홍길동(부)
  - 대상자 : 홍길순(150205)
  - 변경보장 : 부모급여(현금) → 연장보육
  - 사유 : 부-4대보험가입 / 모-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유효기간 : ~2020.7.31.
  - 유효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하실 것을 안내

③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기본, 연장, 누리(만3~5세, 장애, 다문화)]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누리과정)

➡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 / 서비스선택 해당 서비스(누리/유아학비) 체크 후 저장 → 신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국민행복카드 여부 체크,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누리(3~5세, 장애, 다문화 등)/유아학비(누리3~5세, 법정 등))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주처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 : ○○○(조회후 선택), 접수자 : ○○○(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 '접수'(유아학비로 변경 시 주처리부서, 수령자, 접수자 기재 부분 없음)

**초기상담 기록 예시**

- ▶ 유아학비 → 누리과정(다문화)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 / 온라인, 방문)
  - 신청인 : 부 홍길동
  - 대상자 : 홍순이(150505)
  - 제출서류 : 모의 외국인등록증

### 3)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시의 자격증지, 자격생성 시기

#### ①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변경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b>부모급여(현금)</b> ↓ <b>부모급여(보육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li> <li>•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자격증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li> <li>•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li> <li>* 부모급여 자격증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li> <li>*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li> </ul>
<b>부모급여(보육료)</b> ↓ <b>부모급여(현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li> <li>*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증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li> <li>•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li> <li>* 부모급여(현금) 자격증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li> </ul>

#### ②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구분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15일 이내 신청	<b>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증지</li> <li>*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월부터 자격증지</li>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자격 생성</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자격 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 전월 말일 자격 증지</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1일 자격 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전월 말일 자격 증지</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1일 자격 생성</li> </ul>
	<b>급여 지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li> <li>*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li>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li> </ul>
16일 이후 신청	<b>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증지</li> <li>*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월 말일 자격증지</li> <li>• (보육료)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증지</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증지</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li> </ul>
	<b>급여 지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li> <li>•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어린이집 이용일수 만큼 일할지급</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유치원 이용일수만큼 일할지급</li> <li>•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ul>

- ③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지원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지원
- ④ 보육료 ↔ 유아학비 자격변경

구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수급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li>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li> </ul>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li>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li> <li>•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li> </ul>

#### 4) 0~2세 연장보육 신청 시 제출서류, 유효기간 안내

- 기본보육 : 연장보육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보육으로 신청. 증빙서류 없음
- 연장보육 : (어린이집 상담 후) 사유 유형별로 증빙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함

#### 5) 육아휴직자의 복직예정 시에 연장보육 신청 관련

- 복직예정으로 연장보육을 원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 후 신청(어린이집 가운데 연장보육을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 복직예정신청서 제출자는 복직일을 행복e음 초기상담, 유효기간 입력(입력 시까지 신청서류 보관 주의)

#### ▶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 자격 안내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4대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 예)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01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 복직 신청(기본 → 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지침서식 [서식 9] 활용)
  - 신청일 :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로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 자격유지시(99991231로 입력)
    -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 → 보육료 등)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6) 연장보육 유효기간 설정 관련

※ 연장보육 접수 후 행복e음에 구비서류 등록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하는 월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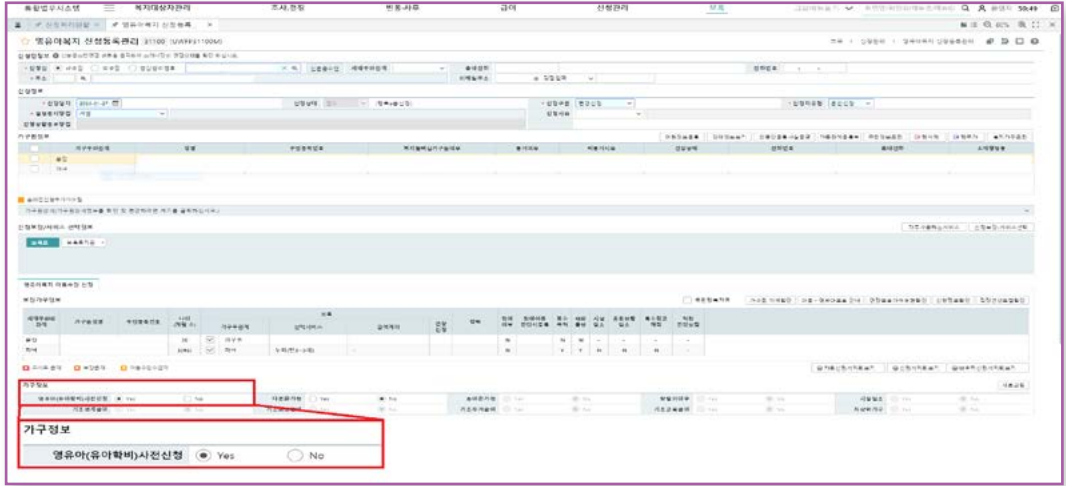
- 취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는 이직 등의 변동이 많아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판단
  - ▷ 자영업자 : ~ 다음해 7.31(세무서에 소득 관련 자료 나오는 시기)
  - ▷ 무급가족종사자 : ~ 다음해 7.31
- 구직/취업준비
  -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자격증 상의 유효기간 까지
  -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 수강증, 확인서 상의 기간까지
  - ▷ 구직등록증 : 구직등록증 상의 기간까지(구직등록으로 인한 연장 보육은 평생 1회 한정)
- 돌봄필요
  - ▷ 장애
  - ▷ 다자녀 가구 : 연령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가구
  - ▷ 임신 : 임신진단서 등의 출생(예정)일 까지 /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아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 ▷ 출생 : 출생일로부터 1년
  - ▷ 유산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복직예정자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효기간 설정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4대보험 가입 시에는 직권처리 가능)

## 7) 사전신청(매년 2월 중)

※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보육료(기본/연장/누리/장애아/다문화), 유아학비 관련 신청을 2월 중에 미리 신청할 경우 가구 정보에 반드시 '사전신청' 체크해야 함.(일반 신청은 no 선택). 매년 영유아복지 사전신청 사용자 매뉴얼이 행복e음 공지사항에 기재되기에 매뉴얼 숙지하고 신청, 접수할 것.





### 8) 보육 자격변동자, 유효기간 도래자, 자격확인 대상자 처리

매월 중순경 행복e음에서 자격변동자, 유효기간 도래자, 자격확인 대상자 파악 후 맞춤형 전환예정 통보 및 월말에 직권변경 처리

▶ 행복e음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일' → 보장변동 → '맞춤형보육 자격변동', '맞춤형보육 유효기간', '맞춤형 자격확인' 각각의 '미처리' 클릭 후 엑셀로 다운 받아 확인작업 후 통보 → 연장신청 혹은 직권변경(월말) 후 → 대상자  → 처리상태변경 → 변경사항 내용 메모 기입(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 기입)

- 엑셀다운자료를 바탕으로 변경사항, 유효기간 재확인 후 변경대상 아니면 처리상태변경에서 관련 내용 기입, 변경대상자인 경우는 부모들에게 아래 안내사항 전달(전화)
- 안내사항 : 연장보육 사유 있을 시에는 당월 중에 연장보육 연장신청하실 것과 연장신청 없을 시에는 기본보육으로 직권전환 됨을 안내
- 통보 상황을 반드시 '초기상담'에 기록 남길 것

## 5. 유아학비

### ▶ 사업개요

- 1)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2)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할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 예시)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3) 지원기간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동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4)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매해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인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매해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인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신청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상담시 TIP

- 신청권자는 유아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에 유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온라인(복지로), 방문 신청 시 보육료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 방법 참조하여 신청, 접수
  - ※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즉시 처리 안내
- 행복e음 신청·접수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여부 체크

## 6. 아이돌봄지원사업

### ▶ 사업개요

- 1)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2) 지원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 3) 지원대상
  - 대상아동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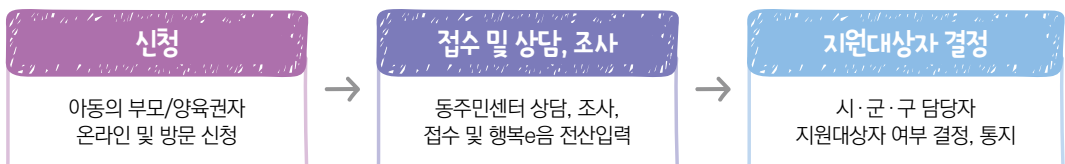
####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양육공백기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

- 4)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매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확인
- 5)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매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확인
- 6)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신청
- 7)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분증
- 8) 처리기한: 14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외 전출 시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신청해야 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능
  - ※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시간제/종일제 유형, 양육공백 사유, 소득기준충족, 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원기간, 대기기간 안내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며 가~다형일 경우 정부지원이며,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 경우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175p 참조)
- 영유아복지(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중복방지 확인
- 정부지원 해당 및 정부지원 유형 신청인에게 안내

▶ 상담시 

- 1) 인적사항 및 신청사항 파악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파악, 시간제/종일제, 양육공백 사유 파악 및 소득기준 충족, 중복지원 불가 안내, 정부지원 기간 안내 및 대기기간 있을 수 있음 안내
- 2) 양육공백 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 : 매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확인
- 3) 중복금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4)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 기준

구분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아이돌봄(영아종일제)	아이돌봄(영아종일제)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li> <li>· (아이돌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li> <li>·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li> </ul>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지급</li> <li>· (아이돌봄)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지급</li> <li>·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li> </ul>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기준으로 함
  - ▷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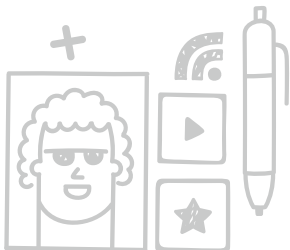
**예시** 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는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예시**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 중 200시간을 이용하고, 영아종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 영아종일제를 9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개월 후 나머지는 시간제로 재 전환 시 4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760\text{시간}(960\text{시간} - 200\text{시간}) / 80\text{시간} = 9\text{개월} + 0.5(\text{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 \times 80\text{시간} = 40\text{시간}(\text{시간반올림})$

**예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고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 시간제서비스 72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960\text{시간} - 240\text{시간}(80\text{시간} \times 3\text{개월}) = 720\text{시간}$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1) 행복e음 입력방법

#### 아이돌봄서비스건강보험료조회

※ 정상적으로 조회한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다를 경우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번호:1577-1000)

수동입력  건강보험료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맞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본인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지녀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 월소득금액 180만원 미만 가구원(지역가입자, 건보료 미조회 직장가입자)  
 - 맞벌이 가정 대상: 월소득금액 수동입력으로 판정(건보료는 기준금액 표시로 판정영향없음)  
 - 그 외 대상: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수동입력으로 판정(월소득금액은 기준금액 표시로 판정영향없음)

**소득수준산정**

가구원 수	3	신청구분	없음	소득금액합계	0	감정적용합계	0	건강보험료합계	0
-------	---	------	----	--------	---	--------	---	---------	---

**가구원별 소득기준**

기준명	가구원 수	소득기준 (반정기준)	신청구분		
			직장	지역	혼합
2023년 아이돌봄(시간제-가정)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3	3,327,000	118,789	60,944	120,087
2023년 아이돌봄(시간제-니팅) 기준중위소득 75%초과~120%이하	1~3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2023년 아이돌봄(시간제-다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1~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2023년 아이돌봄(종일제-가정)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3	3,327,000	118,789	60,944	120,087
2023년 아이돌봄(종일제-나눔) 기준중위소득 75%초과~120%이하	1~3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2023년 아이돌봄(종일제-다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1~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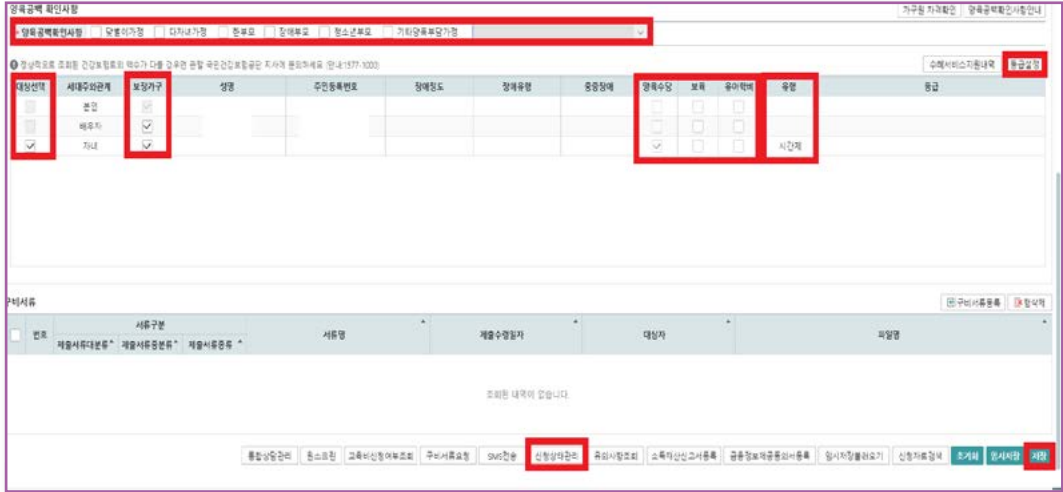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기준금액	신청구분		
	직장	지역	혼합

**닫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가족지원서비스



➔ **선작업 : 종일제의 경우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지처리(구청 담당자와 확인 후 중지 완료확인하고 진행)**

행복e음 → 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등록관리 → 「신청인정보」 신청인 이름, 휴대전화, 주소 확인 → 「신청정보」 신청일자, 결정통지방범, 신청구분(신규일 경우 신규, 재판정이거나 가구원 변경없을 경우 변경신청) → 「가구원정보」 주민정보조회 주민등록가구원 확인(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아이돌봄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건강보험료조회 → 아이돌봄서비스건강보험료 조회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버튼 눌러 자동 조회 → 맞벌이 경우 맞벌이 ,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담 부과액) 확인, 수동으로 입력할 경우 수동입력 하여 신청구분(직장/지역) 선택 후 월소득금액 입력 시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자동 계산 → 단기 → 「양육공백 확인사항」 :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취업한부모, 기타 중에 해당항목을 선택 → 대상자, 보장가구 클릭 → 양육수당/보육/유아학비 자격 확인 → 유형선택(시간제/종일제) → 등급설정 클릭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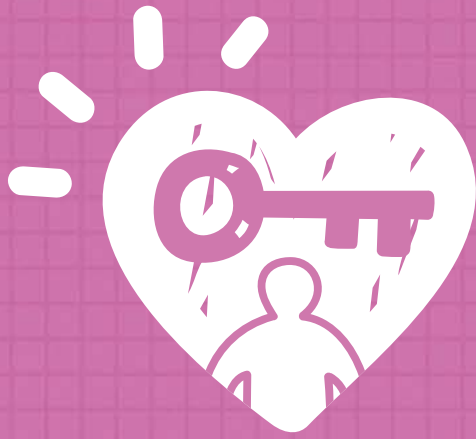
**2) 아이돌봄서비스 중지 신청(구청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

▶ 행복e음 → 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현황 → 서비스구분 및 최종신청일자 선택, 성명 주민번호 기입 → 조회 → 검색결과 해당하는 것  → 중지신청

**3)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 시간제 변경 및 재판정 신청(매년 1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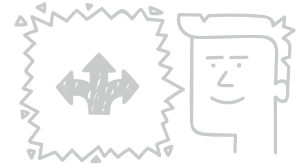
- 종일제 ↔ 시간제 변경 시 행복e음 입력방법과 동일 진행
- 아이돌봄서비스 매년 1월 전(순)아이돌봄 이용가구 재판정 기간, 재판정 미진행 시 2월 1일로 자격 중지되어 이용가구의 자부담 100% 생성됨. 서비스기관에서 재판정 관련 안내 진행하므로 주민센터에서는 재판정 신청 건에 대해 상담, 신청, 접수, 조사 진행





## 14. 아동·청소년 서비스

## 14. 아동·청소년 서비스



### 1 아동급식

#### ▶ 사업개요

- 1)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2)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3) 신청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부재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②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4) 지원내용

##### ①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연중 석식 지원(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 학기 중 중식 지원(교육청, 학교)
  -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 방학 중 중식지원

② 급식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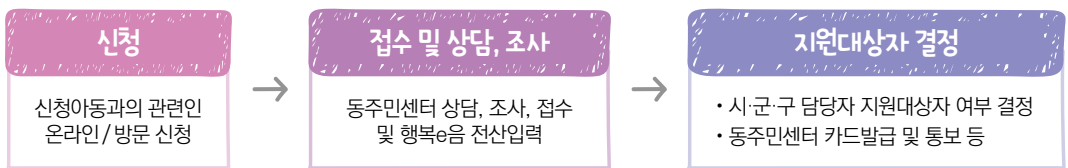
-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급식전자카드(꿈나무카드 1일 8,000원 충전) 중 선택

5)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아동급식 신청서, 급식지원 아동조사표, 개인정보동의서(급식전자카드 이용 시)
- 추가 - 맞벌이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6개월분) 또는 소득신고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신청 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 업무처리 세부절차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 아동의 부모, 지역아동센터장, 학교담임교사 등 아동과 관련있는 사람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외 전출 시 아동급식 전출 공문 발송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능
-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 구청으로 공문 발송

3) 지원대상자 결정

- 아동급식 대상자 결정 확인(관련 과에서 공문 시행 후 주민센터 접수)
- 서울시 꿈나무 카드 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충전 및 잔액 확인 등(동주민센터)
-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카드수령토록 안내(동주민센터)

▶ 상담시 **TIP**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1) 행복e음 입력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아동급식 지원신청' (Child School Lunch Support Application) form. Red boxes highlight the following sections and fields:

- 신청인 (Applicant):** Fields for name, ID, phone number, and address.
- 신청내역 (Application Details):** Fields for school name, grade, and application type.
- 신청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Fields for application date, status, and category.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Application Guarantee/Service Selection Information):** Fields for meal type and service type.
- 신청내역 (Application Details):** Fields for application date, status, and application type.
- 신청내역 (Application Details):** Fields for application date, status, and application type.

The screenshot shows the '급식지원필요유형(결식유형)' (Meal Support Required Type (Meal Type)) form. Red boxes highlight the following sections and fields:

- 신청내역 (Application Details):** Fields for meal type, meal amount, and meal frequency.
-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Fields for document type, document number, and document name.

#### ▶ 신규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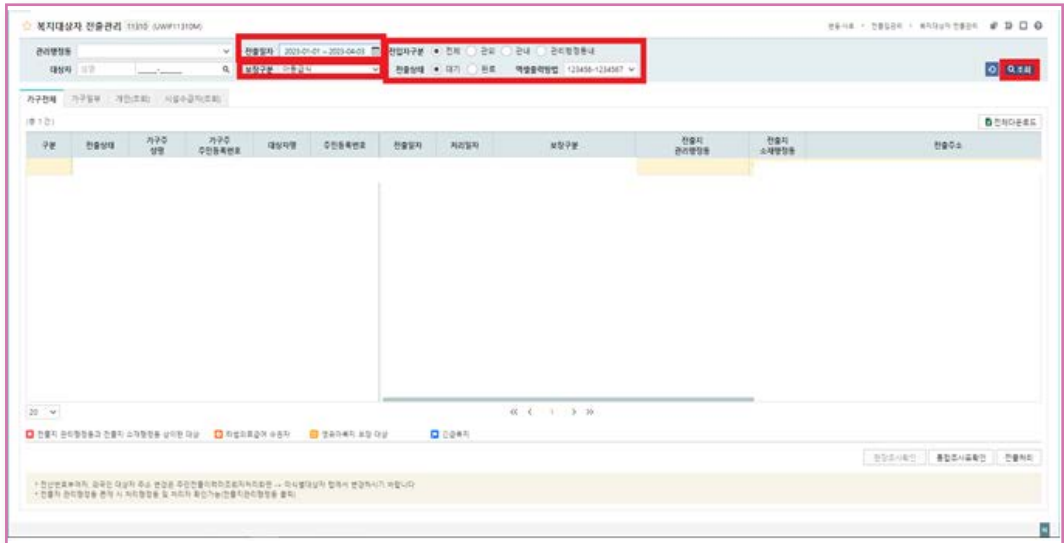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 지원신청 → 「신청인정보」 「신청보」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아동급식 정보입력 및 신청내역 입력, 「아동급식 지원신청」 신청인/보호자(신청일과 동일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 / 대상 아동 정보입력 → 실시간학적정보연계 → 「신청내역」 아동급식카드 사용여부, 지원구분 선택 → 맞벌이가구일 경우(기준중위소득 52%이하 선택, 건강보험료조회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확인, 단기) → 「급식지원필요유형(결식 유형)」입력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하단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공문시행

#### ▶ 변경신청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 지원신청 → 아동급식지원대상자관리 → 대상자 조회 후 더블클릭 → 내용 수정 → 저장 후 접수

## 2) 아동급식 전출자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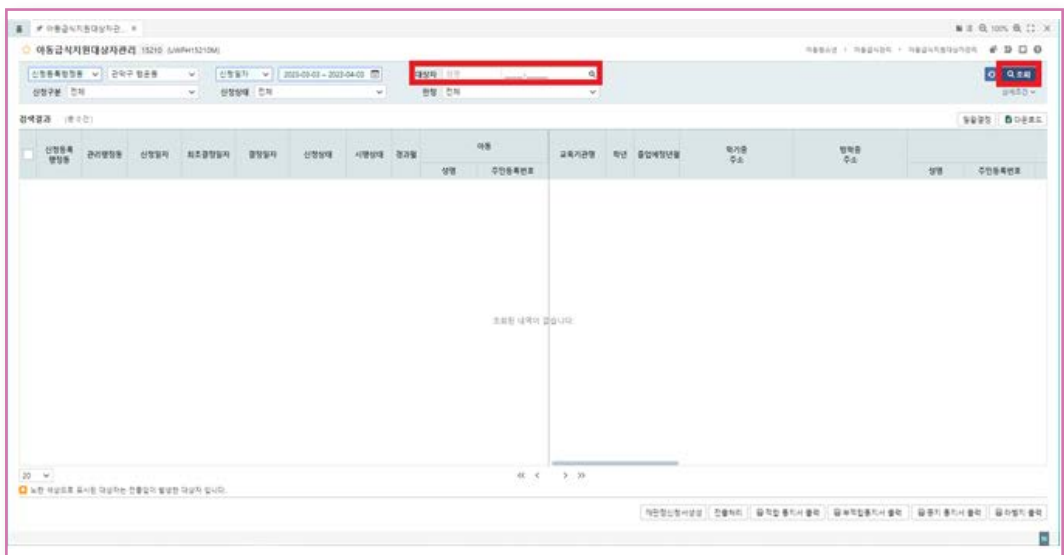
매월 중순 경(아동급식비 교부신청 전)에 전출자 파악하여 해당지역으로 전출통보 공문 발송 후 다음달 급식대상자 명부, 교부신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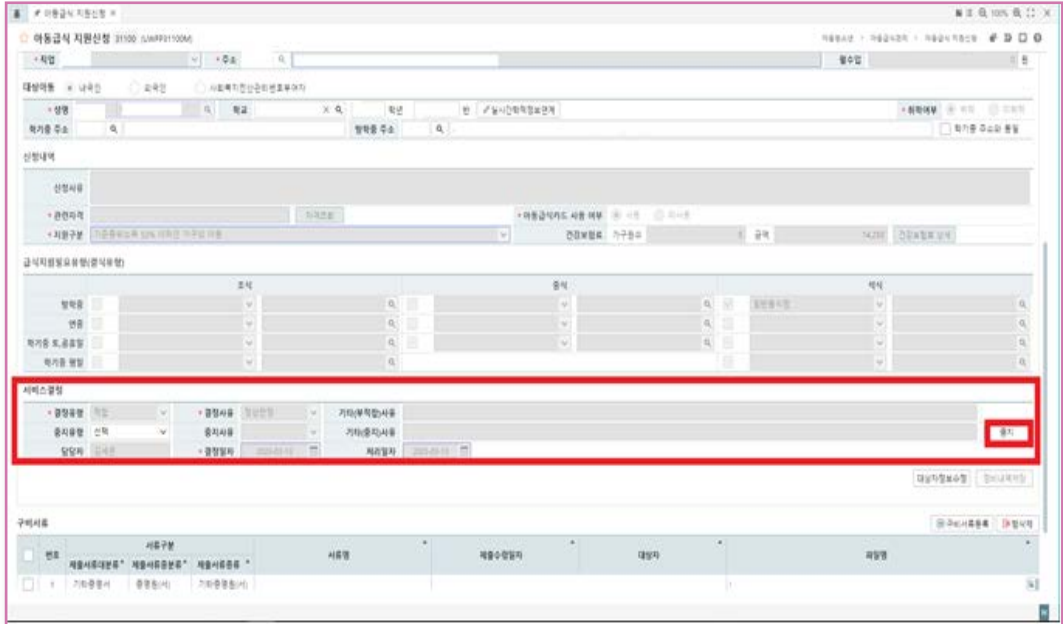


- ▶ 행복e음 → 변동사후 → 복지대상자 전출관리 → 전출일자 설정, 전입자구분, 보장구분-아동급식 선택 → 조회 → 전출 필요 시 해당 건 클릭 후 하단 전출처리
- ※ 전입자구분, 전출상태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므로 다양하게 조회할 것

## 3) 아동급식 중지처리

지원사유 소멸 시에 개인별 통보 후 아래 방법으로 행복e음 중지(해지)처리 입력





- ▶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지원대상자관리 → 대상자 성명이나 주민번호 입력 → 조회 → 해당 건 더블 클릭 → 「서비스결정」 중지

#### 4) 행복e음 아동급식 누락 및 기존 신청여부 확인하여 현행화

-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현황 → 「보장구분별 복지대상자 현황」 아동·청소년, 아동급식 더블클릭 → 엑셀 다운로드하여 확인
- ※ 행복e음 자료 정확하지 않을 경우 많음(지자체 간 전출입 관리 부실, 해지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대상자 파악 모호함 등 철저히 관리하기 어려움)

#### ▶ 행복e음 아동급식 명단 현행화

- ① 당월 급식대상자 엑셀 명단 중 행복e음 명단에 없는 학생 → 행복e음 상에 신규신청
- ② 행복e음 상의 아동프로그램 이용자 중에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에 없는 학생 → 행복e음에서 중지
- ③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 중에 행복e음 상에 없음 → 행복e음에 신규신청(그러나 급식지원은 하지 않음)
- ④ 당월 급식대상자 엑셀 명단에도 없고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에도 없으면 → 행복e음에서 중지

\* 작업 중 타동 학생은 전출 처리



## ▶ 꿈나무카드 시스템 사용법

- 1) 꿈나무 카드 시스템 : 서울시 꿈나무카드 운영시스템(신한카드) 접속  
(<http://dreamtree.shinhancard.com>)하여 작업
- 2) 익월 분 충전금 일괄 충전하기

- ▶ 대상자관리 → [새로운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추가' 클릭 후 하나씩 입력 후 저장] → 대상자관리 → 이름 '가나다' 정렬 후 엑셀다운로드 → 엑셀파일에서 '1일충전금액'과 '16일충전금액' 모두 0 으로 입력 → 엑셀파일에서 '아동식별번호' ~ '학년' 부분을 전체 드래그하여 복사(ctrl + C) → 대상자일괄등록 → 아동식별번호에 커서 두고 붙여넣기(ctrl + V) → 저장
  - ▶ 다시 대상자관리 → 이름 '가나다' 정렬 → 엑셀다운로드 → 엑셀파일에서 익월 비대상자 행을 삭제(혹은 0원 충전) 하고 대상자 각각 '1일충전금액'을 다음달 충전금액으로 정확히 입력, '16일충전금액'은 0 으로 입력 → 엑셀파일에서 '아동식별번호' ~ '학년' 부분을 전체 드래그하여 복사(ctrl + C) → 대상자일괄등록 → 아동식별번호에 커서 두고 붙여넣기(ctrl + V) → 저장
- ※ 삭제처리 하여야 하나 잔액이 남아 삭제하지 못하고 중지처리(중지여부 : Y)만 한 대상자(타 시도 전출자 등)는 익월에 잔액이 0원이므로 익월 도래하면 삭제처리하여 명단에서 삭제 {카드관리 → 정지/해제(대상자삭제)}

### 3) 익월분 충전금 개인별충전 하기

- ▶ 대상자관리 → [새로운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추가' 클릭 후 하나씩 입력 후 저장] → '대상자관리' 클릭 → 모든 대상자 각각의 '1일충전금액' 입력 → 저장

### 4) 오류 충전 수정방법(매월1일충전금액)

- ▶ 부족 충전한 경우(예 : 10만원 충전해야 하나, 6만원 충전한 경우)  
카드관리 → 충전 → 대상자 선택후 4만원 충전 → 카드잔액이 4만원 증가하여 10만원으로 변경
- ▶ 과충전한 경우(예 : 10만원 충전해야 하나, 15만원 충전한 경우)  
아동이 만약 10/1 ~ 10/9 까지 급식비 4만원 이용 가정
  - 10/9 에 카드관리 → 전액회수 등록
  - 10/10 새벽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카드잔액(11만원, 충전금액15만원 - 4만원 이용금액) 전액 회수
  - 10/10 출근하여 '카드관리 → 충전' 에서 6만원 충전
 ※ 10만원 충전예정금액에서 9/1~9/9까지 이용한 4만원을 차감한 6만원 충전
- ▶ 당월 추가 신규자 충전하기  
대상자관리 → 대상자추가 →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평일한도금액, 휴일한도금액, 지원구분, 학교구분, 학년) → 저장 → 카드관리 → 충전 → (검색조건:이름) → 대상자조회 → 해당자 더블클릭 → 내용확인, '충전요청 금액' 입력 → 충전실행 → 확인
- ▶ 충전금 회수  
카드관리 → 충전 → (검색조건:이름) → 대상자조회 → 해당자 더블클릭 → 회수 '회수금액' 입력 → 회수실행 → 확인

▶ 잔액 확인

카드관리 → 충전 탭에서 검색조건(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선택 → 선택한 정보(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입력 → 대상자조회 → 조회된 결과에서 해당자 클릭 → 하단 우측에 '카드잔액' 확인

▶ 거래내역 확인

각종조회 → 거래내역조회 → 구청/주민센터 확인, 거래일자 선택(1 ~ 오늘),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선택 → 대상자조회 → 조회 → 엑셀다운로드

▶ 카드 재발급(분실, 훼손)

카드관리 →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선택, 입력 → 대상자 더블클릭 → 교체 → 교체카드번호 : 입력,  기존카드 잔액자동충전 → 카드교체등록

※ 기존 카드 남아있던 포인트가 교체카드로 이동 됨

※ 기존 카드는 더 이상 이용불가(카드 정지처리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지됨)

▶ 카드정지, 대상자 삭제

카드관리 →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선택, 입력 → 대상자 더블클릭

→ 정지/해제(대상자 삭제) → 대상자삭제, 카드정지

→ 대상자삭제 : 타 시도로 전출 등, 잔액이 없는 경우

→ 카드정지 : 정지사유가 있거나, 잔액이 남은 상태로 타시도 전출로 정지 후 익월에 대상자 삭제 대상일 경우

## 2 청소년증 발급

### ▶ 사업개요

1)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2)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본인

3)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 필요

#### 5) 사용방법

-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교통카드(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6) 교통카드 종류

- 레일플러스 : 기차, 지하철, 택시, 시내·시외 고속버스, 공항버스 등(1544-7788)
- 원패스 :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080-727-2342)
- 캐시비 : 기차, 지하철, 택시, 시내·시외(경기)·고속버스, 공항버스 등(1644-0006)

7)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8) 처리기한 : 2~3주(한국조폐공사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9)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등기요금 본인 선납)
- 10) 유의사항 :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미신청란에 체크

### ▶ 업무처리 세부절차

#### 1) 신청

- 신청권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교통카드 여부 확인

####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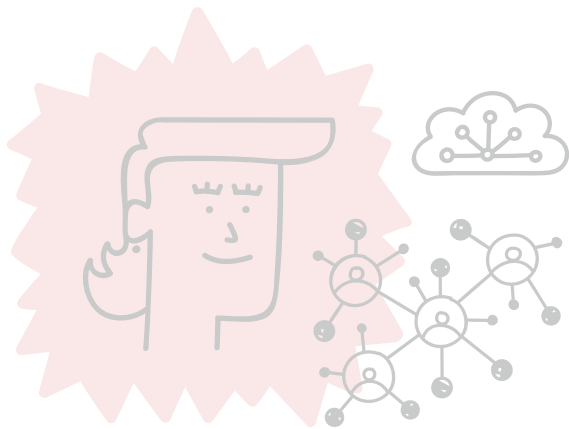
### ▶ 상담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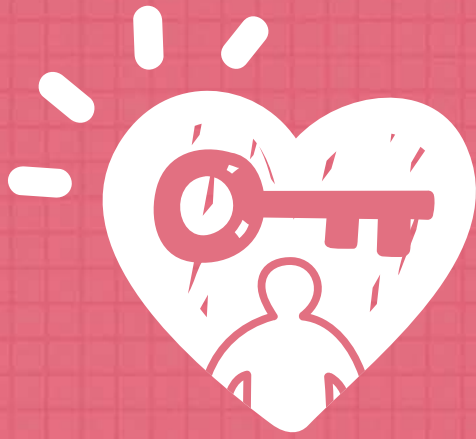
- 교통카드 여부, 유효기간, 처리기간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청소년증관리 → 청소년증발급신청 → 관련 정보 입력 후 저장, 접수





## 15.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15.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1 사례관리란?

### ▶ 개념

하나 이상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기능회복을 돕는 통합적 실천방법으로 단순히 자원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이용자의 힘과 역량을 키워 지역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주요 대상

- 복합적이고 만성적(알코올 문제, 게임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
  - 장애인, 노인, 한부모,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등
- ※ 사례관리가 모든 주민을 위한 만능 서비스는 아님에 유의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로서 사례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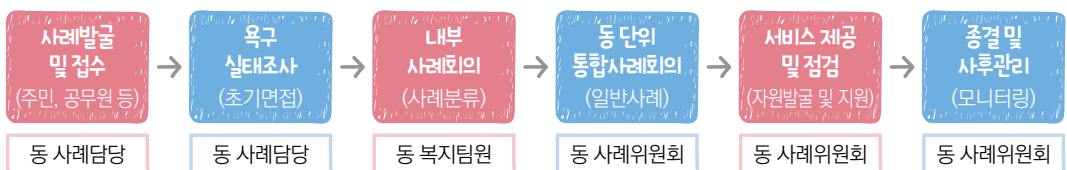
###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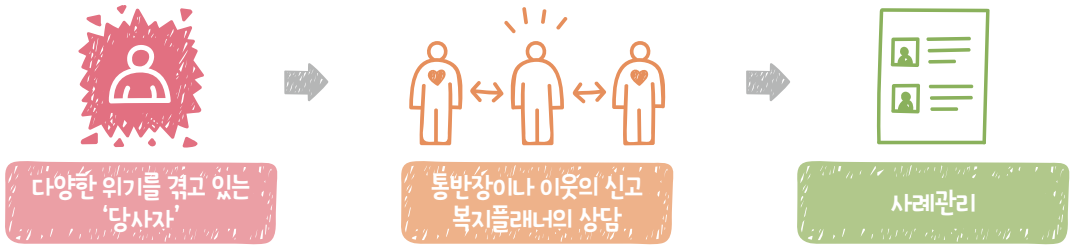
## 3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 ▶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추진 절차



## 1) 사례 발굴

- 위기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당사자를 통·반장이나 주민이 복지플래너에게 신고하거나 복지플래너가 당사자와 상담 중 발굴하여 사례관리가 시작



- 발굴 유형별 실태조사
  - ▷ 내방 주민 : 복지상담전문관 상담 후, 사례대상 여부 판단
  - ▷ 방문 복지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등 방문인력 상담
  - ▷ 민간 인력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통장, 민간기관 등 민간인력 활용 발굴 시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 상담
  - ▷ 유관 기관 :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 돌봄위기가구 의뢰 시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 상담 진행 후 사례회의 진행
  - ▷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 복지사각지대, 사회적으로립가구 조사 등

## 2) 초기상담 및 욕구·위기도 조사

- 복지플래너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와 행복e음 정보를 통해 질문 목록을 준비
- 방문 시 준비된 질문을 통해 어떤 위기인지, 주변 관계는 어떠한지, 사례관리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
- 사례관리가 필요한 당사자로 판단되면 초기 상담지를 통해 사례관리로 의뢰하고, 복지플래너가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다.



- 욕구조사란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가구로 구분 선정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뜻함.



- 욕구조사 시 대상자가 최우선으로 충족해야 할 욕구가 무엇인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위기도 조사는 위기도 영역별 총점 및 전체 총점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사례관리 개입목표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위기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욕구조사와 종결심사 단계에서 실시하며, 대상자의 위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 사례관리 진행 중에도 수시 등록 가능

### ➡ 위기도 조사표 작성요령

- ▷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욕구사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하고 기입한다  
(대상자가 표현한 욕구와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대상자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떤 욕구를 우선시 할 것인지 대상자와 합의해야 함)
- ▷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한다
- ▷ 각 보기항목에서 중복표기 될 경우, 보다 심각한 점수를 선택한다
- ▷ 정보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기입한다

### 3) 사례 회의

- 복지플래너가 확인한 상황에 근거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미선정 가구로 구분한다.
- 제공할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팀장 조언과 동료 자문을 받는다.
-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례회의록에 기록한다.
- 사례회의(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는 사례관리 절차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진행 가능함.

###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 운영체계

#### ➡ ① 내부사례회의

- 내부사례회의는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종결 모니터링 등을 위한 내부 회의이다.
-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로 이관한다.
- 내부사례회의의 구성은 복지팀장 및 복지팀으로 구성되며 주 1회 이상 개최를 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사례정보를 공유하여 욕구별로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가구, 미선정 가구 구분을 하고, 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제공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종결에 대해 주로 논의를 한다.

#### ➡ ② 동 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회의는 동 주민센터와 민간복지기관 등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욕구와 자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입 계획을 세우는 회의이다.
- 동 통합사례회의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및 지역 내 관련기관(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개최를 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① 신규 사례 당사자 욕구 등 정보를 공유하고, ② 필요한 자원에 대한 논의 및 연계를 하고, ③ 사례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 사례기관을 선정하고, ④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며, ⑤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진행 사항을 서로 공유 및 점검하고, ⑥ 위기사례 또는 사례관리 당사자 상담 거부 시 기관과의 공동 방문 등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 ③ 솔루션 회의

-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사례관리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필요 시 수시로 진행)

※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솔루션위원회) 비교

구분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정기회의	자문회의(솔루션 위원회)
주기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수시
대상	복지팀장, 복지팀 전원, 방문간호사	대상가구 특성에 따른 공공·민간 등 유관 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의 전문가(교수 또는 복지 관장), 조정자, 사례관리자, 동 담당, 기관 사회복지사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구분),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종결심사</li> <li>• 진행 중인 사례관리가구의 변경 사안 논의 등 복지정보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사례기관 선정 및 조정</li> <li>• 사례개입을 위한 역할 분담</li> <li>•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li> <li>• 동료 간 슈퍼비전 기관 간 자원 공유</li> <li>• 기타 행정적 협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li> <li>• 슈퍼비전을 통한 실무자 전문성 증진</li> </ul>

#### 4)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복지플래너는 사례회의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내용은 당사자와 합의하여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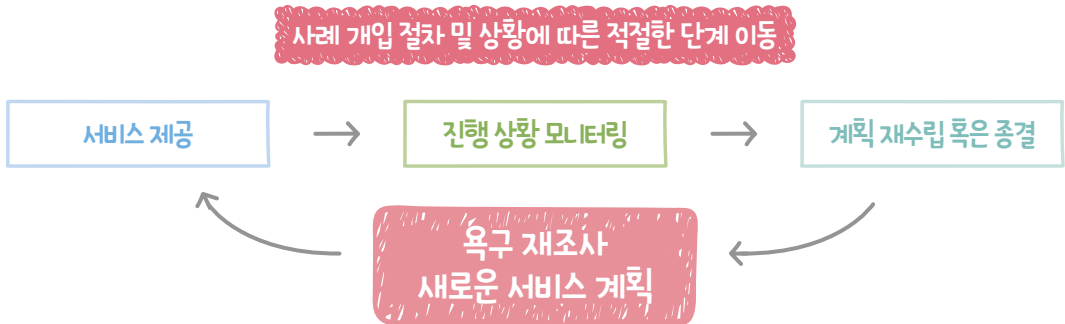


#### 5) 서비스제공 및 점검(모니터링)

-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당사자의 변화를 확인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목표 수정 또는 서비스 계획을 변경하거나 종결 처리를 하게 된다.(필요한 경우 욕구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사례회의를 통해 기 수립된 목표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변경 가능함)

## 6) 종결과 사후관리

- 복지플래너의 계획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 관리는 마무리된다. 또는 당사자의 전출, 사망, 거절,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종결되기도 한다.



- 종결 후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첫 번째 상담 : 3개월 이내, 두 번째 상담 : 9개월 이내)

## 4 동 사례관리 사업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 ▶ 지원목적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지원으로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증대

### ▶ 동 사례관리 사업비 주요 지원 내역

항목	구성 내역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입원시 간병비(무연고1인가구 등) 등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 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지원비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예시) 응급이송을 위한 구급차 경비, 주거환경개선비용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b>지원 금액 : 가구당 50만원</b>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한 동장의 사전 결재 후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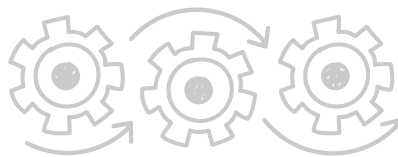


## ▶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 사항

- 긴급지원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긴급지원 사업비로 우선 지원
-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유의(차액분 지원 가능)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 공무원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외부 교육훈련 시 교육여비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면허 유지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관내·외 출장여비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 안전지킴이를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요금
- 찾아가는 복지차량 등 업무용 차량 운영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
-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 목적이 아닌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



**활용팁1**

**사례관리에 도움 되는 관점과 실천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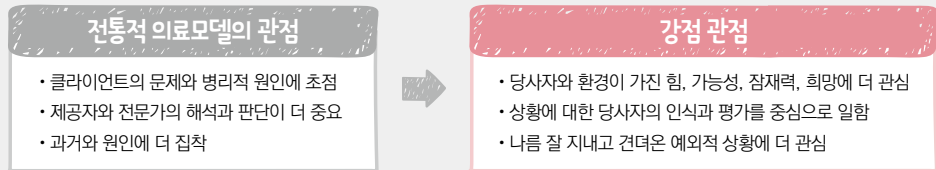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어울려 일하기'라고도 정의한다. 이는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관점이나 원칙이 사례관리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례관리에 도움이 되는 2가지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① **이용자 중심주의(당사자 주의)**

이용자 중심주의(당사자 주의)는 욕구와 어려움 해결의 주체를 이용자로 보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대상자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을 강조하는 실천관점으로 사례관리자가 이용자의 맥락을 존중하며 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용자 중심 실천을 위한 관점의 전환, 교육 훈련, 자문과 지원 등이 공공영역에서 더 필요하다. 당사자 주의는 사례관리 당사자의 힘과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②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주민의 문제와 병리적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민과 환경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강점관점은 전통적 의료모델과는 달리, 사례관리자를 포함한 지역 자원들이 서비스 이용자와 그들의 환경의 역량, 재능, 가능성, 비전, 가치, 희망 등을 살피고 이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점관점은 당사자는 물론 자원의 힘과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활용팁2**

**3.2.1 법칙을 활용하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시 위기사유가 3개 이상은 구 통합사례관리로, 2개는 동 사례관리로, 1개는 동 서비스연계로 연계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제외)

성공적 사례관리를 위한 TIP

**통합사례관리 기술체득을 위한 훈련**

	경제적위기	질병	주거	교육	돌봄	기타
통합사례관리	☑	☑	☑		☑	
동사례관리	☑	☑				
동서비스연계			☑			

- 3,2,1 법칙**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사정이 끝난 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판단

## ▶ 사례관리 주요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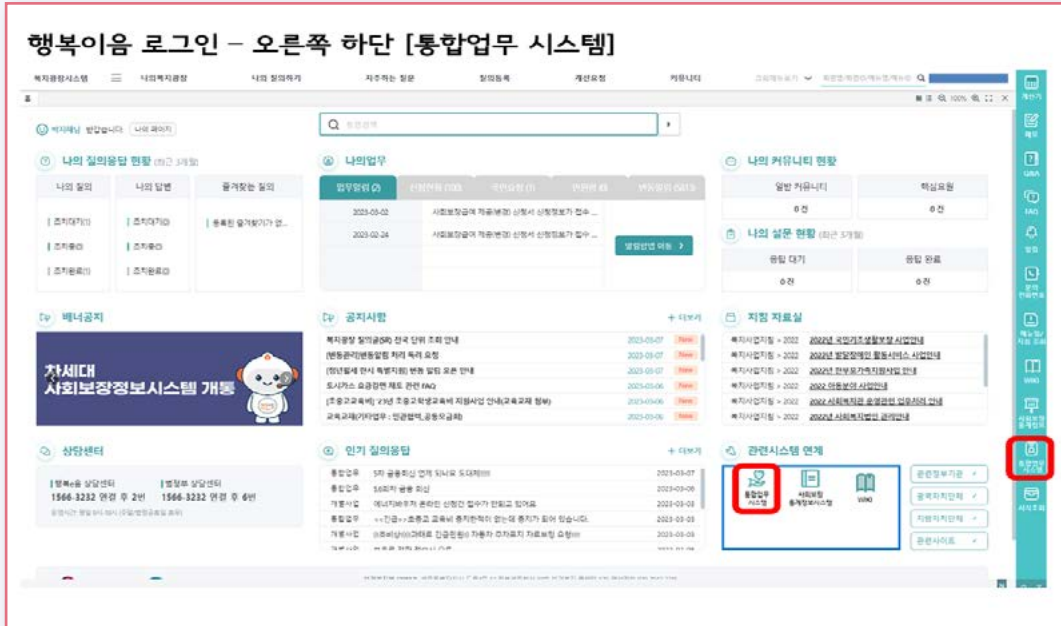


<b>욕구</b>	사회적 개입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족함의 상태. 최소한의 기능적 생활을 위한 필요의 수준과 현재 상황의 차이(간극)를 의미하기도 함.
<b>자원</b>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유무형의 수단. 기능적 상용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b>동 통합사례관리</b>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나설 수 있도록 지원
<b>슈퍼비전</b>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대상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교육지시, 평가 등
<b>주사례관리기관</b>	대상자를 사례관리로 접수하여 전담하는 기관으로,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의 사례관리 전 과정을 수행
<b>동주민센터 복지팀</b>	동 단위 사례관리기관
<b>복지슈퍼바이저</b>	복지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에 대한 업무지도와 역량을 강화하는 상급자
<b>통합사례관리사</b>	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담 전문 인력
<b>학대전담경찰관, APO (Anti-Abuse Police Officer)</b>	가정폭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연계,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지원 등 학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
<b>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b>	가계부채로 고통받거나 가정경제 진단이 필요한 저소득층, 금융소외계층에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
<b>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b>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 및 실질적인 법률구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법을 정보 및 서비스 원스톱 제공, 복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기관
<b>서울복지교육센터</b>	사회복지업무 수행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 관련 연구보고서, 칼럼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공유하는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
<b>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b>	2022년 10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된 센터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도출 IoT 및 우동단 등을 활용한 현장대응체계 지원, 고립가구 지원 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 개발 등 사회적고립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
<b>노인보호전문기관</b>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노인학대 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b>아동보호전문기관</b>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지원, 상담치료사업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b>정신건강복지센터</b>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 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b>치매안심센터</b>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공공후견인사업 등 치매와 관련된 포괄적인 건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b>드림스타트</b>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b>법률동탁터</b>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사례관리

▶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매뉴얼(마포구 희망복지지원단 제작)



▶ 행복이음 로그인 - 오른쪽 하단 [통합업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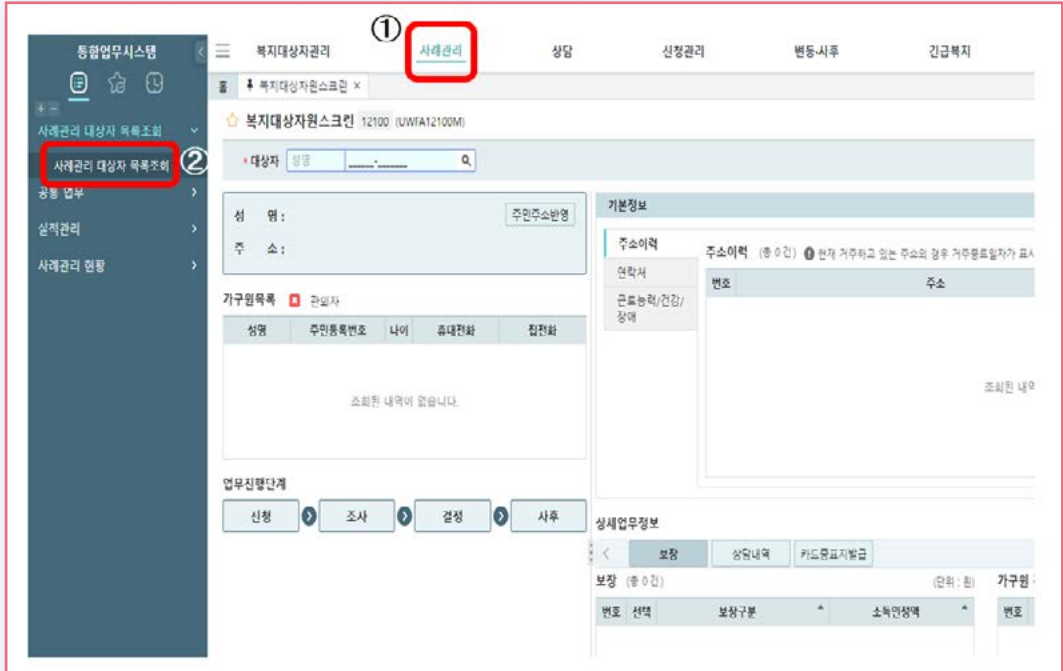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기본정보 조회(최근 상담, 최근사례, 서비스이력확인, 초기상담 시 참고) → ② 요청접수 선택 - 가구구성버튼 활성화-가구원 정보 입력 → ③ 상담내역 기재-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입력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④ 가구유형 - 해당 가구유형에 맞게 선택 → ⑤ 주거형태-지하 나 반지하일 경우 기타 선택 후 작성 → ⑥ 영역별 필요지원 - 해당 영역에 맞게 선택 후 ★스크리닝 클릭 → ⑦ 통합 사례관리 의뢰 - 일반사례 : 동사례관리대상자 / 고난도사례 : 구사례관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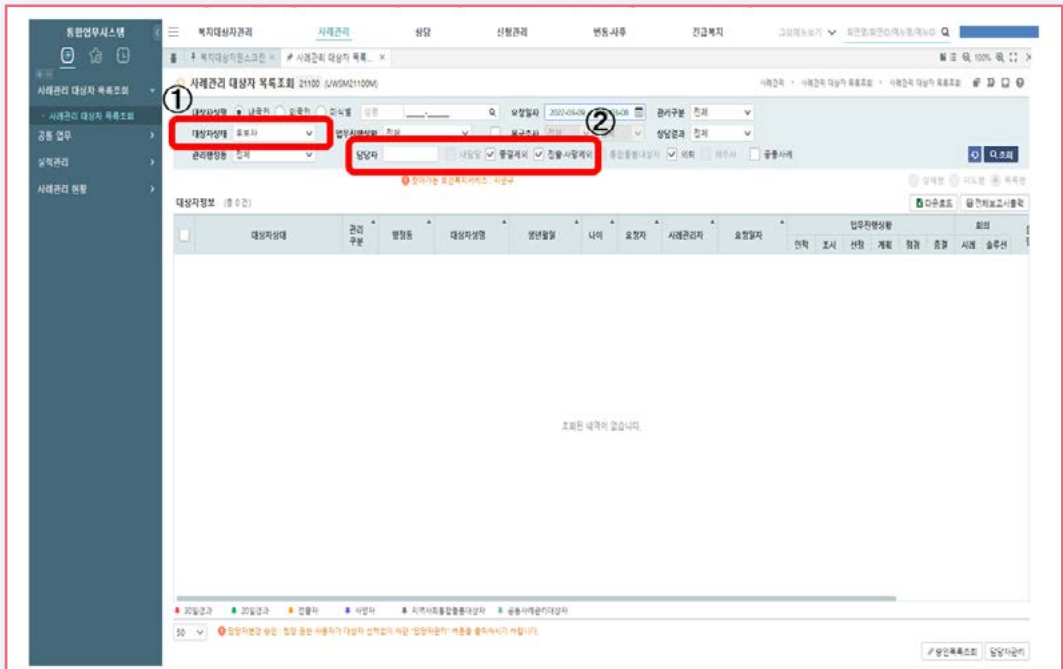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 스크리닝 → ① 서비스연계-해당 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입 - 연계자원 선택 - 종합판정결과가 서비스연계로 선택됨 → ② 통합사례관리 - 연계자원을 '필요하나 연계 자원모름'으로 선택 시 종합판정결과가 통합사례관리로 선택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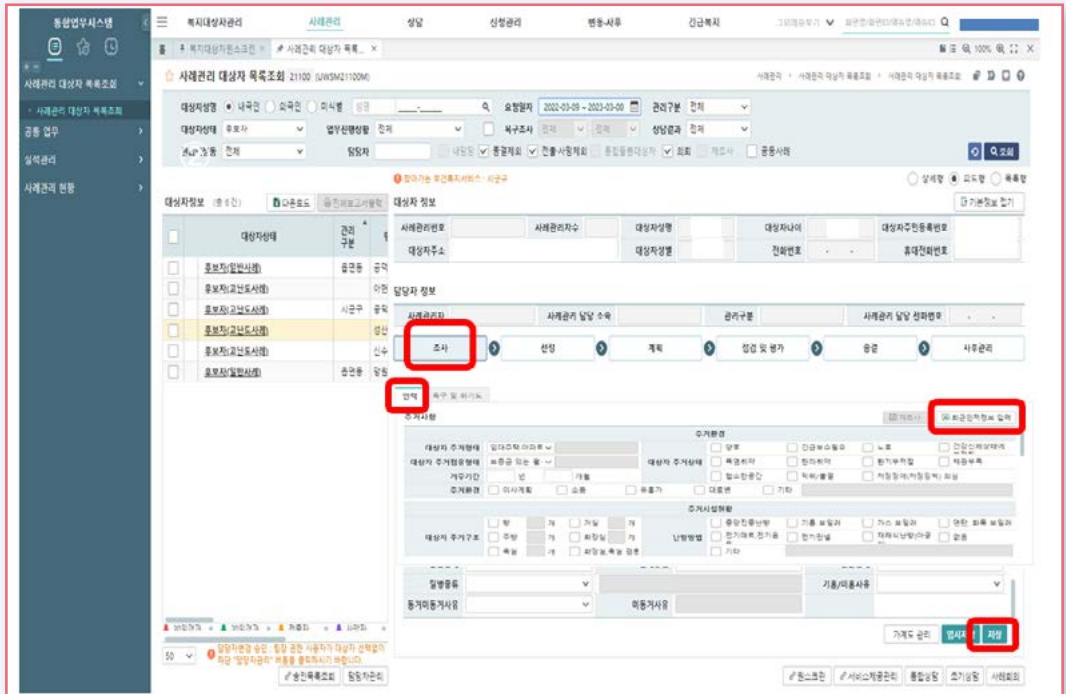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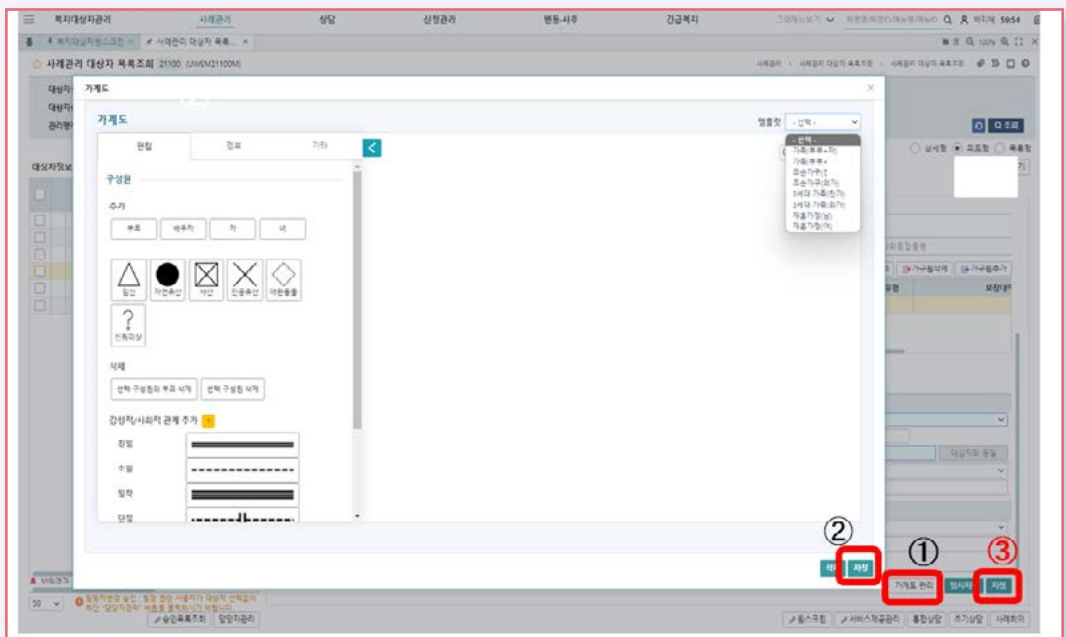
▶ 상단 메뉴 중 [사례관리] 선택 -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 조회]



▶ ① 사례관리후보자일 경우 : 대상자 상태 - 후보자 조회 → ② 사례관리대상자일 경우 : 대상자 상태 - 전체 / 담당자 - 내담당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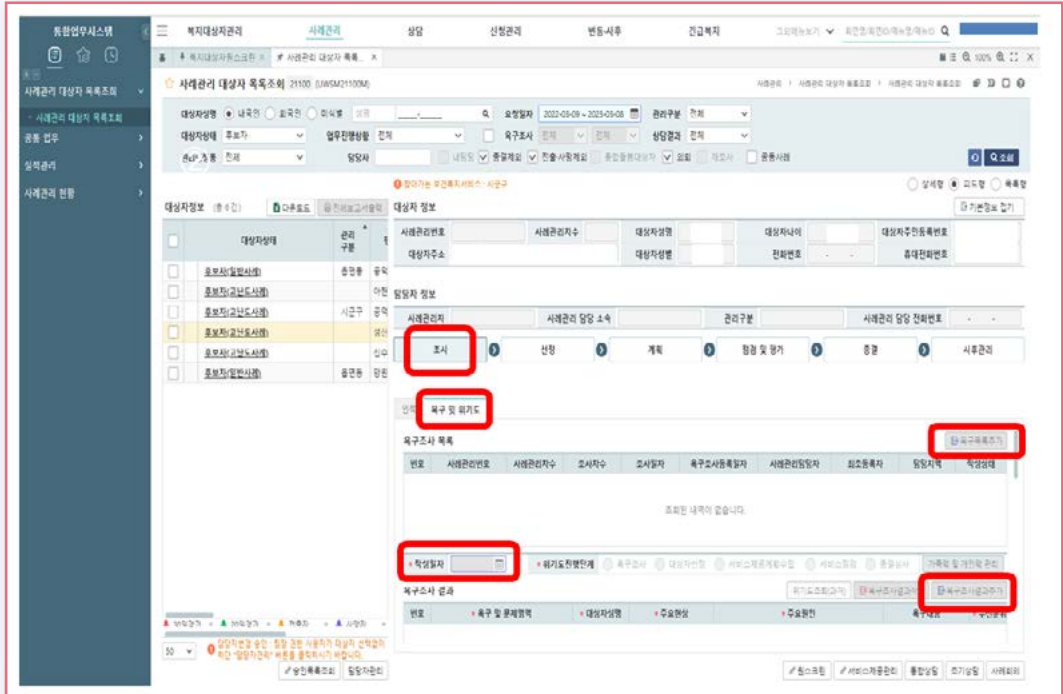
▶ 해당 대상자 더블 클릭 - 조사 - 인적 - '최근인적정보 입력' 클릭 - 인적 사항 중 공란 입력 -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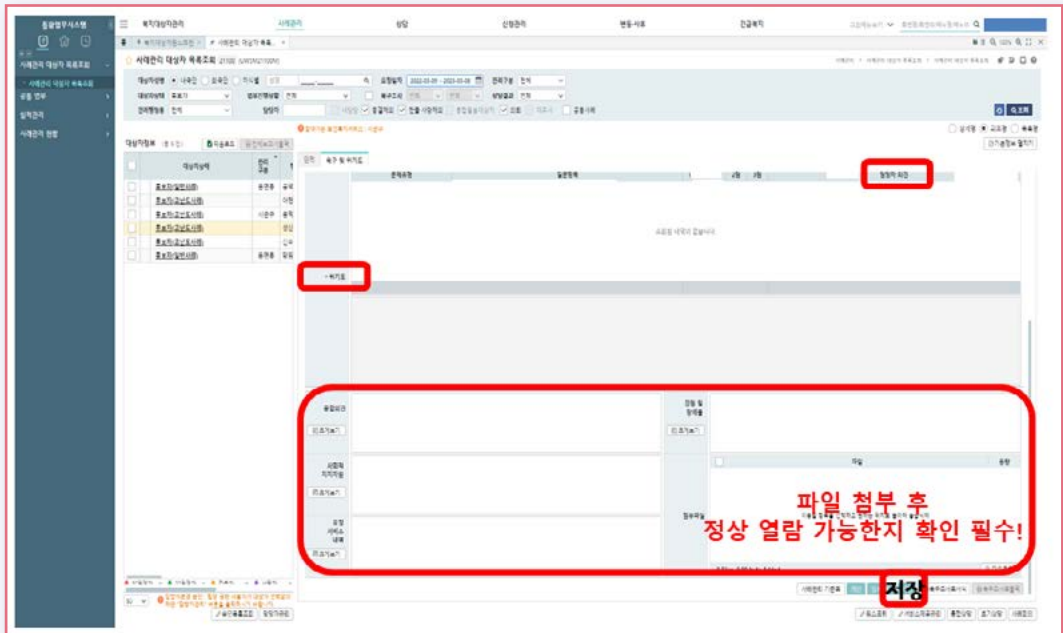
▶ 하단의 ① '가계도 관리'(필수) → ② 가계도 그리기-가계도 저장 → ③ 인적사항 저장 한번 더!(필수)  
 ※ 가계도는 당사자 기준 최소 2세대 이상 표기 / ※ 당사자 및 동거가족 표기 / ※ 사회적 관계 추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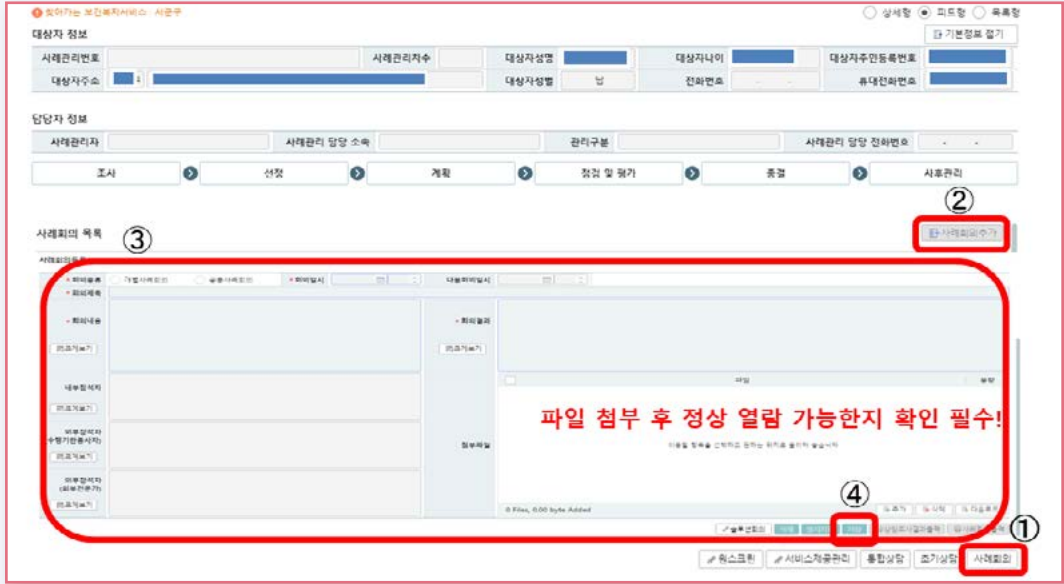


▶ 조사 - 위구 및 위기도 - '담당자추가' 클릭 - 작성일자 및 위구조사 결과 추가(위구수 만큼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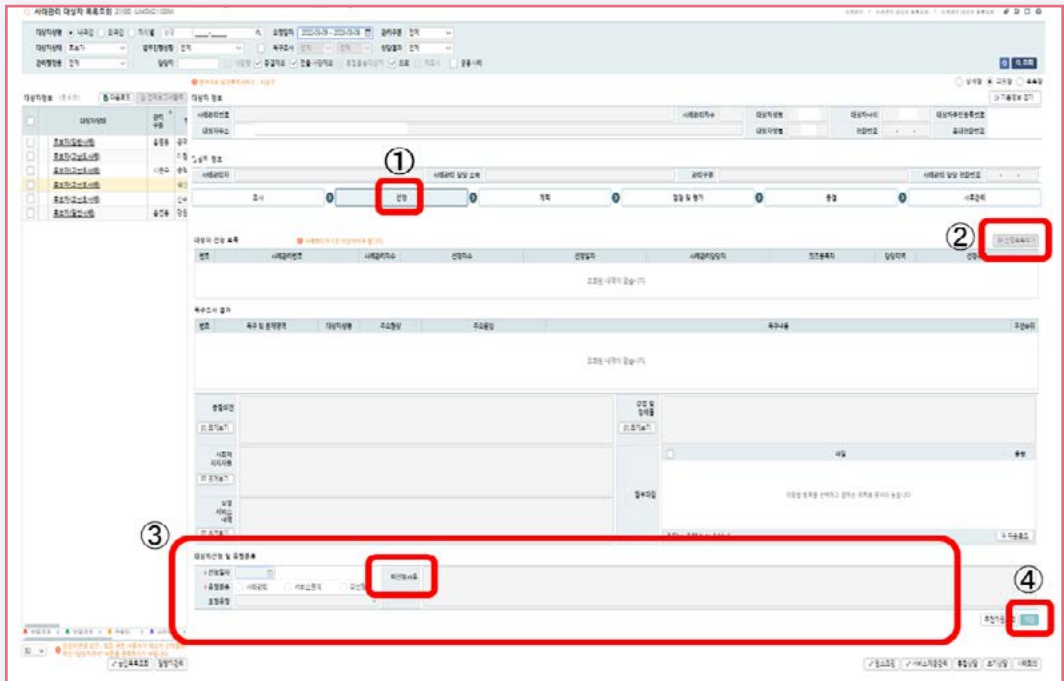
▶ 위기도에 따른 담당자 의견 작성 - 종합의견(필수), 강점 및 장애물, 사회적 지지자원, 요청서비스 내역(필수) 작성 - 첨부파일 : 위구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필수 - 저장





▶ 오른쪽 하단 → ① ‘사례회의’ → ② 사례회의 추가 → ③ 내용 작성 후 → ④ 저장

- ※ 회의종류, 일시, 제목, 회의내용, 회의결과, 내 / 외부 참석자 필수 입력
- ※ 첨부파일 회의록 첨부(회의록에는 반드시 해당 대상자 관련 내용만 있어야 함)



▶ ① 선정 → ② ‘선정목록추가’ → 하단의 ③ ‘대상자 선정 및 유형분류’ 내용 입력 → ④ 저장

- ※ 미선정 시 미선정 사유 입력

대상자 정보

사례관리번호: [ ] 사례관리자수: 1 대상자성명: [ ] 대상지나이: [ ] 대상자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주소: [ ] 대상자성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담당자 정보

사례관리자: [ ] 사례관리 담당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지동정육 주민생활복지과 관리구분: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 전화번호: 02- [ ]

조사 > 선정 > **계획**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장단기성과목표 목록**

장기목표: [ ] 단기목표: [ ]

**장기목표 밑에 단기목표가 입력될 것**

구분: [ ] 목표내용: [ ] 우선순위: [ ]

서비스제공계획 목록

번호	사례관리번호	사례관리자수	계획자수	계획수립일자	계획등록일자	사례관리담당자	최종등록자	작성상태	담당지역	승인상태
1	[ ]	1	1	2022-11-25	2022-12-08	[ ]	[ ]	작성	[ ]	승인

**계획확정 후 결재권자가 승인을 해주어 승인상태가 '승인대기'에서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점검 및 평가 단계 진행 가능**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 → ① 계획추가 → 장단기성과목표 목록 작성

대상자 정보

사례관리번호: [ ] 사례관리자수: [ ] 대상자성명: [ ] 대상지나이: [ ] 대상자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주소: [ ] 대상자성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담당자 정보

사례관리자: [ ] 사례관리 담당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지동정육 주민생활복지과 관리구분: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 전화번호: 02- [ ]

조사 > 선정 > **계획**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① 수행일자는 반드시 선정일자 이후!**

수행일자: 2022-11-25

서비스제공계획

번호	서비스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종류	대상자성명	승인순위	시행일자	종료일자	서비스종류
1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가족상담 상담 및 향상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1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2	가정방문	환경	사예관리사정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2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3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보육 및 교육 향상 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3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4	가정방문	환경	가족생활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4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5	가정방문	환경	가족생활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5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6	가정방문	환경	가족생활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6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7	가정방문	환경	가족생활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7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8	가정방문	환경	가족생활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8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9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보육 및 교육 향상 개선	서비스제공	사예관리사정(가) (가) (가)	9	2022-11-25	2022-09-31	서비스제공

**② 서비스 추가**

서비스 추가: [ ]

**③ 서비스구분: 가정방문**

서비스구분: [ ] 서비스명: [ ] 서비스내용: [ ] 서비스종류: [ ]

**④ 저장 - 계획확정**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 → ① 수행일자 → ② 서비스 추가 → ③ 욕구 별 개입 예정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별 상세내용 작성 → ④ 저장 - 계획확정



사례관리번호, 사례관리자수, 대상자성명, 대상자나이, 대상자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소, 대상자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담당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지동합곡주민생활복지과, 관리구분,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 전화번호

조사, 선정, 계획, **점검 및 평가**, 종료, 사후관리

서비스점검 목록

번호	사례관리번호	사례관리자수	점검자수	점검일자	사례관리담당자	최종등록자	점검일자	작성상태
1		1	21	2023-02-24				저장
2		1	20	2023-02-27				저장
3		1	18	2023-02-27				저장

① **점검추가**

②

**서비스점검 결과목록**

대상자	제공서비스명	이행여부	서비스실행상태
생활용품 지원(마포북지재단)			서비스완료
합실 및 일상업무 지원(마포구청 복지합실과)			서비스신청
한국아고육(마포구아동보호가족지원센터)		이행중	서비스완료
사례관리사업비(기화사업비)(마포구청 복지합실과)		이행중	서비스완료
정서지원사업(마포구청 복지합실과)		이행중	서비스신청

**점검 진행한 서비스 목록 체크**

장단기성과목표 목록

구분	구분	구분
장기목표		
단기목표		
단기목표		

제공계획 및 결과 내역

육구 및 문제영역	제공서비스명	대상자	개입시기	시작일자	종료일자	제공횟수	제공주체명	서비스실행상태
경제	기초생활급여	생활용품 지원		1주일이나	2023-02-06	2023-02-06	마포북지재단	서비스완료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점검 및 평가 → ① 점검추가 → ② 서비스점검 결과목록 체크

대상자 정보, 담당자 정보, 조사, 선정, 계획, **점검 및 평가**, 종료, 사후관리

서비스점검 결과 등록

대상자	제공서비스명	점검방법	이행여부	현황내용	현황사유	서비스실행상태
생활용품 지원(마포북지재단)		전화	이행됨			서비스완료
합실 및 일상업무 지원(마포구청 복지합실과)		전화	이행됨			서비스신청됨
사례관리사업비(기화사업비)(마포구청 복지합실과)		전화	이행됨			서비스완료

①

**서비스 점검 주기는 격주 1회 이상 필수!**

서비스 점검방법 횟수

번호	일차	내역	방문	시도명	제공서비스명	제공일자	제공유형
22	0	0	28	0	한국아고육	2023-11-29	2023-12-01
					사례관리사업비(기화사업비)	2023-11-29	2023-12-01

②

**서비스평가**

점검일자: 2023-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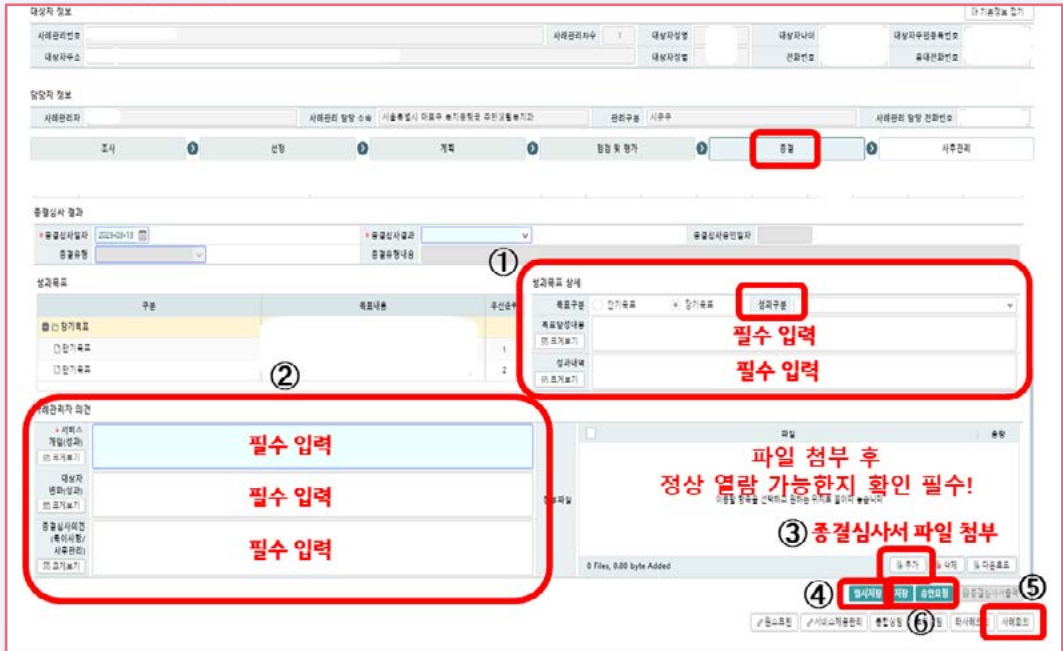
대상자 실태 및 변화

③

**상담 내용은 '통합상담'에 한번 더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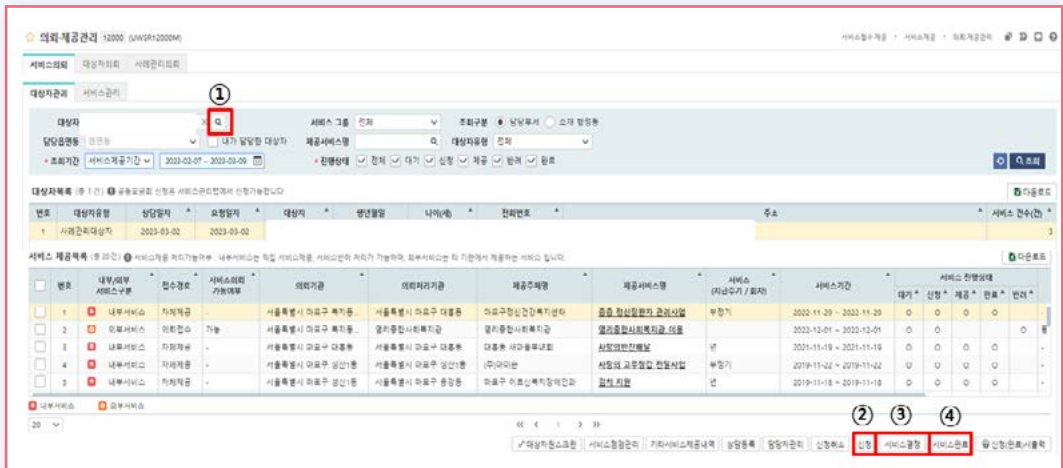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① 점검방법 및 이행여부 선택 → ② 서비스 평가 작성('대상자 실태 및 변화'에 상담일지 입력) → ③ 저장





-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종결 → ① 성과목표 상세(목표 별 상세 내용) → ② 사례관리자 의견 입력 → ③ 종결심사서 첨부파일 → ④ 임시저장 → 작성한 종결심사서로 종결 ⑤ 사례회의 진행(사례회의록 입력) → ⑥ 저장 및 승인요청(승인요청 전 조사 ~ 종결까지 저장 내용 점검 필수!(승인요청 및 승인 이후에는 수정 절대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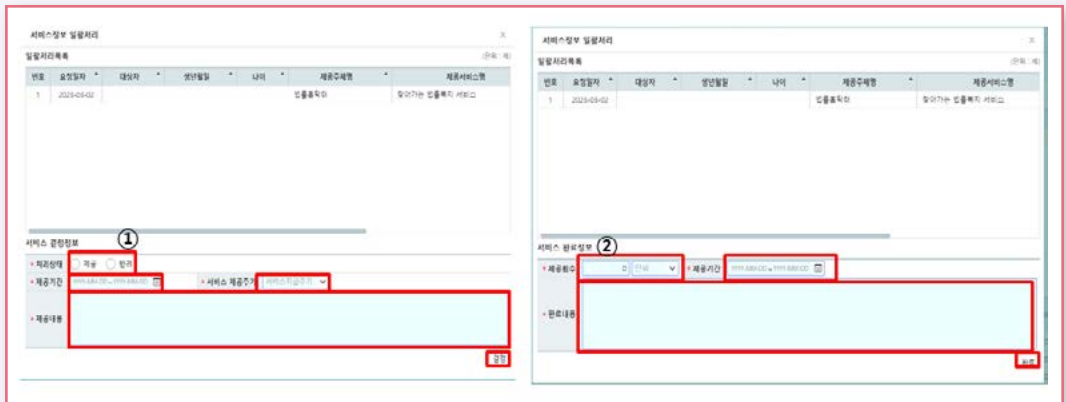
## ▶ 동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 서비스연계



- ▶ **[메뉴위치]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① 대상자 조회 → ② 서비스 신청(연계할 서비스를 입력 시 서비스진행상태 '신청'에 '○'가 표시됨) → ③ 서비스 결정(연계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정되거나 반려된 경우 선택) → ④ 서비스 완료(해당 서비스 완료 시 선택)



▶ [메뉴위치]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신청 → ① 서비스추가(연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 ② 서비스 기간, 신청내용 입력 후 → 신청 클릭



▶ [메뉴위치]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결정 → ① 제출/반려 여부 선택, 서비스 제공기간, 제공주기, 제공내용 입력 후 결정 클릭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완료 → ② 서비스 제공횟수, 제공기간, 완료내용 입력 후 완료 클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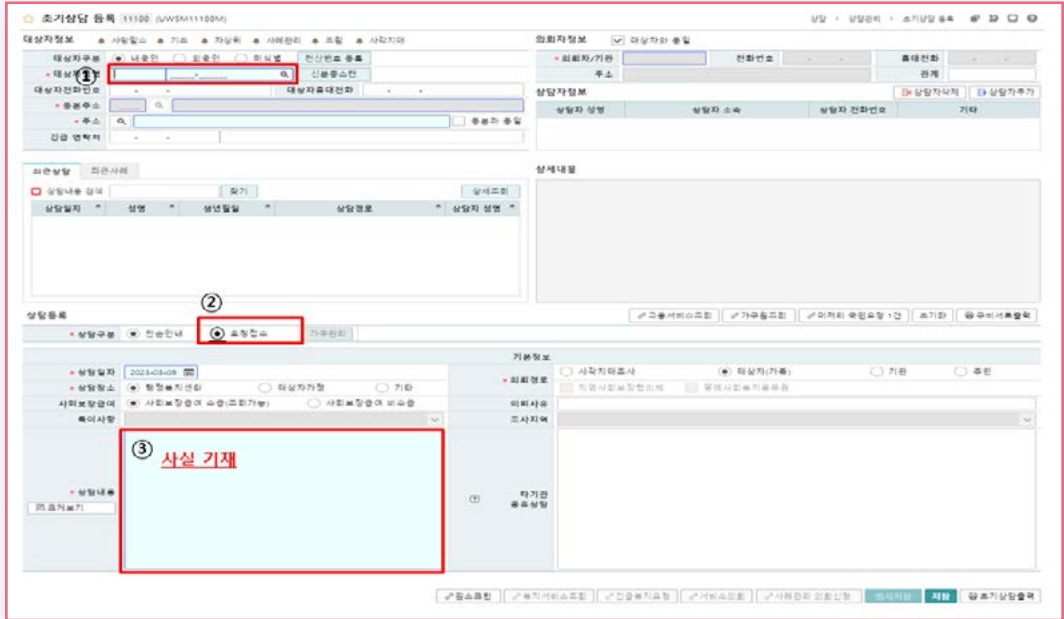
시퀀스관리

- ▶ [메뉴위치] 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자목록조회 → 사후관리
  - ※ 모니터링상담 내용이 표시되는 것으로 해당 탭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님
  - '상담관리' - '모니터상담 등록' 에서 대상지 조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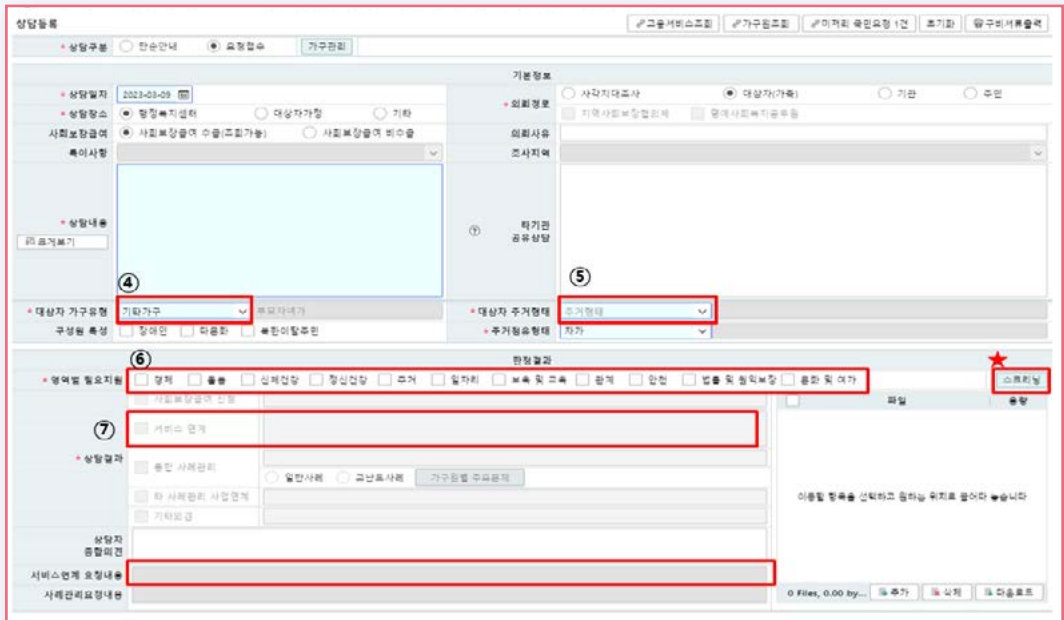
## ▶ 차세대 행복이음 자원 서비스연계 시스템 매뉴얼(일회성 자원 연계를 예시로 작성)

- ▶ 행복이음 로그인-오른쪽 하단 [통합업무 시스템]





-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기본정보 조회(최근상담, 최근사례, 서비스이력확인, 초기상담 시 참고) → ② 요청접수 선택(가구구성버튼 활성화 - 가구원 정보 입력) → ③ 상담내역 기재(가구 생활, 서비스 연계 내용 등 기재)



-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④ 가구유형(해당 가구유형에 맞게 선택) → ⑤ 주거형태(주거 유형 선택) → ⑥ 영역별 필요지원(해당 영역에 맞게 선택 후) → ★ 스크리닝 클릭 → ⑦ 서비스연계 의뢰(스크리닝 통한 서비스연계내역 등록 후) → 하단의 서비스 연계 요청 내용 기재

조사/스크리닝

영역	확인사항	연계자원
1. 경제	생계비 (식비, 의료비, 주거비, 학비, 공과금 등) 지출에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내용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활용하고 있는 지원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연계
	채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내용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채우규모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활용하고 있는 자원	<input type="checkbox"/> 필요하나 연계지원모름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신청 <input type="checkbox"/>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연계
	급성, 만성, 중증질환 및 상해 등으로 치료, 수술, 약물복용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지원요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활용하고 있는 자원	<input type="checkbox"/> 필요하나 연계지원모름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건강관리 외 보건소 사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사례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비스연계      경제 - 기타 서비스 연계, 신체적 건강 - 기타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필요하나 연계지원모름
<b>종합판정</b>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외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기타의견)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 스크리닝 → ① 서비스연계(해당 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입) → 연계자원 선택 → 종합판정결과가 서비스연계로 선택됨  
 ※ 연계자원을 '필요하나 연계지원모름'으로 선택 시 종합판정결과가 통합사례관리로 선택됨에 유의할 것

복지대상자관리    상담    신청관리    조사·검정    급여    변동·사후    그외(해당부기)    회원탈퇴/관리/회원탈퇴/비밀번호    100%

복지대상자관리 12000 (LWSR12000M)

서비스연계    대상자관리    사례관리    의료기관연계

**대상자관리**    서비스관리

대상자: [선택]    서비스그룹: 전체    조회구분:  담당부서     소재 행정동

담당직원: [선택]     내가 담당할 대상자    제공서비스명:    대상자유형: 전체

\*조회기간:  ~     \*신청상태:  전체     대기     신청     제공     반제     종료

대상자목록 (총 1건)     공통요청의 신청을 서비스관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번호	대상자유형	신청일자	요청일자	대상자	생년월일	나이(세)	전화번호	주소	서비스 권속(개)
1	초기상담대상자	2023-04-03	2023-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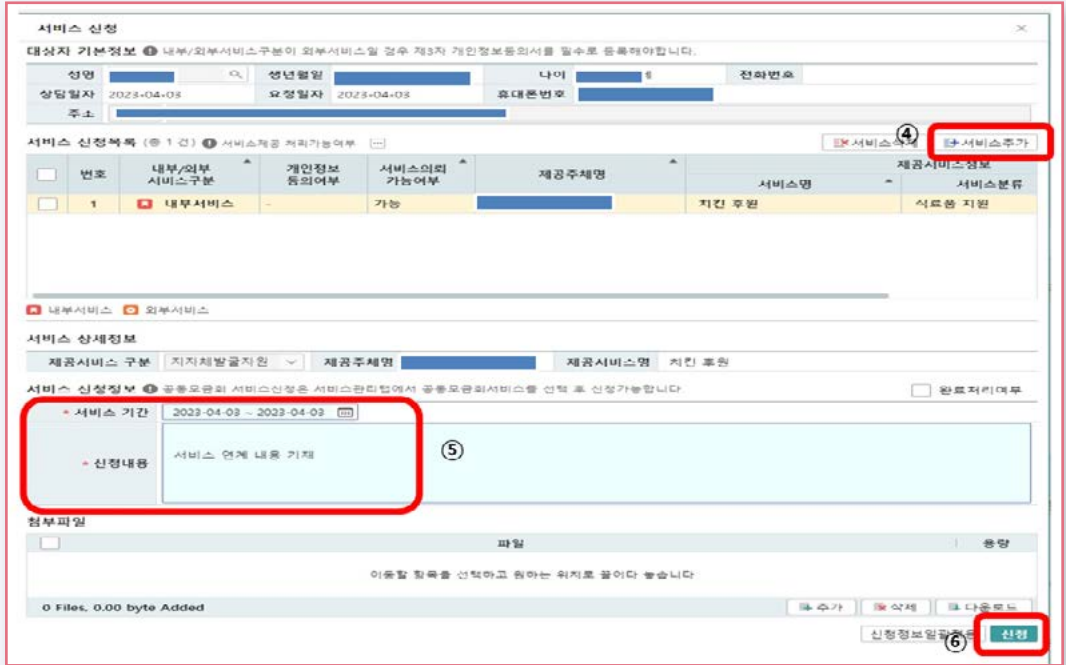
②

서비스 제공목록 (총 2건)     서비스제공 처리가능여부: 내부서비스는 직접 서비스제공 서비스연계 처리가 가능하며, 외부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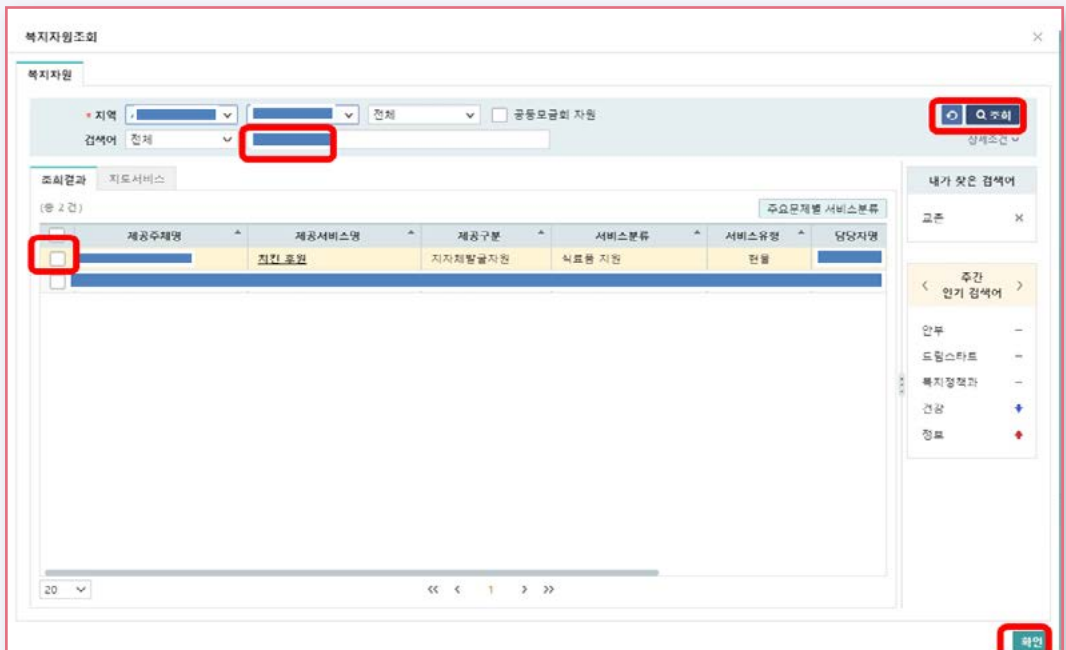
번호	내부/외부 서비스구분	접수번호	서비스연계 가능여부	의뢰기관	의뢰제언기관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서비스 (리전주기 / 일자)	서비스기간
1	내부서비스		차제제공						2023-04-03 ~ 2023-04-03

③ 신청    서비스신청    서비스완료    신청/취소/비밀번호

▶ [메뉴위치]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① 대상자 관리에서 초기상담 대상자 불러오기 → ② 조회된 대상자 선택 → ③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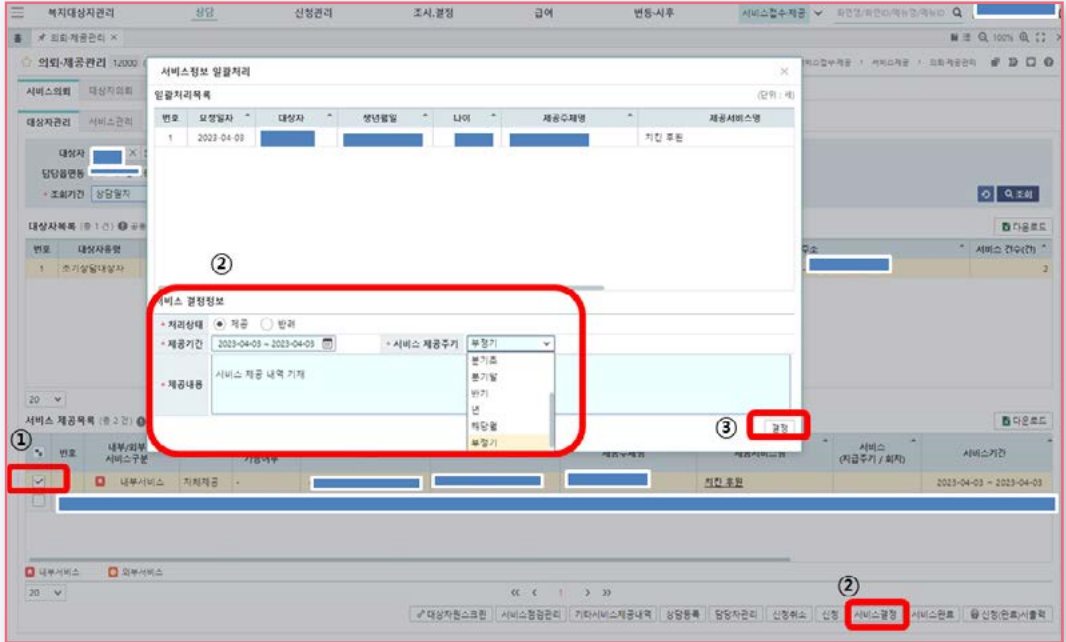
▶ [메뉴위치]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④ 서비스 추가 선택(나오는 팝업 창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다음 그림에서 별도 설명>) → ⑤ 서비스 기간과 신청 내용 등록 후 → ⑥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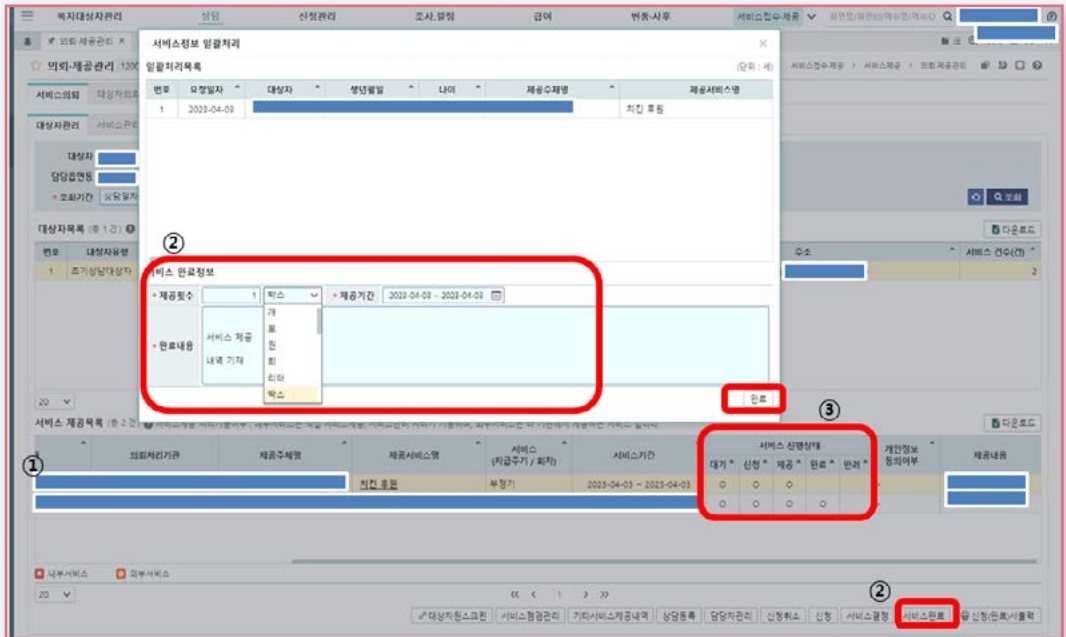
▶ [메뉴위치]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복지자원 키워드 검색어 조회 후 나오는 자원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하단의 확인을 클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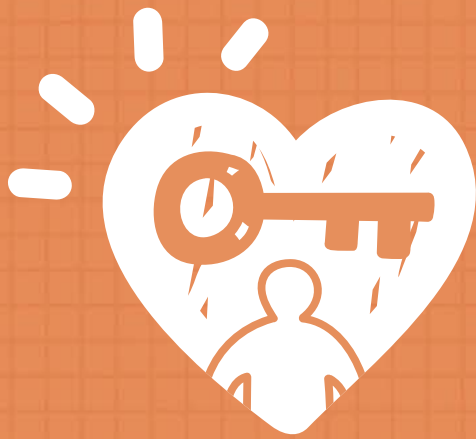
시퀀스관리



▶ [메뉴위치]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관리 → ① 서비스 제공목록의 대상자 선택 → ② 서비스 결정 선택 후 팝업창에 처리 상태에 제공, 제공기간, 제공주기, 제공내용 등록 → ③ 결정



▶ [메뉴위치]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① 서비스 제공목록의 대상자 선택 → ② 서비스 완료 선택 후 팝업창에 제공회수, 제공단위, 제공기간, 완료내용 등록 후 완료 → ③ 최종 서비스 진행상태에서 완료까지 ○ 표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 연계 완료



## 16. 주거복지

# 16. 주거복지



## 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I II 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기존주택매입임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생계·의료)</li> <li>· 저소득한부모</li> <li>·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li> <li>·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li> <li>· 주거시급가구(최초기준 미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재혼)기간 7년 이내, 아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li> <li>-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 3순위만 해당)</li> </ul> </li> <li>· 신혼 I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li> <li>· 신혼 II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생계·의료)</li> <li>· 저소득한부모</li> <li>· 일본군위안부피해자</li> <li>· 북한이탈주민</li> <li>· 아동복지시설퇴소자</li> <li>·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li> <li>·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li> <li>· 국가유공자(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생계·의료)</li> <li>· 한부모</li> <li>· 주거지원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li> <li>·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금지원 한도액 : 호당 1억3천만원</li> <li>· 실지원금액 : 지원기준 금액의 95%</li> <li>· 본인부담금 : 지원금의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금지원 한도액 : 신혼 I : 1억3천5백만원, 신혼 II : 2억4천만원</li> <li>· 실지원금액 : 신혼 I : 보증금 95%, 신혼 II : 보증금 80%</li> <li>· 본인부담금 : 신혼 I : 보증금 5%, 신혼 II : 보증금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조건 : 보증금 300만원부터 상이</li> <li>· 월임대료 : 8만원부터 상이</li>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 50년 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안내)</li> </ul>
당첨기준	입주자 선정순위로 당첨여부 결정			
접수기간	모집공고 정기접수 시즌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구분	LH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SH 주거사다리 사업)	전세임대 즉시지원 (수시접수)	긴급주거지원사업
대상	<p>※ 아래 주거환경에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거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li> <li>•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li> <li>•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아동거주 (화장실, 부엌, 1인당 14 이하거주)</li> </ul> <p>〈SH 아동주거빈곤매입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아동빈곤가구)</li> <li>• 자격기준 : 주거상향과 동일</li> <li>• 보증금 3: 00만원</li> <li>• 월임대료 : 5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li> <li>• 주거지원시급가구</li> <li>• 장애인(전년도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장애인)</li> <li>•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li> </ul> <p>중 아래 세부요건에 부합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li> <li>②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세대</li> <li>③ 신청자의 과실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요청 세대(본인 소유주택 제외)</li> </ol>	<p>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다</p> <p>「긴급복지지원」 제2조 위기상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li> <li>• 중한 질병, 부상</li> <li>•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유기</li> <li>•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li> <li>• 화재, 자연재해</li> </ul> <p>지원대상 : 중위소득 75%이하 (1인 155 / 2인 259 / 3인 332 만원)</p>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보증금 한도 : 1억3천만원</li> <li>• 임대조건 : 보증금 50만원(SH공사 100만원), 이주비(20만원)</li> <li>• LH 지원내용 : 보증금(50만원) 생필품(20만원), 이주비(20만원)</li> <li>• 임대기간 : 2년 단위(최장 20년 거주)</li> <li>• 임대주택선택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보증금 : 1억3천만원 한도내</li> <li>• 본인부담금 : 지원금의 5%</li> <li>•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 20년 거주)</li> </ul>	<p>임시거주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p>
당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이하 (1인 224만원, 2인 242만원, 3인 320만원)</li> <li>• (재산)무주택, 자산242백원 이하</li> <li>• (자동차)3557이하만원 이하</li> </ul>	<p>주택공사에서 대상자 결정</p>	<p>자치구 결정</p>
접수 기간	<p>상시접수</p>	<p>상시접수(물량 소진 시 마감)</p>	<p>상시접수</p>
신청 방법	<p>주거안심종합센터 or 관할 동주민센터</p>	<p>관할 동주민센터</p>	<p>관할 동주민센터</p>

-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SH, LH공사 알리미서비스 신청하여 민원인이 직접 문자서비스 받도록 안내 (LH공사 :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은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기타 사항은 자치구 주거안심센터에 문의

- 자료제공 : 주거안심종합센터

## 2 임대료 지원



### ▶ 주거급여

1) 책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47% 이하의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지원기준 : 임차료를 근거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 지원의 예 : 월세 25만원인 경우 최대 25만원 지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최대 33만원만 지원

3) 조사기준 : 맞춤형복지급여 조사기준 준용

### ▶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1) 지원취지 : 주거급여 수급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지급 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도모
- 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같은 시군이라도 신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인정)
- 3) 지원신청 : 부모가구의 관할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급  
예) 주거급여 3인가구 : 청년1인 서울소재대학교 재학  
부모(총남2인) : 185천원(4급지, 2인) + 서울(청년1인) 월 330천원(1급지, 1인)
- 4)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분리가구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및 구직 증명서 등

###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거주 만 19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2)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거주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3) 지원내용 : 임대료 최대한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4)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 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받은자
- 5) 신청기간 : ~ '23. 8. 21(한시)
- 6) 지급기간 : '23.12
- 7) 신청서류 : 신청서, 임차계약서 등

### ▶ 서울형주택바우처

- 1) 지원대상 :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 2)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 3)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60% 이하의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 4) 지급액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급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 ▶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 116,840원)
-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5) 신청기간 : 별도지정,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6)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2022. 8.9 당시 반지하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가구)
- 2) 지원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 3) 지원제외 : 자가,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월세지원자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자
  - '22.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4) 지원내용 : 1가구 월 20만원(최대 2년간)
- 5) 제출서류 : 지하층 당시 임대계약서, 지상층임대계약서  
침수우려가구증명서(피해사실확인서, 침수흔적확인서, 재난피해신고 이력확인 동의중 1)

## ▶ 주거취약 계층 직접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제도 사각지대 주거위기 저소득층 등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00만원 이내 및 임차료(140만원 이내)
- 4) 지원조건 : 임대주택 입주예정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월임차료가 연체 되었거나 임차료가 없어 거처가 없는 경우
- 5) 지원방법 :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
- 6) 상담 및 신청터 : 자치구 주거안심센터

## 3 주거전문상담기관

### ▶ 주거안심종합센터(지자체별)

- 1) 지원대상 : 주거안정의 욕구가 있거나,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2)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자격, 주택물색, 생활시설소개, 주택금융 및 주거정보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지원 및 연계 : 소액임차 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집수리 등
  - 주거복지 교육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임대차보호법 등

## ▶ 시립다시서기 지원센터(주거 없는 노숙인)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노숙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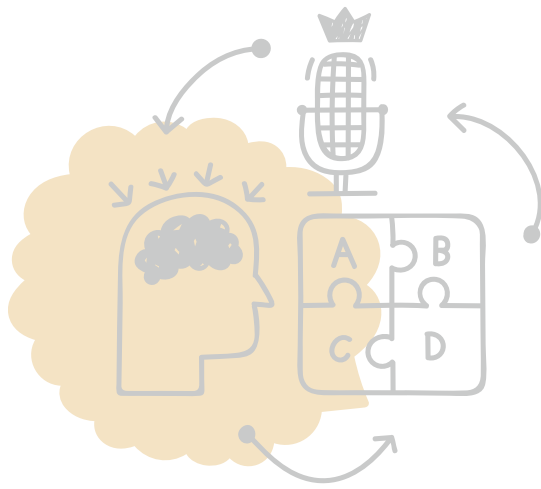
###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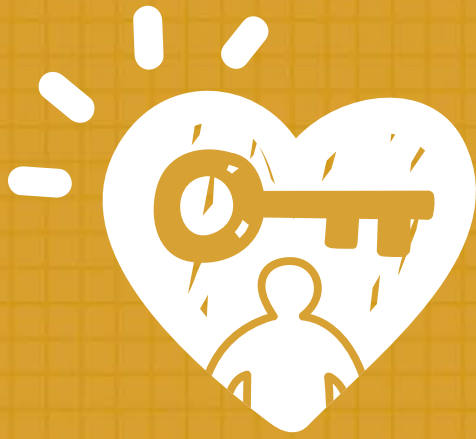
-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 노숙인밀집지역의 현상상담활동을 통한 응급구호, 일시보호시설 연계 등
- 다시서기 일시보호시설 운영 : 응급일자리, 저녁급식지원, 취업지원, 주거, 세탁샤워서비스
- 임시주거지원 : 월세지원 월 327천원(2개월 단위로 심사, 최장 6개월)
- 생활용품지원 : 1인당 8만원
- 주민등록 복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자활서비스 연계
- 반일제 일자리 사업 : 환경정비 등 경노무 중심
- 무료진료소 운영 :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 3층(내과, 일반과)

### 3) 상담 연락처

- 시립다시서기 지원센터(한강대로 92길 6) ☎ 777-5217
- 무료진료소 ☎ 777-1145
- 노숙인 위기대응 콜 ☎ 1600-9582







## 17. 서울시 주요 사업

# 17. 서울시 주요 사업

## 1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 ▶ 추진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되고 있는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른 빈곤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 ▶ 추진방향



##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1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 '몰라서 못받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시민 누구나 복지멤버십 가입 시 가구구성원 모두 사회보장급여 수혜 가능성 높은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 인적사항·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월1회)으로 파악하여 아동수당, 요금감면,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80여 종 사업\* 수급 가능성 수시 통지

\* **생애주기**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 **자격확인** 감면서비스(TV수신료 면제, 가스·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 요금감면양곡할인), 장애인서비스 등

\* **소득재산조사확인**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기초연금, 차상위계층확인

- **제도절차** : 신청 가입(www.bokjiro.go.kr) → 조사(전산활용) →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 신청(본인)

구분	동시신청	단독신청	
신청	<b>가입 시점</b>	'21.9.1.	'22.9.6.~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급여 신청자</li> <li>-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li> </ul>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b>가입 방법</b>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맞춤형 급여 안내 동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li> <li>• 복지로(온라인) 신청</li> </ul>
	<b>필요 서류</b>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b>선택 서류</b>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확인용)	
조사	<b>가구 구성</b>	• 급여신청 시 구성된 조사가구로 구성	• 신청인 및 가구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b>가구 변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반영) 신청인·가구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시 자동종료</li> <li>- 가구원의 단순 전출입은 가구구성 변동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음</li> <li>• (수동반영) 이외 요인은 신청인의 직접 신청에 따라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가능</li> </ul>	
안내	<b>대상</b>	• 생애주기 9개, 자격확인 35개, 소득재산확인 32개로 총 76개 사업 (수시변동)	
	<b>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li> <li>- 신청 후 7일 이내 : 가입사실확인 및 공적정보(자격정보 등)를 활용한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 안내</li> <li>- (금융동의 제출 시) 신청 후 30일 이내 :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 안내</li> <li>• (수시) 가구원의 출산, 연령도래, 사망, 소득재산변동 등 주요 변동 발생 시</li> </ul>	
	<b>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 안내는 기본으로 제공</li> <li>- 이와 함께 모바일(문자, 복지로앱), 전자우편 등 신청 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하고, 방문하여 출력을 원하는 경우 서면 안내 가능</li> </ul>	

**대시민  
홍보강화**

**위기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고립가구 등 알지 못하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대시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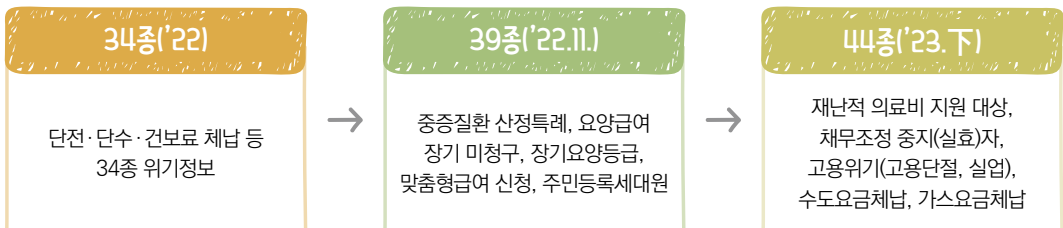
- ⇒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 내방하는 모든 시민 가입 권유
- ⇒ 고립 위험가구, 장애·독거어르신 가구, 방문거부 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 타깃 권유

**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 **사업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현황조사 및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조사횟수** : 연 6회(매 2개월) 정기조사 실시
- **조사구성**
  - 중앙발굴 : 보건복지부가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선별·통보한 대상자 조사
  - 자자체발굴 : 지자체 자체적으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위기정보(39종)**

① 단전	⑪ 자살고위험군	⑳ 실업급여 미수급	㉓ 영양플러스 미지원
② 단수	⑫ 자해·자살 내원	㉑ 산재요양후 미취업	㉔ 방문건강관리군
③ 단가스	⑬ 범죄피해자	㉒ 미취업 일용근로자	㉕ 기저귀·분유지원
④ 건보료 체납	⑭ 시설퇴소자	㉓ 개별연장급여대상	㉖ 신생아 난청 확진
⑤ 금융연체	⑮ 기초연금신청탈락	㉔ 노인장기요양	㉗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⑥ 전기료 체납	⑯ 휴폐업	㉕ 의료비 과다지출	㉘ 의료기관 장기미이용 장애인
⑦ 국민연금 체납	⑰ 화재피해	㉖ 건보료 취약세대 경감	㉙ 장기요양 등급자·등급외자
⑧ 관리비 체납	⑱ 재난피해	㉗ 전세취약가구	㉚ 복지멤버십 미신청자
⑨ 임차료 체납	⑲ 세대주 사망	㉘ 월세취약가구	㉛ 주민등록세대원
⑩ 통신비 체납	⑳ 실업급여 수급	㉙ 위기학생	

**※ 위기정보 단계별 입수 확대(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 발굴대상자 조회 및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관된 조사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전화 등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등록

진행단계	업무내용
① 대상자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자 목록 조회</li> <li>• 발굴변수, 가구구성, 발굴이력, 처리이력, 보장이력 등 상세현황 확인</li> </ul>
②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li> </ul>
②-1. 처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상담 입력</li> <li>•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li> <li>• 민간서비스 연계요청 및 처리결과 등록</li> </ul>
②-2. 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상자 등록/해제</li> </ul>

### 3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운영을 통한 발굴

####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14조
- 기본개념 : 인적자원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 활동내용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발굴  
(사회보장급여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 구성인력(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전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수 (G) (G=A+B+C+D+E+F)	주요 단체·조직			생활업종 종사자 (D)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E)	기타지역 주민 (F)	MOU 체결건수 (생활업종 및 신고의무기관 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A)	통장 (B)	기타 동 단체회원 (C)				
30,155	5,327	10,153	4,167	3,520	1,591	1,328	4,069

- 추진체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 및 중점 협업 업무

- ▶ 명사복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모색  
(위촉장, 명찰, 활동조끼 등 제작을 위한 운영비 지원, 표창장 수여 등)
- ▶ 명사복 복지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도움자료 보급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교육영상 제작, 활동 우수사례집, 휴대용 안내보드 제작 등)
- ▶ 명사복 생활업종 종사자 활용한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배포 확대  
(의원, 약국, 편의점, 동네 소매점, 공인중개소 등에 복지상담센터 홍보 안내보드 배포)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업내용**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는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체계**

구분		구성 조직수	위원수
區(구)	대표협의체	25구/ 25개	620명
	실무협의체	25구/ 25개	638명
	실무 분과	25구/208개	2,922명
洞(동)	洞협의체	426동/424개	8,861명
<b>계</b>		<b>25개구</b>	<b>13,041명</b>



#### • 주요역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2px;">區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의사결정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협의체 : 정책 심의 자문 중심</li> <li>• 실무협의체 : 심의 사전검토, 사업개발, 정책화 등</li> <li>• 실무분과 : 민관협력, 모니터링, 특성사업 추진 등</li> <li>• 사무국 : 지사협 역할 지원하는 유급직원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li> </ul>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2px;">洞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대상자 발굴 :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li> <li>• 지역자원 발굴 : 洞단위 복지자원 발굴</li> <li>•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관협력 네트워크</li> <li>• 특성사업 추진 : 洞 특성에 맞는 특성사업</li> <li>• 복지이재 발굴·기획·실행을 위한 교육</li> </ul>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및 중점 수행 권장 업무

- ▶ 지사협 업무 담당자(공무원, 사무국 직원)가 활용하는 실무도움서 제작
  - 담당자 교체·신규 발령 등 변경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 도모, 자치구 평균적 협의체 운영 능력 제고
- ▶ 區 협의체 실무분과 내 고독사 분과 전 자치구 신설 권장
  - 실무분과를 매개로 구·동 협의체 협업 활동 전개,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한 즉각적인 현안 대응

현행 실무분과 (22.12월말 현재 7개 분과)

장애인 | 여성가족 | 탈북민 | 다문화 | 아동청소년 | 노인 | 청장년

실무분과 추가

⑧ 고독사

- ▶ 협의체와 다양한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권장
  -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예시: 종교협의회를 통한 건강음료 제공 안부확인 사업)

#### 4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목적**: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현황관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조사기간**: 매년 9월 ~ 11월 ※ '23년부터 자치구의견 수렴하여 조사기간 변경  
(계획 통보<8월,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9~11월, 區> ⇒ 결과 제출<12월>)
- **조사대상**: 사회적 고립 1인가구
- **조사주체**: 쉼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 **조사방법**: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 **조사내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 변경 가능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주소·연락처, 보호구분(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경제 상황	직업 유무, 소득 규모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및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 정신)문제, 일상생활자원(식사, 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90점)	① 실패·상실감누적(10), ② 고립적일상(40), ③ 사회적고립(20), ④ 이동성 높은 생애(10), ⑤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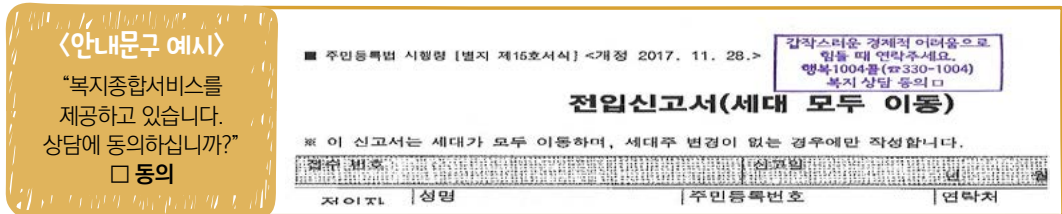
- **조사결과**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발굴·분류 및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 ▷ 공적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서울형 포함) 신청,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 민간서비스 : 후원성금(품),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 돌봄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제공
  - ▷ 안부확인 : 인적안전망, 스마트돌봄(서울살피미앱 등) 제공
  -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 ▷ 기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 5 주민등록 사실조사(매년 2회) 병행한 위기가구 발굴

- **조사자** : 통장 약 12,000명 등 사실조사원
- **발굴시기** : 매년 2회 실시(1~4월, 9~11월)
- **발굴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관찰하여 위기가구를 동주민센터에 연계)

## 6 전입신고서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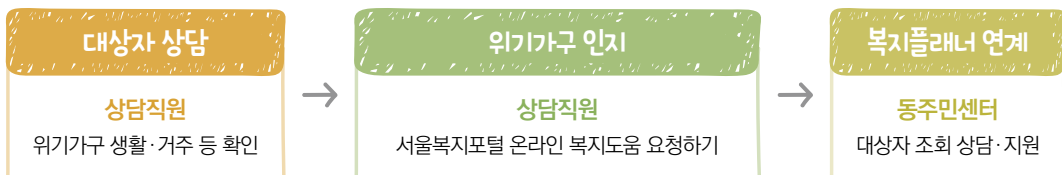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서울시 전입 시민
- **조사자**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발굴시기** : 조사대상자 전입신고 시(방문 및 인터넷)
- **발굴방법** : 전입신고서 **여백에 복지상담 안내 문구 추가(고무인, 스탬프)**



## 7 시민접점 기관과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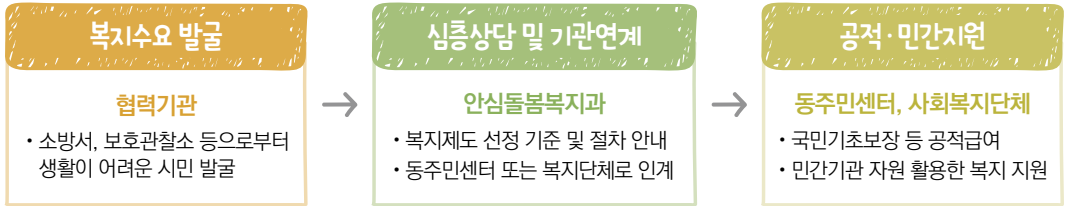
### 1) 건강보험공단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 발굴

- **추진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가정방문 시 및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의 주거문제 상담 시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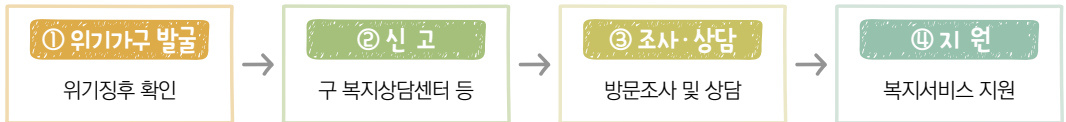
## 2)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 참여기관 : 보호관찰소, 무료급식소, 119특수구조단, 강서소방서 등
- 사업내용 : 종합 복지상담, 조건에 부합한 공적지원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
- 추진절차



## 3) 각종 검침원 등 대민활동 근무자를 통한 발굴로 현장 대응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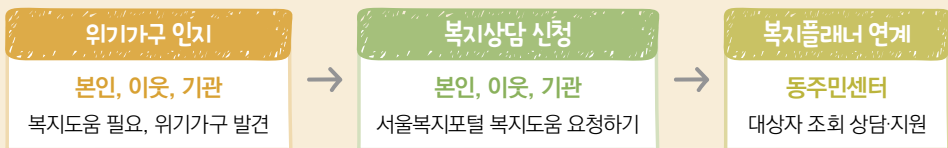
-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 가구방문 시 위기가구 확인 및 신고



- 위기징후 확인 및 신고방법 체계화를 통한 발굴 실효성 제고
  - ▷ (발굴) '위기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확인  
 예시) 고지서, 배달제품 등이 쌓여있음, 단전·단수·단가스 안내문이 붙어있음, 약취가 나거나 쓰레기(술병 등)가 쌓여있음
  - ▷ (신고)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SNS 등

###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시스템 (온라인 위기가구 신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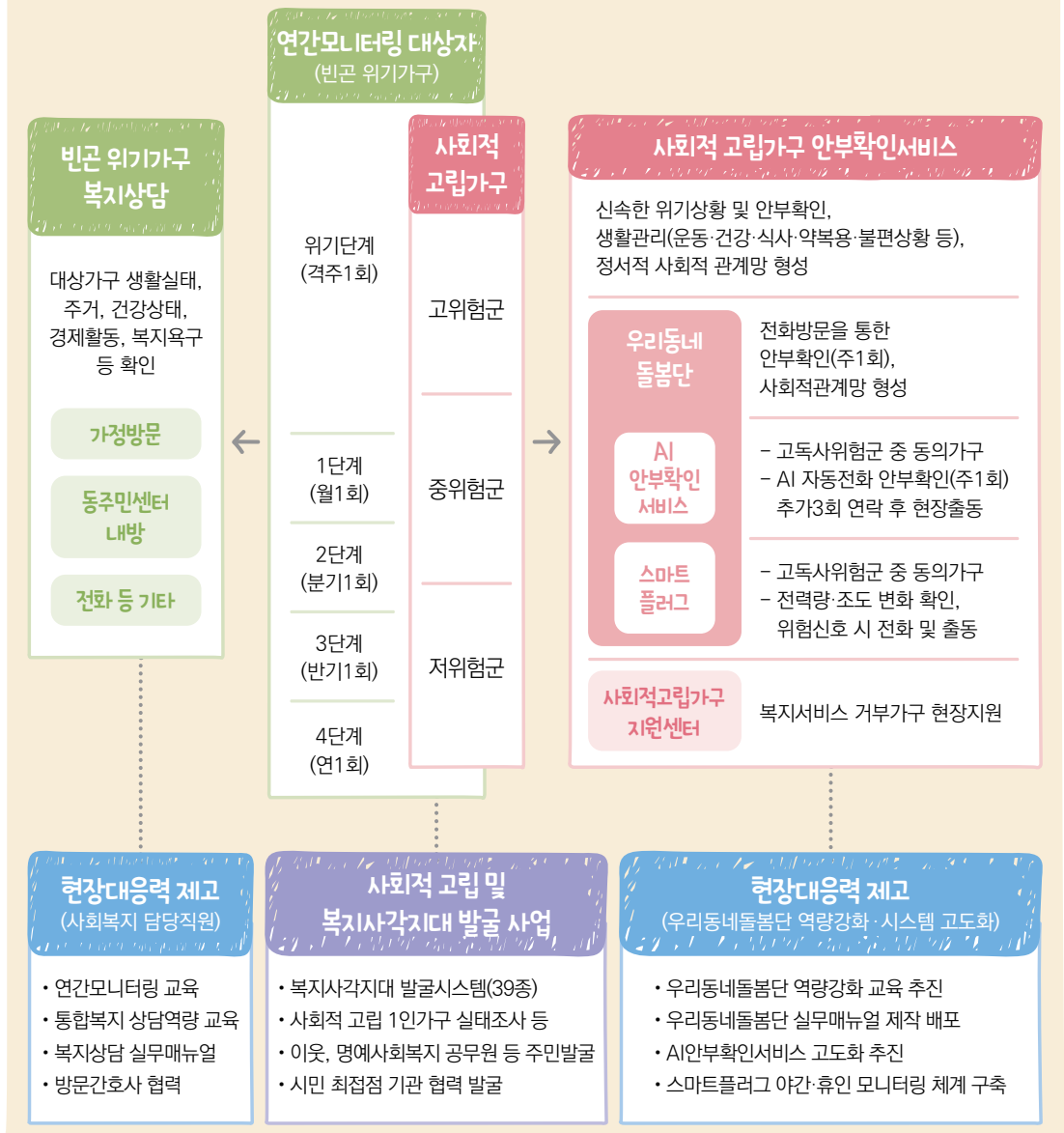
- ➔ 복지포털(www.bokjiro.go.kr) 내 위기가구 도움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개설('22.5.9 ~)
- ▷ 복지포털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 위기가구 돌봄시스템

### 위기가구 모니터링 체계도

➔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 중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위리가구인 경우**  
 고립 위험상황과 빈곤 위기상황을 구분하여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모니터링 강화  
**[고립위기]** SI안부확인서비스 등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연계  
**[빈곤위기]** 연간모니터링 위기도 단계(위기, 1~4단계) 설정하여 동주민센터 가정방문



## 1 복지 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시스템

### • 사업개요

- ▷ '20.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생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강화를 위해,
- ▷ 자치구별 복지대상자(기존 수급자 및 신규발굴자)에 대한 연간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정기방문을 의무화하여 '21.2월부터 서울시 25개구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음

#### ※ 기초수급자 사망사건

'20.12.3일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세(여) 수급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노숙중인 사망자 아들을 통해 모친의 사망사실을 인지함

### • 모니터링 대상 : 약 30만 가구 ('22.12월말 현재)

<b>기존 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 수급자</li> <li>-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li> </ul> </li> <li>• 수급자 외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li> </ul>
<b>신규발굴 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신규책정 수급자</li> <li>•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e음 발굴시스템 및 상시적 발굴체계 활용(지역복지공동체 등)</li> </ul> </li> <li>•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li> <li>• 주변 발굴·신고 대상자, 경제상황 악화로 내방한 상담자 등 주기적 복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등</li> </ul>

- **사업 내용** : 복지대상가구를 위기도 분류표\*에 따라 위기도를 총 5단계로 설정하고, 위기도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2.4/4분기 현재 총 30만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행중임
  - 위기(격주1회), 1단계(월1회 이상), 2단계(분기1회 이상), 3단계(반기1회 이상), 4단계(연1회 이상)

### • 세부 업무 절차



##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

위기도 단계	주기	가구특성
① 위기 단계	격주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노인·질병 1인 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li> <li>·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 가구 등</li> <li>· 정신장애인, 해체위기,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li> <li>·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가구</li> </ul>
② 1단계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관련 욕구,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li> <li>· 2인 이상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li> <li>·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li> <li>·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li> <li>· 안부확인서비스 미신청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고, 중저) 중 알콜릭 및 기저질환 있는 가구</li> </ul>
③ 2단계	분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li> </ul>
④ 3단계	반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만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li> </ul>
⑤ 4단계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li> <li>·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li> </ul>

※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및 우리동네돌봄단 돌봄을 거부하는 고립위험 수급가구는 연간모니터링 위기도 2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 동 복지플래너 모니터링 정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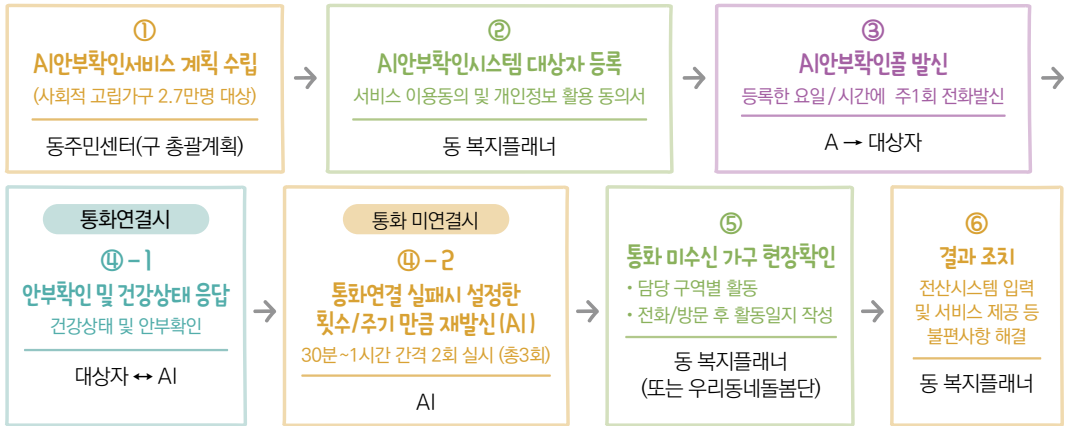
## 2 AI·사물인터넷(IoT) 활용 고립 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

### 1)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를 자치구에 전달 (통화내용 자동분석)하여 관리
- **사업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22년 AI안부확인서비스 사용자 및 '23년 서비스 신규 발굴 사용자
  -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고·중·저 위험군'
- **사업기간** : '22년 10월~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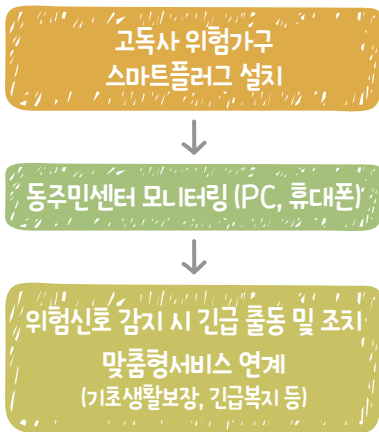
### 세부 운영절차



- **수행인력** : 동주민센터 고독사 담당 및 복지플래너

### 2)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방지
- **지원대상** : 시 및 자치구 자체 조사에 의거 발굴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 종로구 등 21개구 총 3,911가구 대상 모니터링 운영 중(구비 운영 포함)
- **사업기간** : '20년 10월 ~ 계속
- **운영체계** : 기기 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서비스 제공)



일반/위험군/고위험군 문자 전송 시간				
구분	관심 단계	위험 단계	심각 단계	기기 점검
일반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위험군	26시간	36시간	46시간	
고위험군	14시간	24시간	34시간	
문자전송	X	○	○	○

-10시간

+1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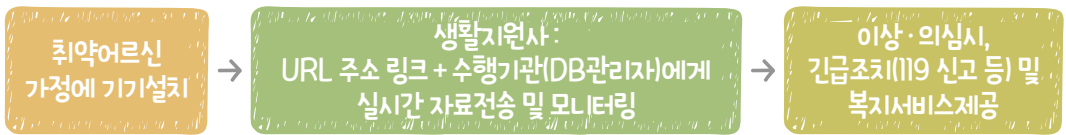
- **수행인력** : 동주민센터 고독사 담당 및 복지플래너  
※ '22년 10월부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스마트플러그 위험신호에 대한 모니터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 3) 서울살피미업 운영

- 사업기간 : '21.6월 ~ 계속
- 사업대상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돌봄사각지대 주민  
(스마트기기 미설치자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 모니터링이 어려운 대상자 우선)
- 사업내용 : 서울 살피미 앱 설치로 상시적 안전확인 및 신속한 위기대응

### 4)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 사업대상 : 13,000가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취약어르신)  
※ 자살(우울)위험군, 관계단절, 시·청각장애, 치매(의심), 고령 등 고위험군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가정 내 취약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운영체계 : 기기보급[1단계] → 기기모니터링[2단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3단계]



## 3 우리동네돌봄단 통한 고립위험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추진근거
  - ▷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
  - ▷ '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안심돌봄복지과-7065, '22.12.23.)
- 추진지역·활동인원 : 25개 자치구 1,200명(2023년 기준, 연도별 변동 가능)
- 활동내용 : 洞 단위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지원
  - ▷ 필수임무 :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月 약 40명 내외 돌봄/1인)
  - ▷ 산책·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참여 70개동주민센터)
- 활동조건 : 월 48시간 내 / 주3일 / 1일 4시간 이내(2023년 기준, 연도별 변동 가능)
  - ▷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396천원(세전) / 상해보험비·교육실비·기타 운영비 등
- 활동실적('22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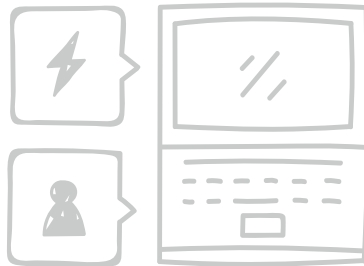
(단위:명, 건)

'22년 정원	'22년 활동인원	모니터링			지원연계			
		소계	전화상담	가구방문	소계	공적지원	민간지원	기타*
1,200	1,055	920,109	762,321	157,788	104,476	13,349	74,018	17,109

\* 기타 : 가사정리 등 청소, 유관기관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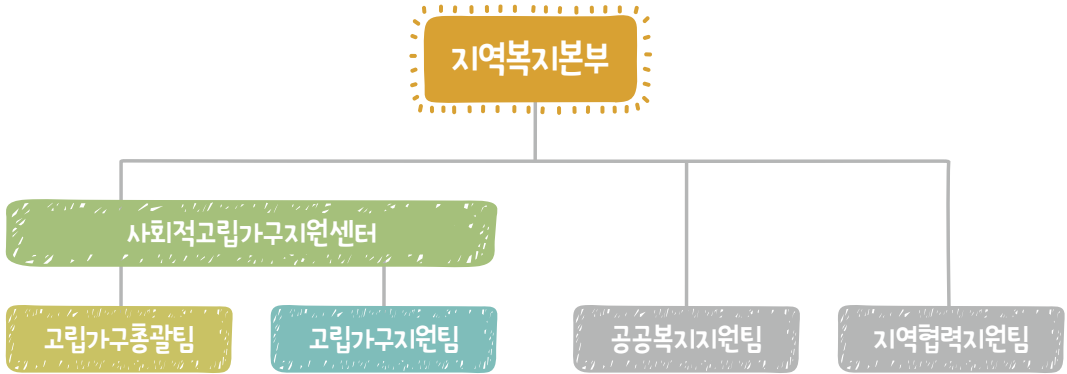
## 공무원이 알아야 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내용

- ➡ (역할 인식) 복지대상 증가에 대응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돌봄 활동 지원
  - 공공부문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안부확인을 위해 2017년 도입됨
  - 돌봄대상자의 복지수요는 돌봄단을 통해 공무원이 전달받아 공무원이 대응해야 함
- ➡ (돌봄 대상) 연중 고독사 위험가구로 판별된 지역 주민 중점 대응 목적
  - 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등을 위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임
  - 따라서, 돌봄단별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매칭하여 중점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연중 빈틈없는 위험가구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12개월 운영 중
- ➡ (역량 강화) 활동안내서에 기반한 돌봄단 역할·활동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공무원 및 돌봄단 자체 학습을 위한 2023년 활동안내서 배포(시-복지재단 제작)
  - 활동안내서에 기반한 자치구 자체 교육 및 돌봄단 활동일지 작성 내실화 권장



#### 4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복지재단)

- 추진근거 : '22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지역복지돌봄과-27995, '22.8.5)
- 설립목적 :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 설치일시 : 2022.10.01.
- 설치 : 서울시복지재단 내 지역복지본부 산하(2개팀)으로 구성
- 조직구조



#### • 팀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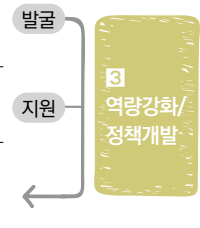
팀명	핵심기능	주요사업
고립가구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가구 스마트복지 운영지원</li> <li>•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li> <li>• 고립가구 인식개선 및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플러그(IoT) 야간·휴일 관제, AI 안부확인 지원</li> <li>• 고립가구 IoT·AI 서비스 효과성 조사와 품질관리</li> <li>•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li> <li>• 고립가구 인식개선 포럼 및 홍보</li> <li>• 고립가구지원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li> </ul>
고립가구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li> <li>• 고립가구 현장중심 지원모델 '있다+'</li> <li>•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난이도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li> <li>• 현장중심 거부가구지원 모델개발 '있다+'사업</li> <li>• 위기가구 법률·금융 서비스 연계</li> <li>• 120연계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li> <li>• 광역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li> <li>• 공공·민간 현장 거부가구지원 매뉴얼 교육</li> <li>• 우리동네돌봄단 매뉴얼 교육 및 활동지원</li> </ul>

##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b>비전</b>	<b>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지원 컨트롤 타워</b>	
<b>목표</b>	<b>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b>	
<b>세부 과제</b>	<b>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에서 의뢰된 고난이도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li> <li>○ 고난이도 고립가구(거부가구 등) 사회도약 참여비 지원</li> <li>○ 고독사 예방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신규 추진</li> <li>○ 광역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li> <li>○ 120연계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li> <li>○ 위기가구 법률·금융 서비스 연계</li> </ul>
	<b>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잇다+' 사업 협력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li> <li>○ '잇다+' 사업 협력기관 성과관리 지원 및 확산</li> <li>○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력사업(모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회 사업 수행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li> <li>- 수행기관 일을 대비 성과관리 및 지역안착화 지원</li> </ul> </li> </ul>
	<b>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 지원</li> <li>○ 공공기관 현장 및 거부가구 지원 매뉴얼 교육</li> </ul>
	<b>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가구 스마트플러그(IoT) 야간·휴일 관제</li> <li>○ 고립가구 IoT·AI 서비스 효과성 조사와 품질관리</li> <li>○ 고립가구 시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지원</li> <li>○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ul>
	<b>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가구 인식개선 포럼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 3회, 인식개선 영상개발, 홍보물 제작</li> </ul> </li> <li>○ 고립가구지원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li> </ul>

## 센터 주요 사업대상

구분	인원	센터 주요 사업	지원 역할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 거부	35,984명	<b>1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b> (※ 기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잇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연계 예정)	민관 협업 통한 위험군 발굴
	조사 완료	36,265명 (고독사위험군)	<b>2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b> (※ 우리동네돌봄단, 시안부전화 등)	우돌단 전화, 방문 통한 안부관리
사회적 고립지원센터 주요 사업대상('22년)	5,000명* (스마트플러그 지원대상)	<b>3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b> (※ 스마트기기, 민간경비업체 등)	민간경비업체 야간·공휴일 포함 상시 모니터링	



\*'22년도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한 센터 집중 지원대상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대상인원 추가 가능

## 주요사업

### 1)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강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425개동, 복지기관, 광역자원 등
- **사업내용** : 공공, 민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구분	공공	민간	지역사회
사업명	고립가구 사회도약지원	고립가구 현장중심 지원모델 개발 '잇다+'**	자치구 고독사 예방 협의체, 광역자원 개발 및 연계
사업대상	공공 데이터(39종, 실태조사) 고위험군, 미동의 고립(거부) 가구	주거취약지역 중심의 고립(거부)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추진방법	사례의뢰(구·동 → 재단), 현장조사, 사례관리기관 연계, 솔루션지원 등	민간복지기관 30개소 선정 / 아웃리치, 네트워크, 주민조직활용 발굴	고독사 예방 사회 환경 조성, 민간 협력을 통한 발굴 및 자원연계

→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체계마련

\*\* 잇다+ : 지역복지관이 새로운 사회적고립가구를 찾고, 지역별 고립가구 대응 및 지원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거부 가구 등 고난이도 고립가구 '사회적고립지원센터(복지재단)' 현장대응 지원



#### ▷ (발굴) 자치구·동에서 신고·상담시 접촉한 복지서비스 탈락자, 위기징후 가구

- 복지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각종 조사 결과 확인된 고립 위기가구 등
- 고립 위기가구이나, 접촉·관계·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가구 등

-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위험가구(고위험, 중위험, 거부가구 등)
-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44종 해당 가구(수급탈락 가구 포함)
- 미동의 가구(정신질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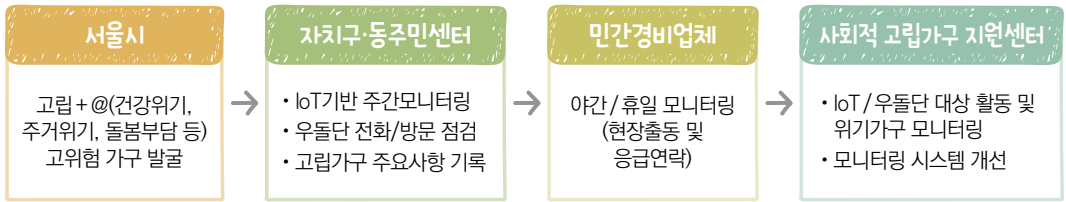
#### ▷ (지원/연계) 고위험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및 광역자원 개발·연계

- 대상자 합동방문, 자치구·동 권역별(4개, 2인 1조) 조사 지원
- 생활실태 상담 및 자원연계, 지역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지원
- 통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 참여

※ 지원거부 가구 사회활동 참여 위한「사회도약 참여비」지원(20만 원 내외)

## 2) 24시간 스마트돌봄 운영 안정화 및 품질관리

- **사업대상** : 서울시민, 25개 자치구·425개동, 복지기관
- **사업내용** : 스마트돌봄 시스템(스마트플러그·AI안부확인서비스) 운영지원,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스마트돌봄시스템 효과성 조사 및 품질관리 등
- **추진방법**
  - ▷ 스마트플러그 야간, 공휴일 대응 위한 민간경비업체 용역계약, 소방/경찰 등 지역 내 MOU 체결



- ▷ AI안부확인서비스 시나리오 품질관리 및 매뉴얼 제작을 통해 고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 스마트플러그(IoT)·AI 서비스 효과성 분석 및 품질관리
- ▷ 위기대응총괄시스템 DB구축 및 유기적 협력 위한 네트워크 정례화

## 3) 현장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확대

- **사업대상** : 공공·민간 사업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1,200명), 서울시민
- **사업내용** :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현장 역량강화, 인식개선 지원

구분	현장역량강화	인식개선	
공공·민간 담당자	거부가구 지원 교육, 간담회	홍보 리플렛, 영상 제작·배포	→ 사회적 고립 이해도 향상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우리동네돌봄단·시민	신규/기본(온라인)/심화 교육	포럼, 언론홍보(신문, TV등)	

- ▷ 우리동네돌봄단 매뉴얼(22년 발간) 기반으로 역할 및 활동방법 안내
- ▷ 자치구·동주민센터·우리동네돌봄단 기본/심화교육(※ 교육센터 연계)
  - 우리동네돌봄단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25개 자치구별 찾아가는 심화교육을 통한 구 단위 협력체계 마련
- ▷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개최로 공론화 주도 (\*23.3월~10월)
- ▷ 세대별 다양한 타겟 매체 활용하여 홍보 접근성 확대



## 2 돌봄SOS 서비스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장기적 서비스가 아닌,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신속히 연계·제공
-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기본적으로 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성인)은 모두 이용 대상임
- 아래의 3가지 적격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심각성에 기초함(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제공기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위급상황 해당)

이용자 차원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및 수술, 퇴원 후 회복기</li> <li>• 급성기질환 발생에 따른 수발 필요 상황</li> <li>• 주 돌봄자의 감염 등 객관적 위급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미연계 상황</li> <li>• 제공인력 부재 및 교체 기간</li> <li>• 제공인력 감염 등</li> </ul>

#### 2) 비용부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이용료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 부담

####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160만원



### 3) 예외승인

- 1회에 한하여 주민센터 자체 돌봄회의로 연장승인 가능 (최대지원금액 범위 내)
- 최대지원금액(160만원) 초과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돌봄연장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요건에 일부 충족하지 않으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등  
※ 구청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 후 진행할 것

### ▶ 지원절차

- 돌봄매니저에 의한 신청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 신청·접수 : 찾아가는 복지, 직접방문, 120다산콜, 사각지대발굴, 타기관 의뢰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 자치구와 업무협약 체결한 재가·요양·생활시설 등으로 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서비스 제공

### ▶ 지원내용(10대 돌봄서비스)

- 수가체계의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3가지 적격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개요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간단한 시설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세부 내용	신체활동, 간병, 가사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식사제공 및 수발 교육훈련서비스 일상생활적응, 건강 관리, 낙상예방 등 병원동행지원 통원치료 지원	이용자 건강 및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 시 동행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등	1. 가정내 소수리 2. 대청소 및 방역 3. 세탁서비스	식사조리 후 가정까지 배달
제공 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기업 등
운영 수가	1시간 23,480원 연간 최대 60시간	1일 63,250원 연간 최대 14일	60분 15,400원 연간 최대 12회	60분 15,400원 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1식 8,900원 연간 최대 30식

- 비수가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 : 3가지 적격판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

구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개요	일상적 안부, 야간 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복합적 욕구 대상자 사후관리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등 연계
세부 내용	서울시·자치구·동 단위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 우리동네돌봄단 등	보건소 건강돌봄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관내 의료기관 등 자원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제도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등 연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등 연계
제공 기관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 동주민센터 등	• 보건소 • 공공·민간의료 기관 등	• 장기요양기관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자치구, 동주민센터

## ▶ 구비서류

- 1) 필수서류 : 돌봄SOS 서비스 이용 동의서  
돌봄SOS 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 연장승인, 예외승인(추가) : 대상자의 상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소견서), 약제비영수증, 현장실태사진 등

## ▶ 처리방법

- 1) 지원가능 대상자 경우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① 초기판단체크리스트 ②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③ 돌봄계획서 ④ 서비스제공의뢰서 ⑤대상자 필수서류(돌봄SOS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하여 내부 결재
  - 행복e음에 상담·지원 이력 남기기
- 2) 예외승인 경우
  - 주민센터 진행 연장승인(1회)
    - 위 1)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돌봄회의록 반드시 추가 작성하고 내부결재
  - 그 외 연장·예외 승인
    - 구청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 후, 구청에 돌봄회의록과 증빙서류 공문 제출
- 3) 모니터링, 종결처리
  - 지원 중, 변동 발생 경우 모니터링 입력/서비스 종결 시, 종결처리

##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생복통) 입력방법

### 1) 대상자 접수

홈 ⇨ 돌봄SOS서비스 ⇨ 신청관리 ⇨ 접수등록 ⇨ 대상자 내용 입력 ⇨ 돌봄계획수립 ⇨ 의뢰하기  
⇨ 의뢰/서비스결과보고관리 ⇨ 저장

### 2) 돌봄회의, 모니터링, 종결보고

홈 ⇨ 돌봄SOS서비스 ⇨ 신청관리 ⇨ 대상자검색 ⇨ 통합보고서 탭 ⇨ 통합보고서 추가 ⇨ 진행유형  
(돌봄회의, 모니터링, 종결보고 택1) ⇨ 주요내용 입력 ⇨ 저장

## ▶ (소득조사 필요시) 행복e음 입력방법(①②모두 실시)

- ① 그 외 메뉴 보기 ⇨ 오픈마켓 ⇨ 신청관리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② 그 외 메뉴 보기 ⇨ 오픈마켓 ⇨ 조사대상자 현황 및 관리 ⇨ 서비스명 “돌봄SOS서비스” ⇨ 대상자  
클릭 ⇨ 공적자료요청의 “요청” 체크 ⇨ 하단 공적자료요청/취소 > 저장

## ▶ 상담시

- 중위소득 100%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 타 돌봄 기능 서비스 중복 수혜 여부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게 돌봄서비스 제공해야 함  
(장기요양등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복지관 반찬·급식 서비스 등)
-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모든 돌봄SOS서비스가 연계 불가능한 것은 아님. 서비스 성격이 중복  
되지 않으면 제공 가능함

###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제공 가능한 돌봄SOS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가능한 돌봄SOS서비스
등급	이용가능 급여	
1~2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거편의, 식사배달
3~5등급	재가급여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	5대 추가서비스 모두 가능
등급 외	해당 없음	



〈돌봄SOS 동행지원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비교

구분	돌봄SOS 동행지원서비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대상범위	돌봄이 필요한 시민 (3가지 적격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모든 시민 (코로나 등 감염질환 없어야 함)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그 외 본인 부담(기본 1시간 5,000원, 30분 초과시마다 2,500원 추가)
제공서비스	필수 외출활동 시 동행	병원 동행지원만 가능
지원한도	연간 최대 12회	1일 1회, 연간 이용횟수 제한 없음
유의사항	교통비 12만원 별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는 시민 본인 부담</li> <li>•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 증빙서류 제출 필요</li> </ul>
담당부서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서울시 ☎1533-1179

- 단기시설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구별로 존재하지 않아 구별 협약된 인근 구의 단기시설 기관인 경우도 있음
- 주거편의 서비스 중 LED등 교체서비스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아닌 일반 제공기관에서 진행 불가함

**▶ 관련 규정**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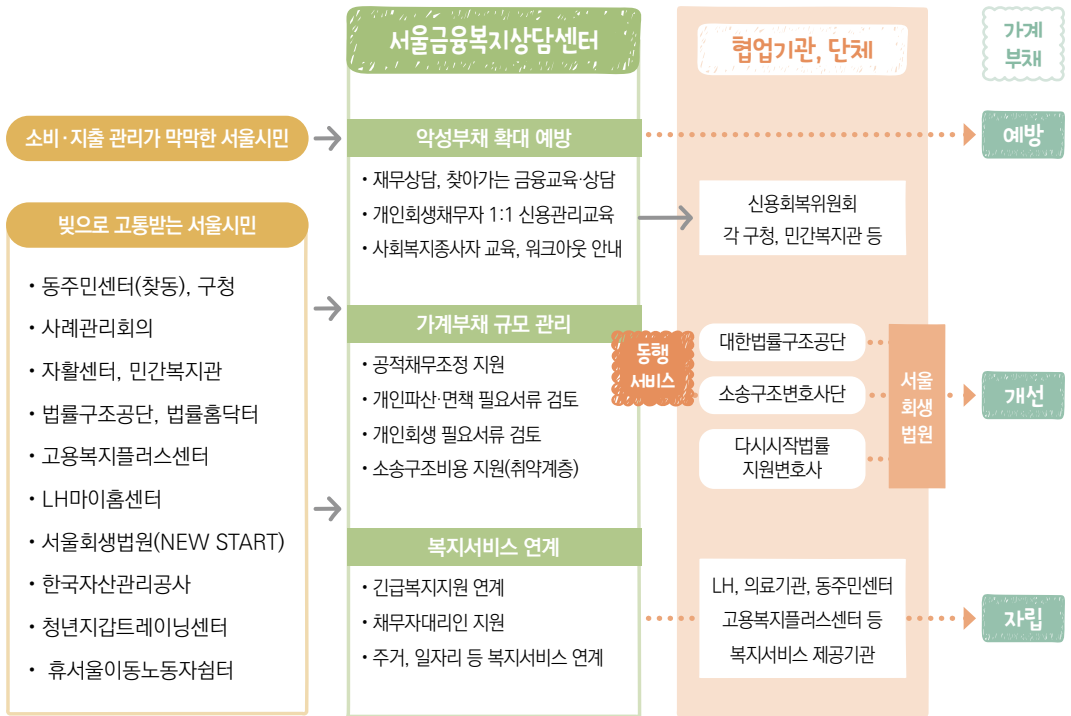
**▶ LED등 교체서비스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이를 교체하는 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며,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

### 3 서울시 금융취약계층 종합지원

## 1. 금융 취약계층 종합지원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3) **지원절차**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상담관이 1:1 상담을 통해 적정 솔루션 제공



#### 4)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현황

- 중앙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본관(서울 마포구 소재)
- 지역센터 : 11개소(구청 8, 시청 1, LH 마이홈 1, 재단 흑석동 별관 1)
- 청년동행센터 : 재단 자체 설치(강남구 테헤란로 410, 선릉역 인근)



## 2. 공적 채무조정 전문 상담 및 지원안내

### ▶ 사업개요

- 1) **주요내용** : 금융복지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 받거나 당감 받을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다시시작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 진행과정 전반지원

- ※ **채무조정제도** : 과다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 ※ **파산면책** :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 **개인회생** :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채권자에 변제하고(최장 5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 2) **지원대상** : 채무변제가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서울시민  
(※ 금융복지종합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제도에 적합할지 판단)

- 3) **지원내용**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등 종합상담 솔루션 제공  
개인파산·회생 신청 준비 및 접수지원  
생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 3. 공적 채무조정 법무비용 지원

#### ▶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지원

※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권자(대부업)의 추심·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접수(예정)인 자
- 2)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원

#### ▶ 파산관재인 선임비 납부 지원

※ **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무자 재산을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
- 2) **지원내용** : 법원 예납명령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금) 지원
- 3)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단, 추가로 50만원 한도내 지원가능)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의 법원결정금액, 가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 결정

#### ▶ 부채증명서 발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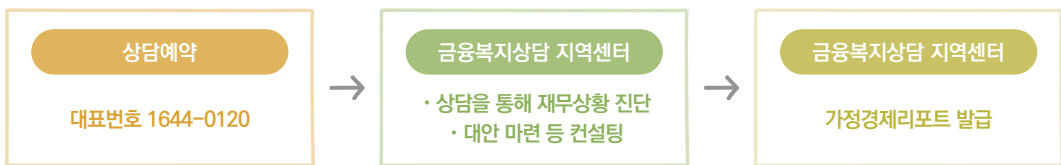
※ **부채증명서** : 개인의 부채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사실을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증명하는 서류

- 1) **지원대상** :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중인 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 2) **지원내용**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및 채권사별 발급수수료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4. 금융복지 역량강화 재무관리 및 금융 교육지원

### ▶ 재무 컨설팅

- 1) 주요내용 : 금융복지종합상담 후 금융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
- 2) 지원대상 : 서울시민, 금융취약계층 등
- 3) 지원내용 : 공공재무 상담도구(가정경제리포트)를 활용하여 전문 상담관이 1:1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 4) 지원절차



### ▶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교육

- 1) 주요내용 : 악성부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다양한 금융복지교육 제공
- 2) 세부 운영 프로그램

구분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직 공무원금융교육	예비사회복지사 금융복지교육	금융서포터즈 양성과정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금융교육
대상	서울시 소재 자활센터·복지기관 및 서울시민	·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7, 8, 9급 ·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 전공 실습생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 금융취약 중장년 대상
내용	지역복지기관 요청 시 상담관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만날 수 있는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금융복지상담 연계	서울시 복지정책 및 법률서비스 안내 중 금융복지파트 진행	센터 전문상담관을 강사로 하여 현장 맞춤형 금융복지 서포터즈 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 1인 가구 대상 부채교육 · 금융취약 중장년을 위한 경제교육 운영
절차	센터 요청 시 일정 조율하여 진행	서울복지교육센터 업무협력 추진		서울시복지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서울시 유관부서 (1인 가구담당관 & 평생교육과 협력 추진)



## 5. 청년특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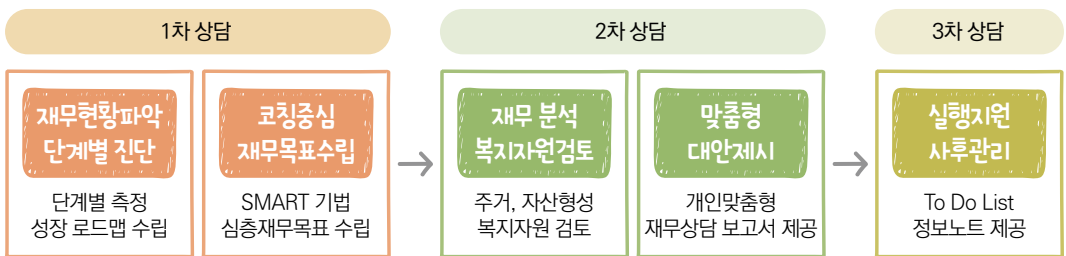
### ▶ 청년동행센터 운영

- 1) 주요내용 :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금융교육 등) 제공
- 2) 이용대상 : 만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일반시민도 가능)
- 3)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매주 수요일 오후 6시~오후 8시)
- 4) 이용방법 : 1644-0120 전화예약 혹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신청(예약필수)
- 5) 센터위치 :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금강터워 4층(도보1분)



### ▶ 청년 재무코칭 프로그램 운영

- 1) 대상 : 만39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융취약 청년
- 2) 내용 : 청년 스스로 변화 가능하도록 금융관리 및 실행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진단 및 대안 제시
- 3)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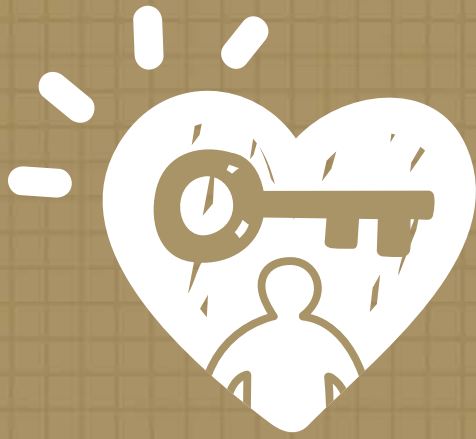
### ▶ 금융위기 회생청년을 위한 『청년재무길잡이』 재무상담

- 1) 대상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
- 2) 내용 : 1:1 청년재무길잡이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수료증 발급  
※ 수료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도박 등 5개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3년 미만)
- 3) 이용방법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서울회생법원 청년재무길잡이 신청’)에서 신청

## 참고문헌

- 2022 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 이해 도움서 '나만 믿고 따라와, 사례관리'
- 202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매뉴얼
- 2022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 2022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
- 2022 비대면 심리지원(상담) 매뉴얼
- 2023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2023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교육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Saleebey, D. 200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Allyn and Bacon.





부록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지역난방 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최대 16,000원 감면</li> <li>※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li> <li>※ 월 최대 33,500원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1,68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9,900원/월</li> </ul>	월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li> <li>월 통화 225분 무료</li> </ul>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최대 10,000원 감면</li> <li>※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li> <li>※ 월 최대 21,500원 감면</li> <li>※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84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4,950원/월</li> </ul>	월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42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2,470원/월</li> </ul>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최대 8,000원 감면</li> <li>※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li> <li>※ 월 최대 21,500원 감면</li> <li>※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84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4,950원/월</li> </ul>	월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42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8,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2,470원/월</li> </ul>		
장애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최대 16,000원 감면</li> <li>※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용 1,680원/월</li> <li>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월</li> <li>기타월(4~11월) 9,900원/월</li> </ul>	월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통화료 50% 감면</li> <li>월 통화료 50% 감면 (15,000원 한도)</li> </ul>
기초연금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료 및 통화료 50% (월 최대 11,000원 한도)</li> </ul>			

※ TV 수신료는 TV 수상을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 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시내·외 전화는 가구당 1회선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제외)



### TV 수신료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전기료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포(www.bokjiro.go.kr)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로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회선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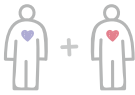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KT : 100번, SKB : 106번, LGU+ :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함께 참여한 사람들

2023



- 금천구 독산4동 이상호 주무관
  - 양천구 복지정책과 김태훈 주무관
  - 용산구 용산2가동 고혜정 주무관
  - 양천구 복지정책과 김동은 주무관
  - 용산구 용산2가동 심지운 주무관
  - 양천구 신월1동 김은미 주무관
  - 관악구 행운동 김선아 주무관
  - 양천구 신월4동 박종훈 주무관
  - 마포구 공덕동 김경수 주무관
  - 양천구 신월5동 이혜민 주무관
  -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허보연 주무관
  - 양천구 목4동 이진선 주무관
  - 광진구 복지정책과 원지은 주무관
-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돌봄정책팀 팀장 김동은, 주무관 이선정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 서울복지교육센터 센터장 지일철, 팀장 임지연, 주임 강지연

# 2023

##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매뉴얼

---

**발행처**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편집인**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기획관 조미숙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발행일**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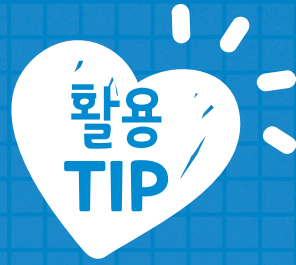
**제작부서**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디자인** MK커뮤니케이션

**비매품**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통합상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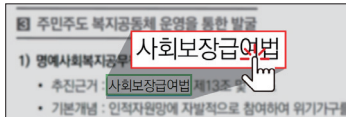
**1**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웹 주소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손모양이 생겨요.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3** 각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도 궁금하셨죠?

법명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손모양이 생겨요. 클릭하면 법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곳곳에 유용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연결된 부분에는 **연두색 테두리**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유용한 내용도 있고, 필요한 링크도 한번에 해결!!

통합상담매뉴얼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업무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로 바로가기 ➡